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00-000337-01

www.molab.go.kr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공공기관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2007. 12

노동부 Ministry of Labor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발 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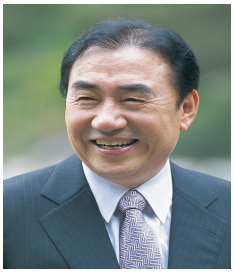

세계화와 무한경쟁,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함께 우리 경제와 고용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사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는 급기야 우리 노동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양극화 심화는 물론, 성장잠재력도 잠식되어 활력 넘치는 일터도, 경제의 지속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업능력개발,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공부문부터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하고,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여 주요직종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이뤄내는 등 일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단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민간부문의 비정

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1만 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검토·심의한 후 2007년 6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정규직 전환대상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12월 말 현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6만7천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적정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외주업무를 일제히 점검, 임금이 시장임금에 비해 불합리하게 낮은 712개 업무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적정히 보장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차별시정을 위해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차별시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차별관련 고충처리담당자를 두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신속하게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극복하고 올바른 관행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 등 어려움도 적지 않았으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서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시행되었는지를 총 망라한 책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백서 발간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슬기롭게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한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백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 특히 실무추진단 관계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 12.

노동부 장관 이 상 수

CONTENTS

제1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수립 · · · · · · · · · · · · · · · · · · 1

Ⅰ. 대책 수립 배경 · 3

Ⅱ. 2004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수립 · 시행과 한계 · · · · · · · · · · · · · 5

1. 대책의 주요내용 · 5

2. 대책 추진실적 · 6

3. 대책의 성과 및 한계 · 6

Ⅲ. 2006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 · · · · · · · · · · · · · · · · 7

1. 종합대책 수립경과 · 7

(1) 종합대책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확립 · · · · · · · · · · · · · · · · · · 7

(2)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확정 · · · · · · · · · · · · · · · · · 8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 9

(1) 비정규직 규모 및 사용분야 · 9

(2) 비정규직 처우수준 및 인사관리 · 11

(3) 외주화 실태 · 12

3.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 13

(1)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13

(2)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 14

(3) 위법 ·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지도 · 감독 강화 · · · · · · · · · 15

(4)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 16

제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실적 · · · · · 17

Ⅰ. 대책 추진체계 구축 · 19

Ⅱ. 대책 추진 경과 및 실적 · 20

1.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 · · · · · · · · · · · · · · · · · 20

(1)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작성 · 제출 · · · · · · · · · · · · · · · · · 20

(2) 정규직 전환계획 심의 · 확정 · 21

(3) 정규직 전환 주요 내용 · 22

(4) 기타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23

2.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 24

(1) 차별시정계획 수립 · 시행 · 24

(2) 차별시정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 운영 · · · · · · · · · · · · · · · · · · · 24

(3) 저임금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방식 개선 · · · · · · · · · · · 24

3. 위법 ·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지도 · 감독 · · · · · · · · · · · · · · 25

(1) 근로감독 실시 및 사회보험 가입 점검 · · · · · · · · · · · · · · · · · · · 25

(2) 비정규직 인사노무담당자 노무관리교육 실시 · · · · · · · · · · · · · · · 26

4.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 26

(1)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한 외주업무 점검 · · · · · · · · · · · · · · · · · · 26

(2) 입찰제도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 · 27

제3장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결과 · · · · · · · · · 29

Ⅰ. 총 괄 · 31

1. 개요 · 31
2. 전환인원 · 33
3. 전환자 처우개선 · 36
   (1) 처우개선 수준 · 36
   (2) 처우개선 기준 · 38
   (3) 처우개선 시기 · 39
4. 정년 및 인사노무 관리 · 39
   (1) 정년 · 39
   (2) 인사노무 관리 · 40
5. 정규직 전환 만족도 · 41
   (1) 개요 · 41
   (2)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및 근로관계 변화 · · · · · · · · · · · · · 41
   (3) 정규직 전환자 만족도 · 42
   (4)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 · · · · · · · · · · · · · · · · · · 43

Ⅱ. 중앙행정기관 정규직 전환 결과 · 45

1. 개요 · 45
2. 전환인원 · 45
3. 전환자 처우개선 · 47

(1) 처우개선 수준 ·· 47

(2) 처우개선 기준 ·· 48

(3) 처우개선 시기 ·· 49

4. 정년 및 인사노무관리 ···································· 49

(1) 정년 ·· 49

(2) 정규직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 49

Ⅲ.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정규직 전환 결과 ······················ 51

1. 개요 ·· 51

2. 전환인원 ·· 51

3. 전환자 처우개선 ·· 53

(1) 처우개선 수준 ·· 53

(2) 처우개선 기준 ·· 55

(3) 처우개선 시기 ·· 55

4. 정년 및 인사노무관리 ···································· 56

(1) 정년 ·· 56

(2) 인사노무관리 ·· 56

Ⅳ. 공기업 ·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 결과 ·························· 57

1. 개요 ·· 57

2. 전환인원 ·· 57

3. 전환자 처우개선 ·· 59

(1) 처우개선 수준 · 59
(2) 처우개선 기준 · 61
(3) 처우개선 시기 · 61
4. 정년 및 인사노무관리 · 61
(1) 정년 · 61
(2) 정규직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 62

Ⅴ. 국공립학교 · 교육행정기관 정규직 전환 결과 · · · · · · · · · · · · · · · · · 63
1. 개요 · 63
2. 전환인원 · 63
3. 전환자 처우개선 · 65
(1) 처우개선 수준 · 65
(2) 처우개선 기준 · 67
(3) 처우개선 시기 · 68
4. 정년 및 인사노무관리 · 68
(1) 정년 · 68
(2) 인사노무관리 · 69

[부록 1] 공공부문별 정규직 전환 내용

[부록 2] 2006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부록 3]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

[부록 4]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참고자료

[부록 5]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 참고자료

[부록 6]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486호)

[부록 7]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제1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수립

Ⅰ. 대책 수립 배경

Ⅱ. 2004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수립 · 시행과 한계

Ⅲ. 2006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Ⅰ 대책 수립 배경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경영의 신속성과 유연성의 확보가 기업의 중요한 경영전략이 되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정규직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8월 현재 5,70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5,882천명)의 1/3을 넘어서고 있다.

< 비정규직 규모 및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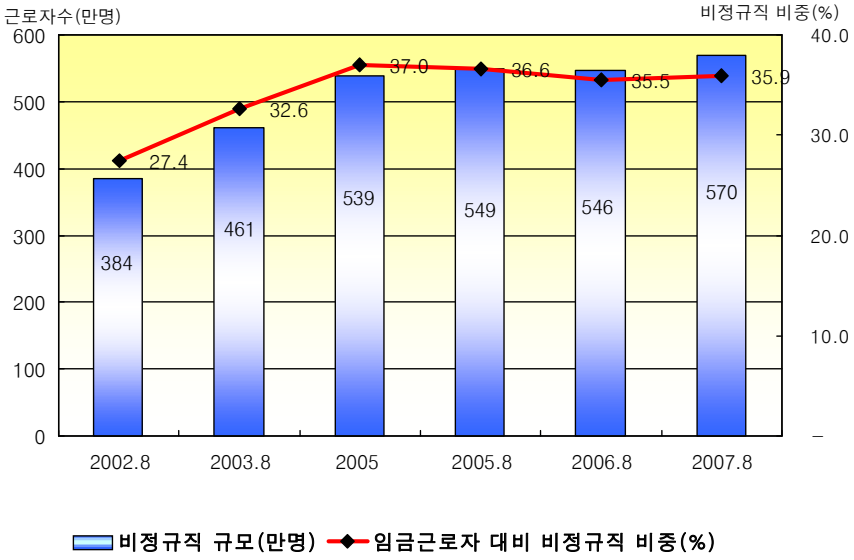

공공부문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상당수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여도 공무원 등 정규직의 충원이

어려워지게 되자 예산만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1,554천명 중 321천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체 근로자의 2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또는 육아·가사, 학업·직업훈련·취업준비 병행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1], 경영자는 새로운 업무 발생, 단기간 업무량 증감 등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은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하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률[2]을 제·개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능력개발정책[3]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부터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민간부문에도 확산되도록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

1) 자발적인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주된 내용(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 근로조건에 만족 : 41.5%, 안정적인 일자리 : 28.1%, 직장이동, 육아·가사 병행, 학업·직업훈련·취업준비 병행 등 : 16.8%, 노력한 만큼 수입, 근무시간의 신축적인 조정 등 : 13.6%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3)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Ⅱ 2004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수립·시행과 한계

정부는 2004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04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수립경과]

◈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지시('03.3.19)
◈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3.4-10월)
◈ 대책안을 마련('03.12.28), 부처간 의견 조율('04.2-3월)
◈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논의('04.3.23, 5.7)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04.5.18, 국무회의)

1. 대책의 주요내용

대책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노동부의 직업상담원, 정보통신부의 위탁집배원 등 비정규직 규모가 큰 직종[4]을 중심으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5]과, 비정규직 사용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거나 사회보험을 미적용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

4) 주요직종의 규모는 대략 139천명으로서 공공부문의 총비정규직(234천명)의 60%수준(2003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기획예산처)

5) 주요직종별 대책
- 무기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26,634명) : 직업상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 계약직 운영·처우개선(58,486명) : 교육부 조리종사원 등
- 기타직 보수화로 처우개선(7,081명) : 정부부처 사무보조(일부는 일용직 유지·임시사용원칙 준수)
- 공무원 정원확대(4,619명) : 상시위탁집배원(1,726명, 1,500명은 비정규직 유지, 추가증원은 추후검토) 영양사, 사서(단계적 확대, 비정규직 운영시 처우개선), 근로복지공단 정원을 확대하여 계약직근로자를 정규직화(3년간 705명의 정규직 정원 증원)

2. 대책 추진실적

2004년 「대책」에 따라 정부는 주요직종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법·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온 1,614건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사회보험 적용누락 여부를 점검하여 가입누락자를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용역제도를 개선[6]하였다.

3. 대책의 성과 및 한계

이와 같이 2004년 「대책」은 주요직종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2006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실태 조사 결과 여전히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적지 않았으며, 처우도 학교회계직과 같은 일부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4년 대책이 이처럼 한계를 보인 것은 이 대책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요 직종 비정규직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대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각 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할 주체가 불명확하여 이를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장치도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

6)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을 개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계약해지 명문화(2005.6.17)

Ⅲ 2006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1. 종합대책 수립 경과

정부는 공공부문에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도록 2004년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회 계류중이던 비정규법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7]

(1) 종합대책 추진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 확립

2006년 4월 26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방향'을 확정한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장관)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위원회」, 「실무 T/F」를 설치[8]하였다.

---

7) 대통령께서는 2006년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노동문제는 정부가 선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4월 11일 제73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외주·용역 등의 기준 마련 등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지시하였다.

8)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수립 추진체계

추진조직	구성	역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노동부장관(위원장), 재경부·교육부·과기부·행자부·노동부·건교부·산자부 및 기획처 차관, 국조실 정책차장, 중앙인사위 사무처장,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논의·확정
실무위원회	노동부 차관(위원장), 추진위원회 관련 부처의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실태조사 계획 확정 및 결과 분석, 대책(안) 수립 계획 논의, 대책(안) 검토 등
실무 T/F	노동부 담당국장(팀장), 추진위원회 관련부처의 담당 과장 또는 팀장, 한국노동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안)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보고

대책 추진방향

◈ '04년 대책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요직종 뿐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사용기준 정립 ▲차별 해소 방안 마련 ▲합리적 외주화 원칙 정립 등 포괄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예산과 인력배분이 수반된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토록 결정

◈ 이를 위해 관계부처로 T/F를 구성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2)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확정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는 2006년 5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 행정자치부는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10,1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인원, 유형, 임금수준 등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200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자문형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동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 실무T/F 등에 참여토록 하였다. 아울러 실태조사 계획수립, 대책 초안 마련 등에 있어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9]하고,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9) 노동계 의견수렴

일 시	회의명	참석자
5월 8일	공공기관 실태조사 관련 노동계 간담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민노총, 한국노동연구원
5월 12일	공공기관 실태조사 관련 노동계 간담회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한노총, 한국노동연구원
5월 16일	공공기관 실태조사 관련 노동계 면담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전국여성노조
5월 25일	공공부문 대책 관련 노동계 면담	노동부장관, 공공연맹 위원장 등
6월 19일	공공부문 대책관련 노동계 면담	노동부장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6월 20일	공공부문 대책관련 노동계 면담	비정규직대책팀장, 공공연맹 부위원장 등
6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토론(공공연맹 주관)	비정규직대책팀장, 공공연맹 위원장 등
7월 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단체 의견수렴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한노총, 민노총, 여성단체연합, 실무T/F 등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 관련단체 설명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한국·민노총, 여성단체연합, 한국경총 등

실무T/F,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당정협의, 대책(안)에 대한 전부처 의견수렴('06.7.20～7.24) 등을 거쳐 2006년 8월 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대책 수립 경과]

◈ '06.4.11	대통령께서 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지시(제73차 국정과제회의)
◈ '06.4.26	"종합대책 추진방향 확정(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06.5.4	"종합대책 수립계획" 확정(제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 '06.5-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관련단체 의견수렴
◈ '06.6-8월	"종합대책(안)" 검토(추진위원회 3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회, 당정협의 2회 등)
◈ '06.8.2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확정(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규모 및 사용분야

정부는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10,1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공공기관의 근로자 총인원 1,554천명 중 비정규직은 312천명으로 전체근로자의 20.1%[10]를 차지하였다.

10) 이는 전체(민간부문 포함) 비정규직 비율 36.6%('05.8월)보다 낮은 수준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현황[11]]

(단위 : 명, %)

대상기관	총인원(a=b+c)	정규직(b)	비정규직(c)	비율(c/a)
합 계	1,553,704	1,242,038	311,666	20.1
중앙부처	273,715	243,408	30,307	11.1
지자체·지방공기업	383,801	311,564	72,237	18.8
학교·교육행정기관	527,804	415,411	112,393	21.3
공기업·산하기관	368,384	271,655	96,729	26.3

* 정규직은 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의미

68개 공공기관에 대한 심층사례조사[12] 결과 각 기관은 비정규직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예산만 있으면 우선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시업무보다는 상시업무(59.9%)에, 전문업무보다 단순업무(83.6%)에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담당업무의 성격]

(단위 : 개, 명, %)

구분	합계	업무 지속성		업무 전문성	
		상시	일시	전문	단순
인원 (비율)	54,256 (100.0)	32,492 (59.9)	21,764 (40.1)	8,909 (16.4)	45,347 (83.6)
직종 (비율)	370 (100.0)	320 (86.5)	50 (13.5)	122 (33.0)	248 (67.0)

* 자료 : 68개 공공기관 사례조사 결과, 2006.5월, 노동부

11) 2006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노동부, 행정자치부)

12) 전수조사와 별개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활용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06년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

(2) 비정규직 처우수준 및 인사관리[13]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 부가급부, 후생복지제도 수혜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였는데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유사·동종 업무 담당 정규직의 85.1%[14](3년차 또는 1년차 기준 평균)였으며, 일부 단순노무인력은 절대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가 있고, 동일직종이라도 기관별로 임금격차가 큰 경우도 있었다.[15] 복리후생은 퇴직금, 사회보험 가입 등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휴게실·주차장 이용 등 예산 부담이 없는 분야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학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맞춤형복지, 교통비 등 예산이 필요한 항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후생제도 등 수혜정도]

(단위 : 개소, %)

복지후생제도	정규직(A)		비정규직(B)		격차(B-A)	
	적용기관	비율	적용기관	비율	적용기관	비율
퇴직금(공무원연금 포함)	68	100.0	68	100.0	0	0.0
사회보험 가입	68	100.0	68	100.0	0	0.0
생리휴가/산전후휴가	68	100.0	68	100.0	0	0.0
휴게실 이용	61	89.7	61	89.7	0	0.0
주차장 이용	67	98.5	67	98.5	0	0.0
육아휴직	68	100.0	62	89.7	△7	△10.3
병가	68	100.0	54	79.4	△14	△20.6
교통비 지원	60	88.2	35	51.5	△25	△36.7
맞춤형 복지 적용	57	83.8	17	25.0	△40	△58.8
주택자금 지원	47	69.1	6	8.8	△41	△60.3
학자금 지원	66	97.1	13	19.1	△53	△78.0

* 일부 직종이 적용되는 경우도 적용으로 분류
* 자료 : 68개 공공기관 사례조사 결과, 2006.5월, 노동부

13) 이하 68개 공공기관 심층사례조사 결과(2006년 5월 노동부)

14) ▲ 정규직 : 월 1,977,623원 ▲ 비정규직 : 월 1,682,348원(조사대상 68개 기관 중 유사·동종 정규직이 있는 33개 기관, 68개 직종별 각 1명의 임금수준을 단순 평균한 것임)

15) ▲ 사무보조원 : S기관 월63만원(주40시간) / S'기관 월158만원(주42시간), ▲ 주차단속원 : W기관 월62만원(주40시간) / N기관 월155만원(주42시간)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정규직 인사관리는 전담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관리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어 방만한 사용이 우려되었다.

(3) 외주화 실태

외주업무는 시설·장비관리(25.1%), 청소(20.2%), 경비(11.8%)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70.6%), 관리의 용이성(14.7%) 등을 주된 활용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비용절감에 대한 사전 정밀조사, 사후 성과측정 없이 막연히 외주화가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16)]

[외주화(간접고용) 사유]

(단위 : 개소, %)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	관리의 용이성	정규직 부담경감	정원확보 곤란	전문인력·시설활용	일시적 업무증가
48(70.6)	10(14.7)	10(14.7)	6(8.8)	8(11.8)	1(1.5)

* 1개 기관에서 복수로 답한 경우 모두 계산
* 자료 : 68개 공공기관 사례조사 결과, 2006.5월, 노동부

외주업체 선정시에는 대부분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의하여 경쟁입찰 또는 (단체)수의계약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경쟁입찰의 경우 적격심사낙찰방식은 낙찰하한률[17)]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의한 경우 각각 달라 일부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예산단가가 낮아서 부가가치세, 법정부담금, 이윤 등을 제외하면, 용역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경우도 있었다.[18)]

16) H기관, S기관 사례 등 : 정부지침에 의해 일괄적으로 외주화 실시, D기관 사례 : 외주화시 업무방식 효율화 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급여삭감(연봉 4,000→2,000여만원)을 통해 경비절감

17) 국가계약법 기준(조달청) : 87.7%, 지방자치단체계약법 기준(행자부) : 지자체가 행자부와 협의하여 결정

18) M기관 : 월용역비 125만원, 용역근로자 월임금 80만원, S기관 : 월용역비 105만원, 용역근로자 월임금 82만원 등(2006년 5월 노동부 비정규직 심층사례조사 결과)

3. 「종합대책」의 주요내용[19)]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된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용 관행 개선',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감독' 및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본방향

-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 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
-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인 해소**
- **행정지도 · 점검 등을 통해 위법 ·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방지**
- **합리적 외주화 원칙 정립 및 외주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

↓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불합리한 차별해소

(1)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비정규직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원칙을 정하였는데 '상시적 · 지속적인 업무에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 · 갱신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무

19) 「종합대책」 적용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1만여 공공기관

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리성이 있으면 기간제를 사용하되 적정하게 처우하도록 하였는 바, 기간제법 제4조의 기간제 2년 초과사용 예외기준[20]을 준용하여 합리성이 있으면 기간제를 사용하되 적정하게 처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나 산불감시 등 계절적 업무수행을 위해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업무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계속 고용하는 등 방만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향도 있어 「종합대책」에서는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비정규직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인력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그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유사·동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해 오던 것을 시정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정에 맞춰 차별요인을 정비하도록 하였다.[21]

---

20)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대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1)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국가 및 지자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참고)에 전면 시행되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인사담당부서장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고충처리담당자는 제기된 차별고충을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는 등 차별관련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경비 등 업무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유사·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적지 않도록 예산편성방식을 개선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집행시까지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퇴직금·사회보험료 등 예산을 보수와는 별도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3)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

비정규직 사용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문별로 노무담당자에 대한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비정규직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노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단순노무 외주업무에 종사하는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시장임금에 비해 불합리하게 낮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고 입찰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즉, 입찰과정에서 적용하는 예정가격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낙찰하한률을 87.7%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및 적격심사기준(재경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주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 막연하게 외주화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무분별하게 외주화 하지 않도록 외주업무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여 외주화 유지가 불합리한 경우 직접 수행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제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실적

Ⅰ. 대책 추진체계 구축

Ⅱ. 대책 추진경과 및 실적

Ⅰ 대책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종합대책” 마련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86호, 2006년 10월 4일)을 제정하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이 훈령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22]하였으며, 동 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종합대책“을 추진, 점검하는 상설조직인 ”실무추진단“을 발족(2006년 10월 30일)[23]하였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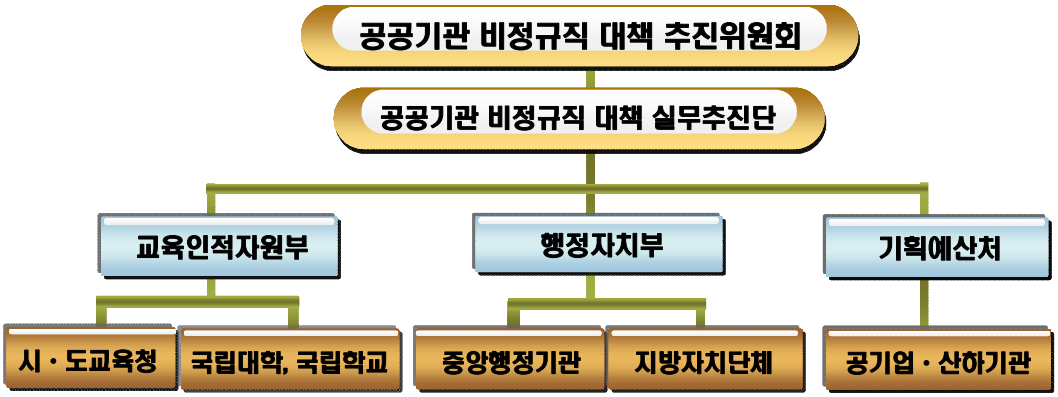

22)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정책차장,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 등이 위원임

23) 실무추진단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장 1인(고위공무원, 노동부)과 기획총괄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팀, 학교·지방교육행정기관팀, 공기업팀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됨

Ⅱ 대책 추진 경과 및 실적

1.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1)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작성·제출

실무추진단이 구성된 이후 각 기관에서 대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40여회의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계획서 등 작성양식을 배포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각 공공기관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종합대책상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원칙[24]에 따라 해당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여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주무부처 등에 제출하였다. 이후 주무부처·교육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는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정규직 전환기준에 따라 각 기관이 제출한 「전환계획서」를 검토·협의하여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제출(2007년 5월)하였다.

24)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

정규직 전환기준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07.5.31 현재 2년 이상인 자

< 상시·지속적 업무 >

-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
- 성질상 업무의 종료가 예측되는 일시적인 업무와 특정 또는 불특정 시점에만 발생하는 간헐적 업무는 제외

< 전환 예외사유 >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 등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에서 제외

(2) 정규직 전환계획 심의·확정

이후 「추진위원회」는 「전환계획서」 등에 대해 주요 협의부처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위원장(노동부장관)이 주재한 실무추진단 종합 검토회의를 10여차례 개최하여 불합리하게 전환대상에서 누락된 자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 6월 25일 추진위원회는 각 기관별 직종별 정규직 전환인원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07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 이를 보고한 후 확정·발표하였다.

[정규직 전환 검토·확정 절차]

(3) 정규직 전환 주요내용

국무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총 1만714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기간제근로자 20만6,742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여 2007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 7만1,861명을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확정[25]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76.3%에 해당하며,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34.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공공부문별 정규직 전환인원]

(단위 : 명, %)

대상기관	기간제수(A)	전환요청 (B)	전 환(C)	전환율(C/A)
중앙부처 (57)	21,912	14,474	6,879	31.4
지자체·지방공기업 (346)	59,923	11,093	6,303	10.5*
학교·교육행정기관 (10,041)	89,757	73,675	51,205	57.0
공기업·산하기관 (270)	35,150	13,340	7,474	21.3
총 계 (10,714)	206,742	112,582	71,861	34.8

* 지자체·지방공기업의 전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력이 '07.6월 현재 44,562명 존재하여 전환요구인원이 적기 때문임

25)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이상 근속하였더라도 아래의 기간제법 제4조 등의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교·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전환대상 직종은 학교 식당종사자(31,872명, 44.4%), 행정사무보조원(2,421명, 10.3%), 교무·과학실험 보조원(6,595명, 9.2%) 등이며, 2년 이상 근속자 중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22,261명의 주된 제외 사유는 일시·간헐적인 업무 종사(8,765명, 39.4%), 고령자(4,601명, 20.7%),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2,087명, 9.4%) 등이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규직 전환대상에 대해 각 기관은 2007년 9월 30일까지 직급·임금체계 설계, 인사관리규정 마련, 구체적인 전환대상자 확정 등 전환절차를 완료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2007년 10월말까지 전환실적을 추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다.(정규직 전환 결과는 제3장 참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 행정기관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공기업·산하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은 해당기관의 정원에 반영되는 정규직으로 되었다.

(4) 기타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정규직 전환 외에도 그동안 예산만 있으면 비정규직을 방만하게 사용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인원과 예산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을 마련(200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하여 2007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하였다.[26)]

26) 중앙부처는 2007년부터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매년 3월)하여 행정자치부(매년 5월) 및 기획예산처(매년 8월)와 협의

2.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1) 차별시정계획 수립·시행

대책 수립 이후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책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법에 의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여야 한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07년 6월초 '차별시정안내서'를 각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이를 참고하여 2007년 9월까지 기관별 차별시정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2) 차별시정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운영

각 공공기관별로 「차별시정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들로 하여금 비정규직근로자가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제기 절차(예: 고충처리방 등)를 마련하여 차별을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였다.

(3) 저임금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방식 개선

또한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보수 이외에 퇴직금, 연차수당·초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퇴직금·법정수당 미지급, 사회보험 가입 누락 및 임금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민간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 편성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시까지의 적정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하였다.

[저임금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제도 개편 현황]

부 문	조 치 현 황
중앙부처	'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07.1월, 기획처) '07년 예산편성세부지침('06.9.17, '07.4월, 기획처)
지자체·지방공기업	'0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 기준('06.12월 행자부)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06.12.29, 행자부)
공기업·산하기관	'07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06.11.9, 기획처) '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07.2.9, 기획처)

3.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1) 근로감독 실시 및 사회보험 가입 점검

비정규직 사용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근로감독계획을 수립·시달(2007년 3월)하고 2007년 10월까지 800여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1만2천여개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여 미가입 사업장 2개소에 대해 가입하도록 조치하였으며, 12,8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여 미가입 사업장 25개소 88명에 대해 가입하도록 하였다.[27]

27)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실태 조사결과(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또 12,957개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입누락 기관이 없었음(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

(2) 비정규직 인사노무담당자 노무관리교육 실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별로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비정규직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노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공부문별 전담교육기관]

공공기관	전담교육기관	공공기관	전담교육기관
중앙부처	중앙공무원교육원	학교·교육행정기관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지자체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공기업·산하기관	한국노동교육원

4.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1)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한 외주업무 점검

그간 공공기관은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 등을 이유로 외주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예산·입찰제도 운영과정에서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유사·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시장임금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앙부처, 공기업·산하기관, 국립대학 등 총 277개 기관으로부터 외주화 타당성 검토서를 제출받아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검토기준에 따라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현황'과 '직접수행 전환 필요 업무' 등을 점검하였다.[28)]

28) 지자체, 공립학교 및 교육청은 종합대책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함

외주화 검토기준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검토기준

- 청소·경비 등 외주업무에 대하여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시장임금(최근 시중노임단가)보다 불합리하게 낮지 않도록 입찰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

◈ 직접수행 전환기준

- 고유(핵심)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외주화 인정[29]
- 지원(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허용하되 업무수행에 독립성 확보 곤란 등 외주가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직접수행으로 전환

(2) 입찰제도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

점검 결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입찰제도 운영방식을 2007년 7월 이후 새로운 외주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외주화 유지가 불합리한 14개 기관의 18개 업무[30]에 대해서는 직접수행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입찰제도 운영방식 개선사항]

점검결과	외주계약수	개선내용
예정가격 작성시 최근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501 (146)	시중노임단가 적용
적격심사제 미적용(최저가낙찰제 시행)	94 (41)	적격심사제 적용
낙찰하한률이 조달청 기준(87.7%)에 미달	117 (50)	낙찰하한률 상향조정

※ ( )는 기관수

29) 고유(핵심)업무 여부는 각 기관의 판단을 존중

30)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 프로그램제작업무, 농촌진흥청 가축관리업무, 서울대학교 마이크로자료관리용역(도서관), 한국토지공사 사무보조, 예술의전당 무대기술업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수행(행정) 등

또한 단순노무 외주업무 예산편성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시까지의 적정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지침[31]을 개선하여 단순노무 외주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인상·조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행정자치부 회계통첩, 2006년 12월)을 시달하여 낙찰하한률을 87,7%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보호조건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을 개정(2007년 10월)하여 외주업체 선정시 평가내용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추가하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제제규정을 신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하여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용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31) 예산안작성 세부지침('06.9.17, '07.4월, 기획처), '0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 기준('06.12월 행자부), '07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06.11.9, 기획처), '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07.2.9, 기획처) 등

제3장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결과

Ⅰ. 총 괄

Ⅱ. 중앙행정기관 정규직 전환 결과

Ⅲ.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정규직 전환 결과

Ⅳ. 공기업 ·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 결과

Ⅴ. 국공립학교 · 교육행정기관 정규직 전환 결과

Ⅰ 총 괄

1. 개 요

대책이 적용되는 총 10,714개 공공기관 중 정규직 전환대상이 있는 기관은 총 9,266개 기관이며, 전환 대상인원은 총 71,861명이다. 이 기관들은 2007년 6월 26일 기관별·직종별 정규직 전환 인원이 확정된 이후 정규직 전환자에 관한 인사관리규정 재·개정, 정규직 전환자의 직급·임금체계 설계, 구체적 전환대상자 확정 등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7년 12월말 현재 전환을 완료한 기관은 총 9,172개 기관이며 전환인원은 총 67,600명에 이른다.

[정규직 전환 완료 기관]

(단위 : 개소, 명)

구 분	대상기관	완료기관	전환인원
중앙행정기관	47	47 (100%)	6,408
지자체·지방공기업	238	204 (85.7%)	4,678
공기업·산하기관	137	127 (92.7%)	6,999
학교/교육행정기관	8,844	8,794 (99.4%)	49,515
총 계	9,266	9,172 (99.0%)	67,600

총 9,266개 대상기관 중 2007년 12월말 현재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94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이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는 주로 노사협의, 이사회의 승인 및 상급기관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32] 다만, 이러한 기관들도 가능한 한 조기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8년 초에는 정규직 전환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직 전환 미완료 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상급기관협의, 이사회승인 등	노조(근로자) 협의	근로조건 설정 등 내부절차 추진	기타
지자체, 지방 공기업	34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대구시시설관리공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광주지방공사	SH 공사, 부산시시설관리공단,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과천시, 오산시, 포천시, 하남시, 연천군, 여주시, 가평군, 파주시, 안양시, 용인시, 기장군, 태안군, 부안군, 순창시, 화순군, 영광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경남개발공사	김천시

32) 사유별로는 노조 및 근로자 협의 55개 기관, 내부절차 추진 24개 기관, 이사회 승인 및 상급기관 협의 10개 기관, 기타 5개 기관이 지연

구 분	계	상급기관협의, 이사회승인 등	노조(근로자)협의	근로조건 설정 등 내부절차 추진	기타
공기업. 산하기관	10	재외동포재단	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과학 기술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기업데이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강원대학교병원, 한국개발연구원
교육 행정 기관	50		서울시교육청 10개 학교 부산시교육청 소속 10개 학교 인천시교육청 소속 17개 학교 경기도교육청 소속 9개 학교 강원도교육청 소속 1개 학교 대전시교육청 소속 2개 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총 계	94	10	55	24	5

2. 전환인원

2007년 12월말 현재 정규직 전환인원은 67,600명이다. 이는 2007년 6월 26일 확정된 정규직 전환 대상인원 71,861명에 비해 4,261명이 적은 수치이다.

[정규직 전환 인원]

(단위 : 명)

구 분	전환 대상인원	전환 인원	차이
중앙행정기관	6,879	6,408	471
지자체 · 지방공기업	6,303	4,678	1,625
공기업 · 산하기관	7,474	6,999	475
학교/교육행정기관	51,205	49,515	1,690
총 계	71,861	67,600	4,261

전환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전환대상자 중 2,147명은 정규직 전환전에 퇴직하였으며, 166명은 본인이 전환을 희망하지 않았다. 또한 1,098명은 근속기간 산정 착오 등으로 전환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각 기관의 최종 전환인력에서 제외되었다.

[정규직 전환 제외 인원]

(단위 : 명)

구 분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기업 산하기관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총계
전환 전 퇴사	399	168	98	1,482	2,147
근속기간 착오 등으로 전환제외	70	243	163	622	1,098
본인거부	10	43	0	113	166
미전환 기관인원	0	1,083	424	154	1,661
기타	31	297	164	394	886
총 계	510	1,834	849	2,765	5,958

아울러 1,697명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나 근속기간 산정시 착오 등으로 누락되었다가 전환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여 전환하였다.

[정규직 추가 전환 인원]

(단위 : 명)

구 분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기업 산하기관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총계
근속기간 착오 등으로 추가전환	39	209	374	1,075	1,697

기관별 정규직 전환 인원을 보면 경기도교육청(관할 공립 초·중·고등학교 포함)이 10,989명을 전환하여 전체 전환인원의 16.3%로 전환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5,077명, 경상북도교육청 3,793명으로 전환자 수가 많았다.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기관중에서는 경찰청이 1,869명으로 전환인원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부 1,500명, 한국철도공사 1,374명, 제주도 838명, 한국도로공사 477명, 한국전력공사 477명, 농촌진흥청 35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기관 전환인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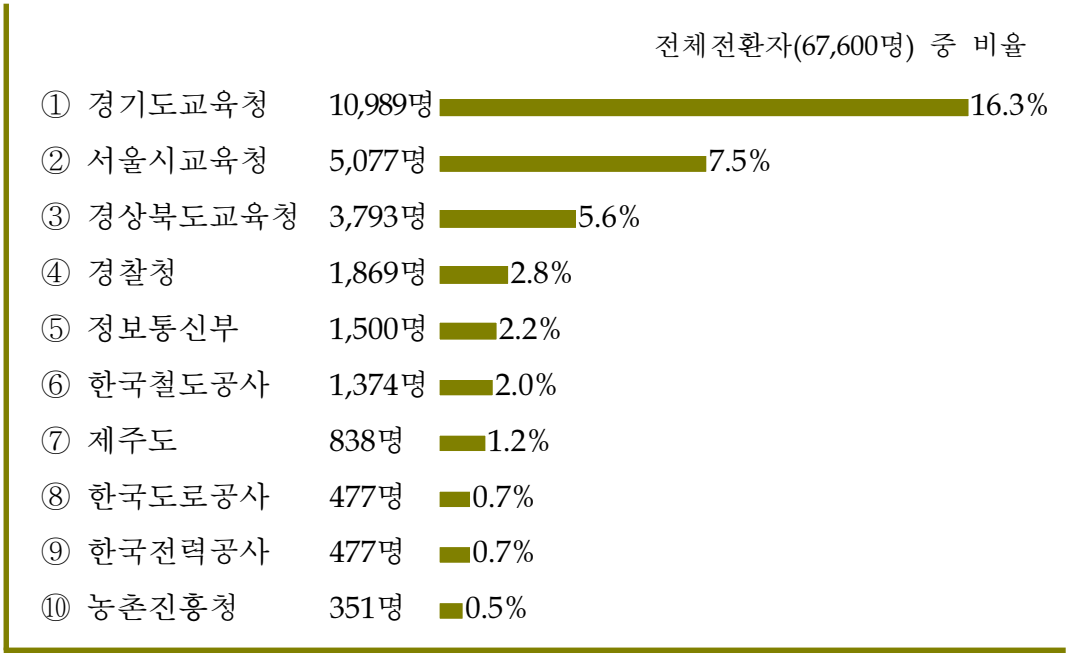

3. 전환자 처우개선

(1) 처우개선 수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했으며 기관 및 직종 등에 따라 처우개선이 없는 경우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개선되는 등 처우개선 수준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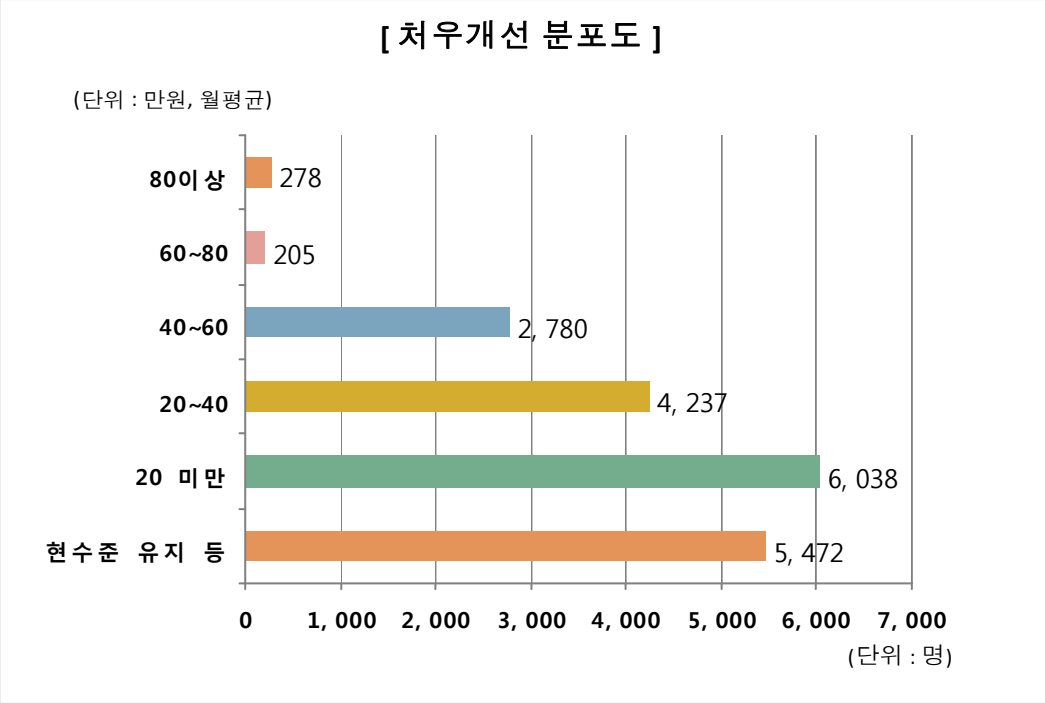

*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학교의 처우개선은 별도 분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공기업·산하기관, 국립대학의 전환자 처우개선 수준을 보면 전환자 19,010명 중 71.2%에 해당하는 13,538명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인상폭은 월평균 20만원 미만 인상된 경우가 6,0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40만원 인상된 경우가 4,237명, 40~60만원 인상된 경우가 2,780명, 8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가 278명이다.

그리고 추후 단체협상으로 결정하기로 하거나 검토중에 있어 처우개선 수준을 정하지 않은 기관과 전환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곤란도·책임도, 타 기관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 처우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5,472명 이었다.

아울러 보수 이외에도 상여금 지급 대상 포함, 학자금 대출, 휴가 일수 증가,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 편의시설 이용 등 복리후생 적용을 확대한 경우도 있었다.

시도교육청과 국·공립학교의 경우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4%씩 연봉액 인상을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2004년에 일반직 9급 또는 기능직 10급 1호봉의 임금수준 대비 84% 수준이었던 비정규직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8년에는 100% 수준이 되도록 각급 학교에 처우개선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토록 하였다. 비정규직 직종별로 처우개선 예상액을 보면 영양사·사서의 경우 2008년 임금은 일반직 9급 1호봉 수준인 1,722만원(연봉액)이 되며 2008년 처우개선액은 98만원(연봉액)이다.

또한 사무보조원의 경우 2008년 임금은 기능직 10급 1호봉 수준인 1,544만원(연봉액)이 되며 2008년 처우개선액은 88만원(연봉액)이다.

[근로기준일수 기준 처우개선]

(단위 : 천원)

직종 (근로기준일)	지급기준	'07연봉액 (기준 96%)	'08연봉액 (기준 100%)	인상액 ('08-'07)
영양사, 사서 (365일)	일반직9급1호	16,241	17,222	981
사무보조 (365일)	기능10급1호	14,558	15,437	879
전산,교무,실험,실습보조 (275일)	기능10급1호	10,968	11,630	662
조리사,조리원 (245일)	기능10급1호	9,771	10,361	590

※ '08 처우개선 연봉액 : 처우개선 4% 인상 + '0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 반영

(2) 처우개선 기준

처우개선 기준은 중앙부처 및 국·공립학교의 경우 주로 기능직 10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반직 7급, 8급 및 9급 1호봉, 전문계약직 등을 기준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학은 기존 민간인 정규직인 상근인력 또는 기성회직원을 기준으로 처우를 개선한 경우가 많았으며, 공기업·산하기관은 유사·동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3) 처우개선 시기

처우개선 시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산하기관은 전환과 동시에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환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성격, 유사 동종 업무 담당자의 처우수준, 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기관도 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행정기관 일부는 2008년 1월부터 처우를 개선하고, 대다수 국·공립학교는 2004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2008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부터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대학의 경우는 부속기관별로 처우개선 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4. 정년 및 인사노무관리

(1) 정년

대부분의 기관이 정규직 전환자의 정년을 57세로 설정했으며 일부 기관의 일부 직종의 경우 업무의 성격, 기관 내 기존 정규직의 정년 등을 감안하여 53세, 55세, 58세, 60세 등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33)]

33) 동일 기관내에서도 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년을 다르게 설정한 경우가 있음

(2) 인사노무관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등 행정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각 기관별로 민간인 정규직 인사노무 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산하기관은 대부분이 해당기관 정원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정규직 직렬·직급 체계에 포함하거나 기존 직렬·직급 체계에 포함하기 곤란한 경우 새로운 직렬·직급을 신설하여 전환하였다.

5. 정규직 전환 만족도

(1) 개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4]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에 변화가 있고, 전환전과 비교하여 직장에 대한 소속감 및 업무에 대한 책임감,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및 근로관계 변화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 및 근로관계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57.1%로 '변화가 없다'(42.9%)는 응답보다 많았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및 근로관계 변화]

구 분	사례수 (명)	변화 있다	변화 예정	변화 있다	변화 없다
전체	561	29.6	27.5	57.1	42.9
중앙행정기관	81	37.3	41.2	78.4	21.6
지자체/지방공기업	74	53.6	30.4	83.9	16.1
학교/교육기관	328	11.9	25.7	37.6	62.4
공기업·산하기관	78	73.6	18.1	91.7	8.3

※ 기존 정규직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자(312명) 제외

34) 2007.11.19 ~ 12.13일 정규직 전환자 873명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 조사 실시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 및 근로관계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주된 변화 내용은 '임금인상'이 73.4%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혜택 증가'(46.9%), '휴일·휴가 증가'(39.4%), '직급 변화'(18.6%)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변화 내용]

구분	사례수 (명)	임금	복지혜택	휴일 및 휴가	직급
비율(%)	321	73.4	46.9	39.4	18.6

(3) 정규직 전환자 만족도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전환자가 느끼는 좋아진 점으로는 '고용안정'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금인상'(12.4%), '복지혜택 증가'(9.5%), '휴일·휴가 증가'(8.0%)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자가 느끼는 좋아진 사항]

구분	사례수 (명)	고용안정	임금인상	복지혜택	휴일휴가	기타	없음	무응답
비율(%)	873	51.1	12.4	9.5	8.0	0.1	17.1	1.7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40.0%였으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48.6%,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37.8%로 나타나 소속감, 책임감, 직장생활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의견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소속감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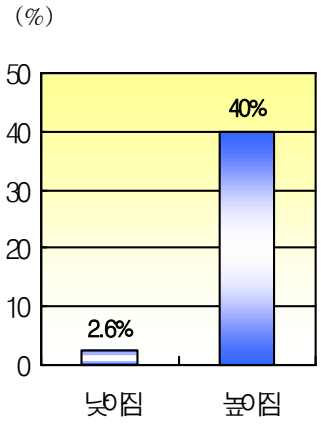

< 책임감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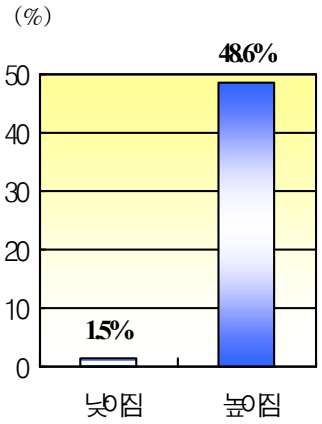

< 직장생활만족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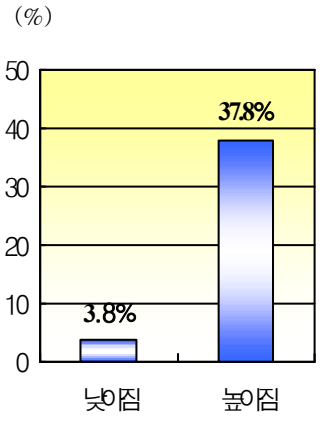

(4)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학교/교육행정기관(22.3%) 이외의 중앙행정기관(38.5%), 지자체/지방공기업(49.6%), 공기업 전환자(47.6%)의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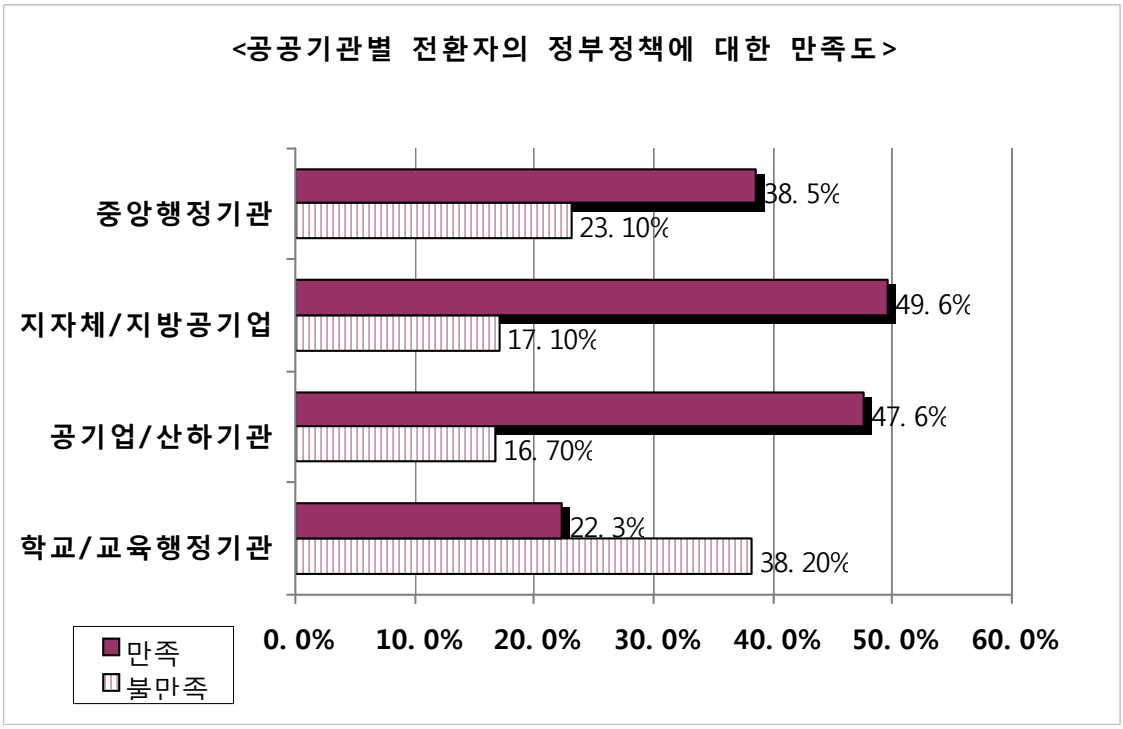

또한 응답자 대부분(87.4%)이 향후에도 정규직 전환 대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추진을 반대(4.1%)하는 응답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Ⅱ 중앙행정기관 정규직 전환 결과

1. 개 요

중앙행정기관 중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있는 기관은 47개 기관이며, 전환대상은 6,879명이다. 2007년 12월말 현재 이 기관들 전체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대책의 취지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환인원

2007년 6월 26일 확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은 총 6,879명이며,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총 6,408명으로 전환 대상인원 대비 93.2%이다.

당초 전환대상자로 확정된 6,879명 중 399명은 정규직 전환 전에 퇴직하였으며 10명은 본인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았다.

또한 2007년 5월 31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나 근속기간 산정 착오로 전환대상에 포함된 경우 등 70명은 전환 제외하였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었으나 근속기간 산정 착오로 전환 대상에서 누락된 39명은 전환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정규직 전환 제외 인원]

(단위 : 명)

전환인원 차이 발생사유	인원
전환 전 퇴사	399
근속기간 착오 등으로 전환 제외	70
본인 거부	10
기 타[35]	31
합 계	510

[정규직 추가 전환 인원]

(단위 : 명)

전환인원 차이 발생사유	인원
근속기간 착오 등으로 추가 전환	39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8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환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부 1,500명, 농촌진흥청 351명, 통계청 344명, 국세청 261명, 노동부 233명, 행정자치부 217명 등의 순으로 전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기관전환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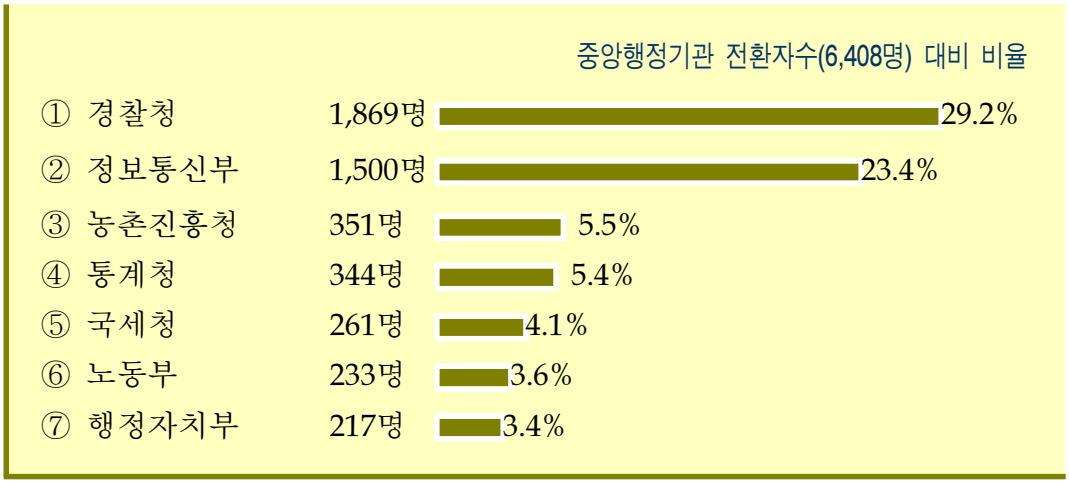

35) 특정사업의 조기종결 16명, 전문자격증 소지 5명, 기능직으로 채용 등 10명

3. 전환자 처우개선

(1) 처우개선 수준

각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 책임도, 곤란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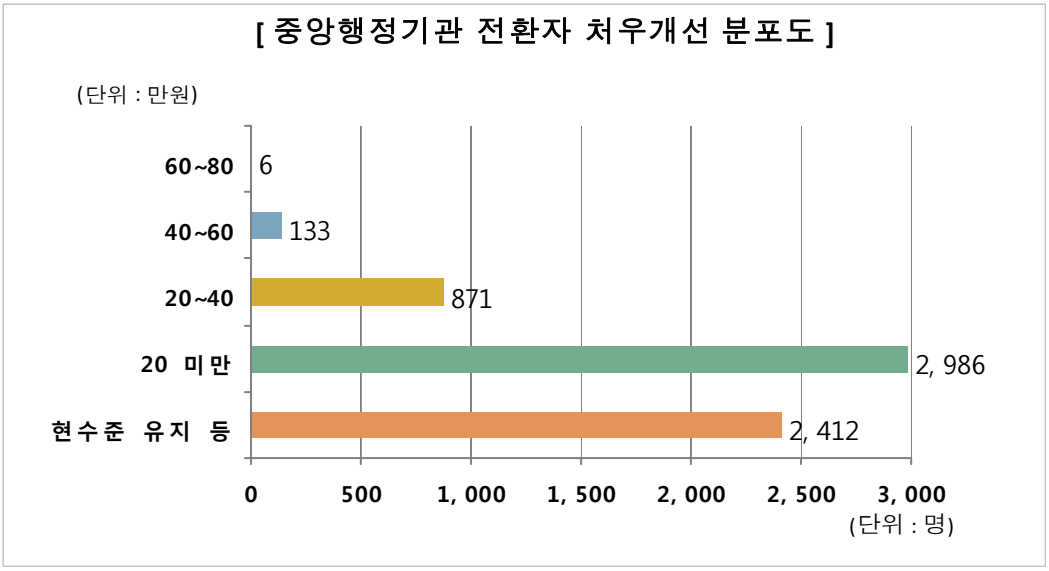

전환자 처우개선 내용 중 임금은 약 5만원에서 20만원(월평균) 정도 개선한 경우가 전체 전환자의 46.6%로 가장 많았으며, 국정홍보처 방송촬영담당, 중소기업청 시험연구보조원의 경우 월평균 60여만원 이상이 인상되는 등 처우개선 금액이 큰 경우도 있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보조원과 전산보조원, 대통령비서실의 조경원과 조리원 등 일부 직종은 정규직 전환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및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 해당 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현 처우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임금 수준을 유지하였다.

아울러 임금 이외의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전환자에 대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 혜택을 확대하였다.

(2) 처우개선 기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기준은 정규직 전환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이 기능직 10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부는 일반직 5급(조달청 선물거래연구원), 7급(조달청 공사원가 및 설계검토원 등), 기능직 8급(문화관광부 공연기획지원요원), 9급(교육인적자원부 사무보조원·영양사 등), 전문계약직(국정홍보처 홍보보조원 등) 및 시중노임단가(국방부 조리원 등)를 기준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3) 처우개선 시기

처우개선 시기는 국방부, 외교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1개 기관은 전환과 동시에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재경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20개 기관은 2008년 1월부터 처우를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36)]

4. 정년 및 인사노무관리

(1) 정년

전환대상이 있는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44개 기관이 정규직 전환자의 정년을 57세로 설정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원)는 55세, 국가인권위원회(전문상담원)는 60세로 설정하였다.

(2) 정규직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정규직 전환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대부분의 기관이 해당기관의 민간인 정규직 인사노무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36)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 등의 경우 일부 직종은 전환과 동시에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일부 직종은 현 처우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조달청의 경우 선물거래연구원은 2008년 1월부터 처우를 개선하고 다른 직종은 전환과 동시에 처우를 개선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2006년 12월 29일)을 제정하여 매년 각 부처로부터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을 제출받아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인 정규직 인력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정규직 전환자 등 인력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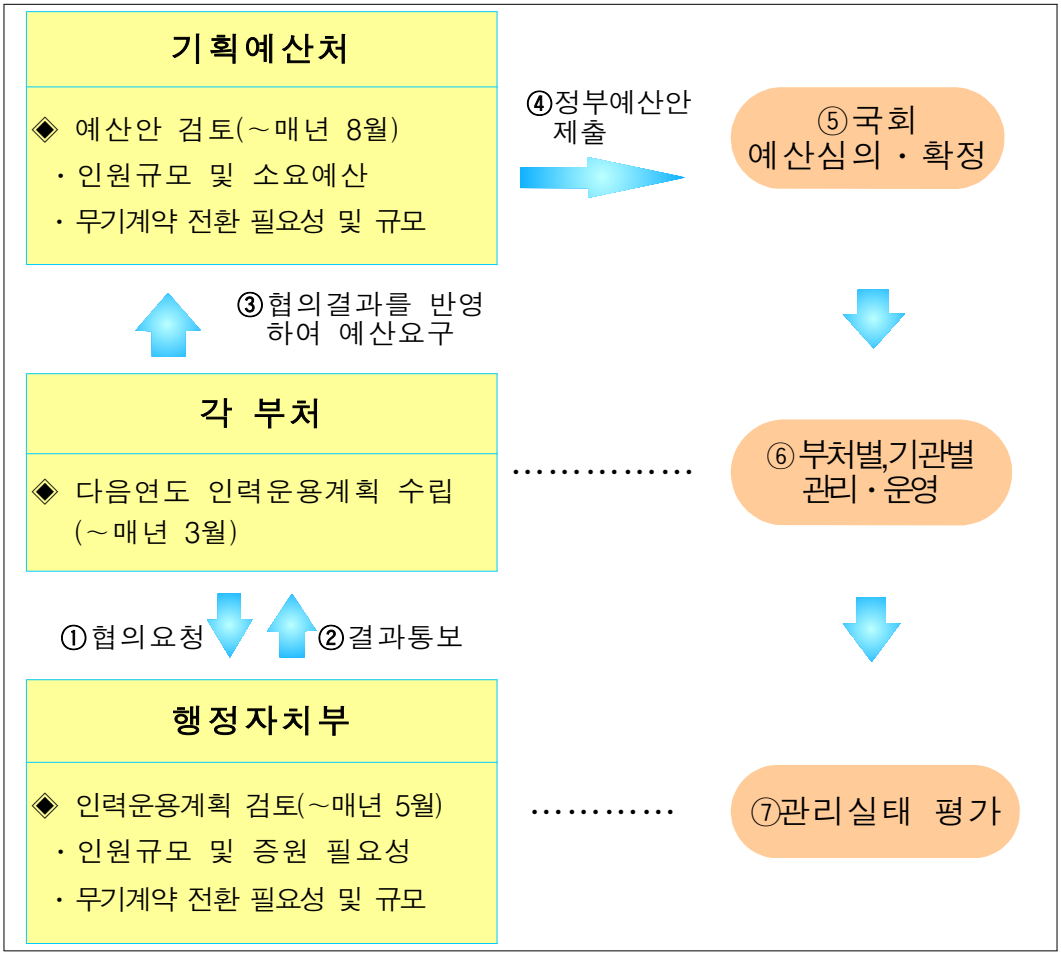

Ⅲ 지자체 · 지방공기업 정규직 전환 결과

1. 개 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중 정규직 전환대상이 있는 기관은 총 238개 기관이며 전환대상은 6,303명이다. 이중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기관은 총 204개 기관이며, 전환인원은 4,678명이다.

2007년 12월말 현재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이중 22개 기관은 근로조건 설정 등 내부 전환절차 추진 지연, 2개 기관은 노조협의, 10개 기관은 상급기관 협의 및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환인원

2007년 6월 26일 확정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원은 총 6,303명이며, 2007년 12월말 현재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총 204개 기관의 4,678명으로 전환기관 대비 85.7%가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전환대상 인원 대비 74.2%가 전환되었다.

전환이 완료된 204개 기관의 당초 전환대상 인원과 실제 전환 인원을 비교하면 542명이 적게 전환되었는데[37], 이는 정규직 전환대

상인 168명은 전환 전에 퇴직하였으며 43명은 본인이 전환을 희망하지 않았다. 또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나 근속기간 산정 착오로 전환대상에 포함된 경우 등 243명은 전환 제외하였다.

[정규직 전환 제외 인원]

(단위 : 명)

전환인원 차이 발생사유	사유별 전환 제외인원
전환 전 퇴사	168
근속기간 착오 등으로 전환 제외	243
본인 거부	43
기 타	297
총 계	751

아울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었으나 근속기간 산정 착오로 전환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등 209명을 전환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정규직 추가 전환인원]

(단위 : 명)

전환인원 차이 발생사유	추가 전환인원
근속기간 착오 등으로 추가 전환	209

정규직 전환인원을 기관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838명을 전환하여 전체 지자체·지방공기업 전환인원 대비 17.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246명, 전주시 142명, 도시철도공사 123명, 울산시시설관리공단 110명, 김제시 91명, 완도군 80명 등의 순으로 전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7) 204개 기관의 당초 전환대상 인원은 총 5,220명이며, 이중 4,678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됨

[주요기관 전환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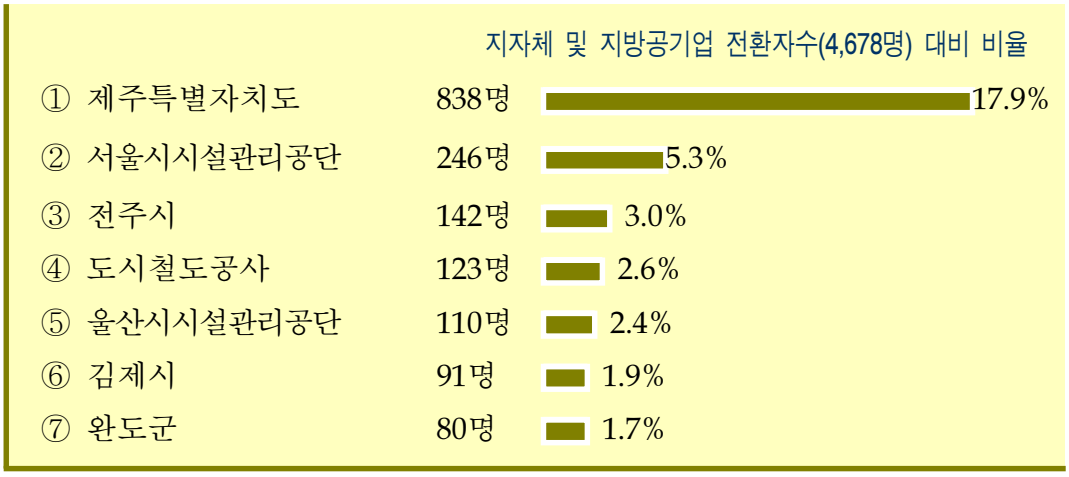

3. 전환자 처우개선

(1) 처우개선 수준

각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책임도, 곤란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였다.

전환자의 처우개선 수준을 보면 전환자 4,678명 중 78.7%에 해당하는 3,680명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인상폭은 월평균 20~40만원 인상된 경우가 1,5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만원 미만 인상된 경우가 1,368명, 40~60만원 인상된 경우가 487명이다.

또한 유성구의 환경미화원은 월평균 190만원이 인상되었고,

의왕시의 방문보건사업 종사자, 금산군의 영양상담사·건강상담사, 공주시 단순노무원 등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개선되는 등 처우개선 금액이 큰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추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거나 검토중에 있는 경우, 전환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및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 해당 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현 처우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임금 수준을 유지한 경우 등이 998명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전환자 처우개선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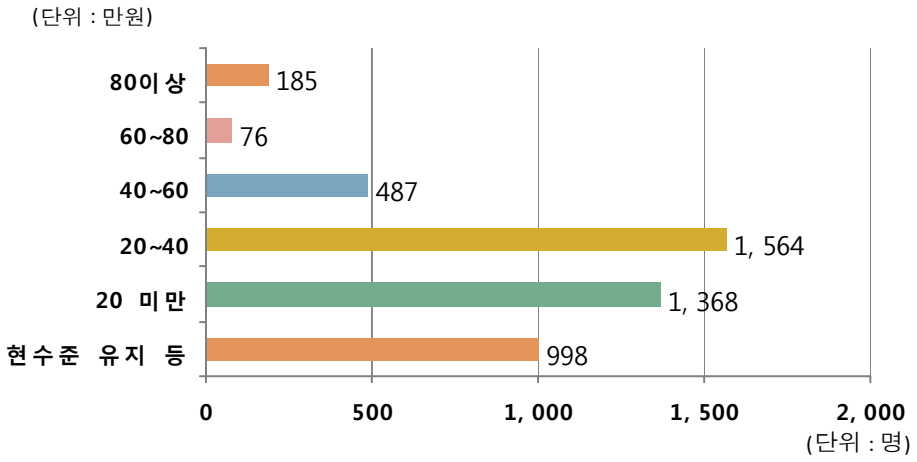

아울러 임금 인상 이외에도 부산시, 인천시 등은 전환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광주시, 광주 동구 등은 명절휴가비, 가계보전비,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대전 동구는 학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정부시는 보육료 및 학자금을 지원하며 콘도 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복리후생 혜택을 확대하였다.

(2) 처우개선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기존의 민간인 정규직(상근인력)이 담당하던 업무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 이를 처우개선 기준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는 계약직 마급[38], 기능직[39] 등을 기준으로 처우를 개선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울산 남구·동구, 전주시 등의 경우에는 추후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기관내의 유사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거나 정규직의 업무가 기존 정규직에 없는 경우 적정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였다.[40]

(3) 처우개선 시기

처우개선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전환과 동시에 처우를 개선하였다. 다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태백관광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일부기관은 예산사정, 타기관 유사 업무 담당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처우를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38) 아산시 인터넷 방송실 업무
39) 경상남도 기성회직
40) 경북개발공사의 경우 기능4급, 제주도개발공사 사무원의 경우 기능 5급,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기능직 9급,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경우 7급 1호봉을 기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등 기관별로 다양함

4. 정년 및 인사노무관리

(1) 정년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204개 기관중 약 80%의 기관이 전환자 정년을 57세로 설정하였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업무의 성격, 기관 내 기존 정규직의 정년 등을 감안하여 55세, 58세, 59세, 60세, 61세 등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기관은 직종별로 정년을 다르게 설정하였다.[41)]

(2) 인사노무관리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대부분의 기관이 해당기관의 민간인 정규직 인사노무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41) 인천광역시, 속초시,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등은 직종별로 정년을 다르게 설정

Ⅳ 공기업·산하기관 정규직 전환 결과

1. 개요

공기업·산하기관 중 정규직 전환대상이 있는 기관은 총 137개 기관이며, 전환대상 인원은 7,474명이다. 이중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기관은 총 127개 기관이며, 전환인원은 6,999명이다.

2007년 12월말 현재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총 10개 기관(전환대상 424명)으로 이중 2개 기관은 전환을 위한 내부절차 추진 지연, 3개 기관은 노사협의, 1개 기관은 이사회 승인, 4개 기관은 기타사유로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환인원

2007년 6월 26일 확정된 공기업·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은 총 7,474명이며, 2007년 12월말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총 6,999명으로 전환대상 인원 대비 93.6%가 전환되었다.

전환이 완료된 127개 기관의 당초 전환대상 인원과 실제 전환 인원을 비교하면 51명이 적게 전환되었는데, 이는 전환 전에 퇴직한

인원이 98명이고, 자체 전환 심사 결과 79명이 제외되었으며, 근속기간 산정 착오 및 유기 사업 등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163명이 제외되었고, 전환 유보 등 기타 사유로 85명을 제외하였다.

[정규직 전환 제외 인원]

(단위 : 명)

전환인원 차이 발생사유	인원 수
전환전 퇴사	98
전환심사 제외	79
근속기간 착오 등으로 전환제외	163
기 타	85
총 계	425

반면, 노사합의 또는 기관 자체적으로 374명을 추가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추가 전환 인원]

(단위 : 명)

전환인원 차이 발생사유	인원 수
노사합의 또는 자체 추가 전환	374

정규직 전환인원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1,374명을 전환하여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로공사 477명, 한국전력공사 477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83명, 한국자산관리공사 278명, 한전 KPS 254명, 서울대학교병원 243명, 국립공원관리공단 236명 등의 순으로 전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기관 전환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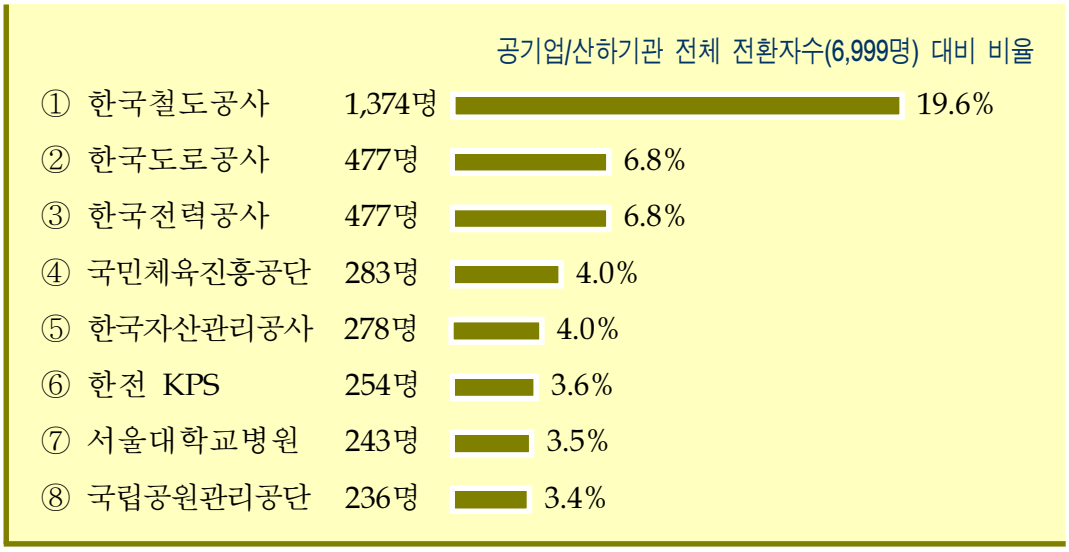

3. 전환자 처우개선

(1) 처우개선 수준

각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 책임도, 기존 정규직의 처우수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자의 처우개선 수준을 보면 전환자 6,999명 중 73.2%에 해당하는 5,124명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인상폭은 월평균 40~60만원 인상된 경우가 2,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40만원 인상된 경우가 1,697명, 0~20만원 인상된 경우가 1,055명이다.

아울러 추후 노사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거나 전환전 임금 수준이 기존 정규직 임금과 차이가 없어 전환 전 임금 수준을 유지한 경우가 1,875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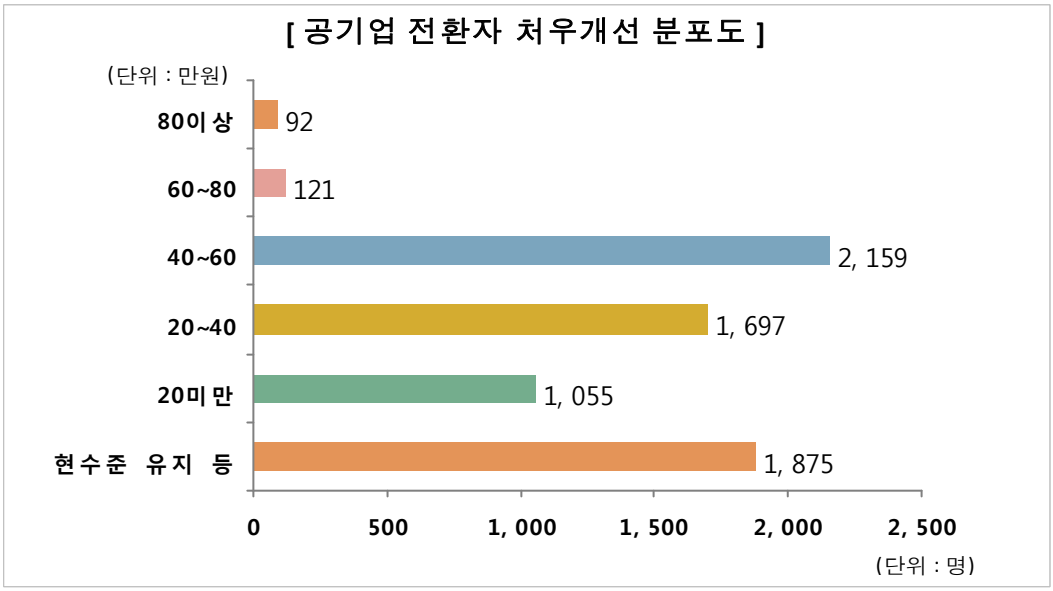

또한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환자에게 학자금 지원 및 대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선택적복지제도,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휴가 부여 등 기타 복리후생제도를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예산 사정 또는 기관의 형편에 의해 일부 복리후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경우도 있었다.

(2) 처우개선 기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기준은 정규직 전환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기존 정규직의 유사직종 해당 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환자의 업무가 기존 정규직 업무에 없는 경우에는 적정 수준을 감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처우개선 시기

처우개선 시기는 대부분의 기관이 전환과 함께 처우를 개선하였으나, 한국마사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0여개 기관은 예산사정 및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2007년도에는 현 처우수준을 유지하고 2008년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4. 정년 및 인사노무관리

(1) 정년

대부분의 기관이 전환자의 정년을 기존 정규직과 같이 설정하였는데, 전체 전환 완료 기관의 약 84% 정도가 57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업무의 성격, 기존 정규직의 정년 등을 감안하여 54세, 55세 또는 59세, 61세 등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42]

42) 동일기관 내에서도 직종별로 정년을 다르게 설정한 경우가 있음

(2) 정규직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는 해당 기관의 정원에 반영하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직렬·직급·임금체계 등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기존 정규직의 해당 직종·직급으로 편입하거나, 유사 직종 또는 적정 직급이 없을 경우 직종·직급을 신설하여 전환하기도 하였다.

V 국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 정규직 전환 결과

1. 개 요

국공립학교, 국립대학 중 정규직 전환대상이 있는 기관은 총 8,844개 기관이며, 전환대상은 51,205명이다. 이중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기관은 총 8,794개 기관이며, 전환인원은 49,515명이다.

2007년 12월말 현재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총 50개 기관(미전환 인원 154명)으로 이중 초·중·고등학교 49개소는 근로자 협의, 국립대학 1개소는 근로조건 설정 등 내부 전환절차 추진 지연 등으로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2. 전환인원

2007년 6월 26일 확정된 국·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원은 총 51,205명이며, 2007년 12월말 현재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총 49,515명[43]으로 전환대상 인원 대비 96.7%가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인원]

(단위 : 명)

구 분	전환 대상인원	전환 인원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50,026	48,590
국립대학	1,179	925
총 계	51,205	49,515

43) 전환을 완료한 8,794개 기관의 전환인원 49,492명과,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50개 기관의 일부 전환된 인원 23명을 포함한 인원임

전환이 완료된 8,794개 기관의 당초 전환대상 인원과 실제 전환 인원을 비교하면 1,536명이 적게 전환되었는데[44], 정규직 전환대상인 1,482명은 전환 전에 퇴직하였으며 113명은 본인이 전환을 희망하지 않았다.

또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나 근속기간 산정 착오로 전환대상에 포함된 경우 등 622명은 전환 제외하였다.

[정규직 전환 제외 인원]

(단위 : 명)

전환인원 차이 발생사유	사유별 전환 제외인원
전환전 퇴사	1,482
근속기간 착오 등으로 전환 제외	622
본인 거부	113
기 타	394
총 계	2,611

그리고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었으나 근속기간 산정 착오로 전환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등 1,075명은 전환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정규직 추가 전환 인원]

(단위 : 명)

전환인원 차이 발생사유	추가 전환인원
근속기간 착오 등으로 추가 전환	1,075

44)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8,794개 기관의 당초 전환대상 인원은 51,028명이고, 2007년 12월말 현재 실제 전환인원은 49,492명임

기관별 정규직 전환 인원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소속 공립 초·중·고등학교 포함)은 10,98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체 전환 인원의 22.2%로 전환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교육청 5,077명, 경상북도교육청이 3,793명, 경상남도교육청 3,610명, 전라남도교육청 3,086명, 부산시교육청 2,937명, 충청남도교육청 2,525명 등의 순으로 전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5)]

[주요기관 전환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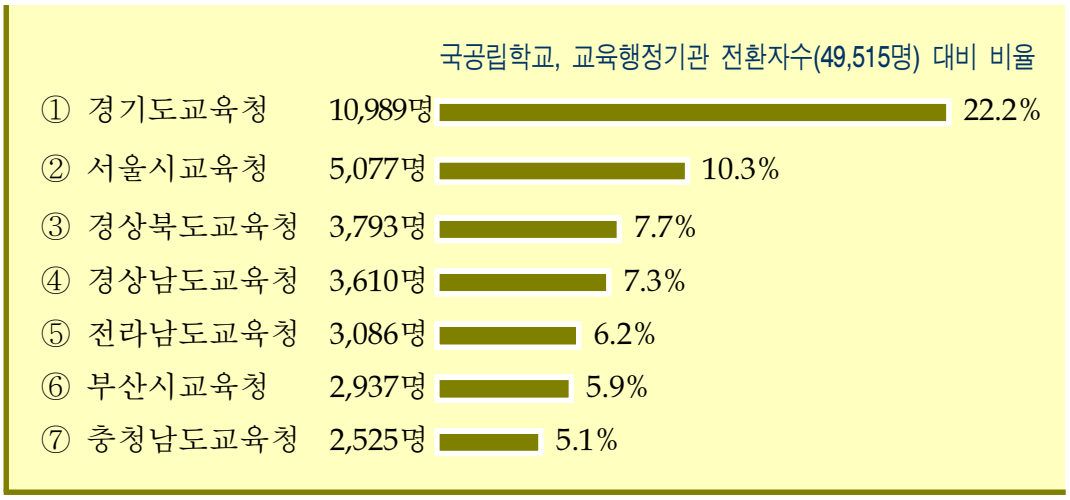

3. 전환자 처우개선

(1) 처우개선 수준

각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 책임도, 곤란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였다.

45)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소속 시도교육청에 포함하여 분석

시도교육청과 국·공립학교의 경우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4%씩 연봉액 인상을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2004년에 일반직 9급 또는 기능직 10급 1호봉의 임금수준 대비 84% 수준이었던 비정규직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8년에는 100% 수준이 되도록 각급 학교에 처우개선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토록 하였다. 비정규직 직종별로 처우개선 예상액을 보면 영양사·사서의 경우 2008년 임금은 일반직 9급 1호봉 수준인 1,722만원(연봉액)이 되며 2008년 처우개선액은 98만원(연봉액)이다. 또한 사무보조원의 경우 2008년 임금은 기능직 10급 1호봉 수준인 1,544만원(연봉액)이 되며 2008년 처우개선액은 88만원(연봉액)이다.

[근로기준일수 기준 처우개선]

(단위 : 천원, 연봉액)

직종 (근로기준일)	지급기준	'07연봉액 (기준 96%)	'08연봉액 (기준 100%)	인상액 ('08-'07)
영양사, 사서 (365일)	일반직9급1호	16,241	17,222	981
사무보조 (365일)	기능10급1호	14,558	15,437	879
전산,교무,실험,실습보조 (275일)	기능10급1호	10,968	11,630	662
조리사,조리원 (245일)	기능10급1호	9,771	10,361	590

※ '08 처우개선 연봉액 : 처우개선 4% 인상 + '0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 반영

국립대학의 경우 전환자의 처우개선 수준을 보면 전환자 925명 중 79.8%에 해당하는 738명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인상폭은 월평균 0~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가 6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40만원 인상된 경우가 105명, 60~80만원 개선된 경우가 2명, 40~60만원 인상된 경우가 1명, 8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가 1명이다.[46)]

46) 다만, 동일대학 내부에서도 기성회계, 자체예산(연구비, 수입대체경비 등) 등 재원이 다양하고 고용주체가 상이하여 소속기관별로 처우개선 수준 및 개선시기에 상당한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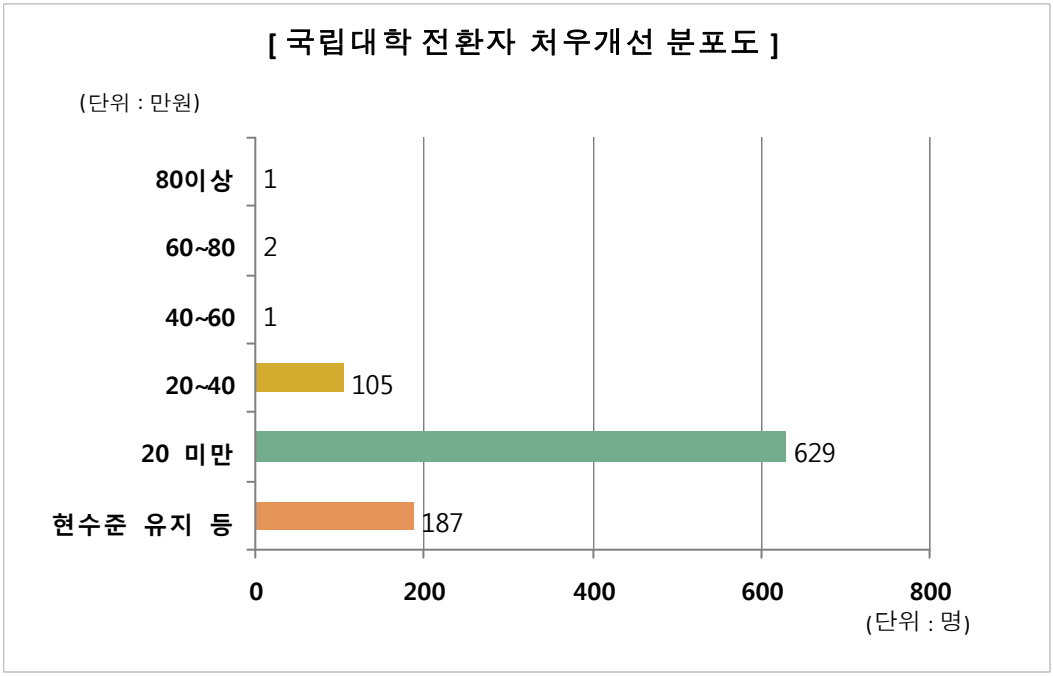

아울러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강원대는 조리종사원에 대해 학자금 대출, 복리후생비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전남대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한국체육대는 학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복리후생 혜택을 확대하였다.

(2) 처우개선 기준

시도교육청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기준은 정규직 전환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이 기능직 10급 또는 일반직 9급 1호봉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이 기능직 10급 또는 기존 민간인 정규직인 기성회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부는 일반직 7급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도 있다.

(3) 처우개선 시기

처우개선 시기는 총 8,794개 기관 중 일부 국립학교·국립대학은 전환과 함께 처우를 개선할 계획[47]이며, 시도교육청 및 관할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은 2007학년도는 현 처우수준을 유지하고 2008학년도부터 처우를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경우는 부속기관별로 개선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년 및 인사노무관리

(1) 정년

대부분의 기관이 정규직 전환자의 정년을 55~58세로 설정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50세, 53세, 60세 등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부속기관별, 직종별로 정년을 다양하게 설정한 경우가 많았다.

47) 전남대, 전북대, 한국교원대, 한국체대 등은 전환과 동시에 처우를 개선하고 경북대, 군산대 충남대 등은 2008년부터 처우를 개선할 계획

(2) 인사노무관리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 규정 ” 또는 “취업규칙” 등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학의 정규직 전환자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해당기관의 민간인 정규직 인사노무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 록

[부록 1] 공공부문별 정규직 전환 내용

[부록 2] 2006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부록 3]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

[부록 4]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참고자료

[부록 5]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 참고자료

[부록 6]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486호)

[부록 7]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부록 1

공공부분별 정규직 전환 내용

1. 중앙행정기관 정규직 전환내용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정규직 전환내용

3. 국·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정규직 전환내용

4.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내용

1. 중앙행정기관 정규직 전환 내용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총 계		6,879	6,408				
1	재정경제부	사무보조원	30	30	07.10	1,020~2,062	1,100~2,160	57
		소계	30	30				
2	교육부	사무보조원	11	11	07.10	1,170~1,200	1,210~1,291	57
		사무보조원(행정원)	1	1	"	1,990	2,210	"
		사료연구위원	2	0	-	-	-	-
		영양사	1	1	"	1,430	1,450	57
		조리보조원	3	3	"	1,200	1,260	"
		소계	18	16				
3	국방부	사무보조원	6	6	07.10	1,058~1,092	1,418~1,485	57
		행정봉사요원	2	2	"	880	1,133~1,269	"
		조리원	1	1	07.09	870~900	1,014~1,170	"
		소계	9	9				
4	통일부	보육사	1	1	07.10	1,170	1,270	57
		조리종사원	2	2	"	1,010	1,110	"
		사감	1	1	"	1,200	1,300	"
		소계	4	4				
5	법무부	사무보조원	83	79	07.10	820~1,647	970~1,647	57
		운전원	5	6	"	1,386~2,060	1,386~2,060	"
		전기원	1	1	"	1,610~1,810	1,610~1,810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기계원	1	1	07.10	1,503~1,959	1,503~1,959	57
		안전관리원	3	1	"	1,358~1,558	1,358~1,558	"
		시설관리원	0	1	"	1,358~1,558	1,358~1,558	"
		조리종사원	49	58	"	930~1,400	1,040~1,530	"
		보육사	1	1	"	750	772	"
		공관관리원	1	1	"	677	698	"
		매점판매원	1	1	"	914	941	"
		소계	145	150				
6	행정자치부	시설방호	1	0	-	-	-	-
		국가기록물정리	215	202	07.11	1,064~1,227	1,164~1,227	57
		사무보조원	15	15	"	1,026	1,105	"
		소계	231	217				
7	문화관광부	학예연구보조원	34	33	07.11	960~1,570	960~1,570	57
		자료조사정리원	5	5	"	1,300~1,650	1,300~1,650	"
		행정보조원	16	11	"	980~1,732	980~1,732	"
		사서보조원	13	13	"	1,122~1,509	1,122~1,509	"
		시설관리원	23	19	"	1,210~2,390	1,210~2,390	"
		전산보조원	11	8	"	1,000~1,888	1,000~1,888	"
		안내원	4	4	"	1,000~1,509	1,000~1,509	"
		청소원	11	6	"	1,030~1,540	1,030~1,540	"
		매수표원	4	3	"	1,210~1,460	1,210~1,460	"
		운전원	2	2	"	1,200~1,500	1,200~1,500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공연기획지원요원	3	4	07.11	1,200~2,160	1,200~2,160	57
		공연전시요원	1	1	"	1,200~2,160	1,200~2,160	"
		상담원	1	0	-	-	-	-
		보건복지요원(영양사)	1	1	07.11	1,450	1,450	57
		조리원	2	2	"	1,200	1,200	"
		기록물정리요원	1	1	"	1,000~1,200	1,056~1,256	"
		교육기자재관리원	10	8	"	1,030~2,160	1,030~2,160	"
		사회교육보조원	6	4	"	907~1,686	907~1,686	"
		보건복지요원 (물리치료사)	1	1	"	1,435~1,929	1,435~1,929	"
		미술창작스튜디어 운영요원	2	2	"	1,550~2,300	1,550~2,300	"
		작품관리원	9	9	"	1,100	1,100	"
		작품설명원	1	1	"	1,100	1,100	"
		소계	161	138				
8	외교통상부	사무보조원	32	25	07.10	1,056	1,185	57
		사서보조원	23	22	"	1,122	1,254	"
		소계	55	47				
9	건설교통부	사무보조원	30	29	07.10	800~1,649	800~1,649	57
		청소원	2	2	"	850~1,046	850~1,046	"
		식당종사원	8	8	"	922~1,125	922~1,125	"
		소계	40	39				
10	산업자원부	사무보조원	3	6	07.09	1,065~1,280	1,250~1,280	57
		전산보조원	4	4	"	906~1,256	1,250~1,256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시험연구보조원	15	15	07.09	906~1,256	1,250~1,256	57
		소계	22	25				
11	노동부	비서	40	38	07.10	824~1,120	978~1,223	57
		사무보조원	199	195	"	804~1,332	978~1,332	57
		소계	239	233				
12	농림부	시험연구보조원	7	7	07.10	910~1,010	950~1,020	57
		환경미화원	1	1	"	798	798	"
		소계	8	8				
13	환경부	사무보조원	35	35	07.10	800~1,227	1,199~1,227	57
		홍보보조원 (컴퓨터편집디자인)	1	1	"	1,400~2,700	1,400~2,700	"
		사서관리보조원	1	1	"	1,400~1,500	1,400~1,500	"
		전산관리보조원	1	1	"	1,900~1,950	1,900~1,950	"
		환경과학전문연구원	23	19	"	1,100~2,550	1,227~2,550	"
		교육과정운영보조원	2	2	"	1,000~1,200	1,204	"
		시험연구보조원	7	7	"	900~1300	1,030~1,350	"
		운전원	1	1	"	1,500	1,600	"
		자료조사원	26	25	"	1,100~2,100	1,100~2,100	"
		조리원	3	3	"	774~1,100	776~1,100	"
		소계	100	95				
14	정보통신부	상시위탁집배원	484	383	07.10	1,783	1,914	57
		우체국택배원	51	44	"	1,711	1,791	"
		일용직(우편물구분)	1,030	980	"	878	906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특수지위탁집배원	84	81	07.10	748	1,049	57
		사무보조원	1	0	-	-	-	-
		환경미화원	3	2	07.10	970	1,270	57
		위생원	8	8	"	970	1,270	"
		위생원	2	2	"	970	1,000	"
		소계	1663	1500				
15	해양수산부	TAC업저버	10	10	07.10	1,536	1,536	57
		사무보조원	4	2	"	880～954	880～954	"
		사서직	1	1	"	1,360	1,360	"
		영양사	1	1	"	1,667	1,667	"
		조리원	2	2	"	1,034	1,034	"
		청소원	3	3	"	779~1,166	811~1,198	"
		통계조사원	62	61	"	1,150～1,209	1,150～1,209	"
		소계	83	80				
16	보건복지부	상례사	3	2	07.10	2,347	2,565	57
		연구원	14	7	"	868~1,138	1,118~1,388	"
		연구위원	18	18	"	1,633~2,349	1,678~2,412	"
		응급의료전문요원	1	1	"	1,700~2,100	1,768~2,184	"
		청소원	2	1	"	550~600	590~690	"
		행정보조원	3	3	"	1,200~1,500	1,242~1,500	"
		소계	41	32				
17	국가보훈처	사무보조원	3	3	07.09	1,050~1,200	1,260~1,418	5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사료발굴연구원	3	3	07.10	2,432~2,585	2,575~2,817	57
		소계	6	6				
18	국정홍보처	인터넷분석	2	2	07.10	1,300	1,500	57
		신문보도분석	2	1	"	1,300	1,500	"
		홍보보조원	5	2	"	2,000~2,600	2,000~2,600	"
		방송기자	4	4	"	1,600~1,800	1,800~2,000	"
		방송기술	4	4	"	1,400~1,600	1,800~2,000	"
		방송자료	2	2	"	1,246	1,873	"
		방송촬영	1	1	"	1,246	1,873	"
		시설관리	1	1	"	1,620	1,991	"
		소계	21	17				
19	기획예산처	사무보조원	26	26	07.10	1,531~1,700	1,531~1,700	미정
		사서보조원	1	1	"	1,883	1,883	"
		소계	27	27				
20	법제처	사무보조원	2	2	07.12	1,150	1,300~1,350	57
		소계	2	2				
21	관세청	사무보조원	3	3	07.10	1,034~1,086	1,064~1,133	57
		조리원	13	13	"	600~1,139	644~1,139	"
		청소원	3	3	"	654~911	806~1,078	"
		소계	19	19				
22	국세청	비서	105	106	07.10	1,002	1,200	57
		사무보조원	87	88	"	1,002	1,196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전화교환	65	66	07.10	1,154	1,281	57
		시설관리원	1	1	"	1,002	1,249	"
		소계	258	261				
23	기상청	행정보조원	3	3	07.10	920~1,050	1,000~1,210	57
		전산보조원	1	1	"	1,210	1,210	"
		소계	4	4				
24	농촌진흥청	사무보조원	38	34	07.09	841~1,120	1,019~1,120	57
		사육사	9	5	"	841~1,123	1,180~1,298	"
		청소 및 시설관리원	2	1	"	914	1,284	"
		시험연구보조원	339	290	"	731~1,158	1053-1158	"
		영양사	6	5	"	841~914	1077-1184	"
		조리종사원	3	2	"	841	1,192	"
		포장 및 온실관리원	26	14	"	802~1,040	946~1,040	"
		소계	423	351				
25	문화재청	매,수표원	13	10	07.12	1,000~1,100	1,000~1,100	57
		문화재보수원	11	8	"	1,500~1,600	1,500~1,600	"
		사무보조원	21	20	"	1,000~1,400	1,000~1,400	"
		시설관리원	37	24	"	1,000~1,200	1,000~1,200	"
		시험연구보조원	50	25	"	1,200~1,450	1,200~1,450	"
		안내원	12	12	"	1,000~1,800	1,000~1,800	"
		전산보조원	8	7	"	1,000~1,400	1,000~1,400	"
		조경원	1	1	"	1,200	1,200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153	107				
26	통계청	통계작성보조원	28	16	07.10	1,070~1,160	1,120~1,210	57
		사무보조원	9	9	"	1,070~1,160	1,120~1,210	"
		사망원인코딩요원	4	4	"	1,330	1,390	"
		통계조사원	330	315	"	1,280	1,520	"
		소계	371	344				
27	특허청	사무보조원	84	83	07.09	1,031~1,245	1,031~1,245	57
		식당 조리종사원	1	1	"	1,109~1,145	1,109~1,145	"
		소계	85	84				
28	해양경찰청	간호조무사	1	1	07.10	1,060	1,170	57
		행정보조원	21	22	"	880~1,060	1,140	"
		시설관리원	1	0	-	-	-	-
		청소원	12	12	07.10	1,030	1,140	57
		소계	35	35				
29	경찰청	사무보조원	1569	1531	07.09	860	860	57
		보일러조작원	87	84	"	1,296	1,296	"
		환경미화원	69	65	"	852	852	"
		주방보조원	76	69	"	762	762	"
		조리사	10	11	"	865	865	"
		전기시설관리원	13	11	"	1,254	1,254	"
		건물관리원	6	5	"	1,191	1,191	"
		차량관리원	17	17	"	1,230	1,230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안전관리원	47	44	07.09	1,135	1,135	57
		컴퓨터입력	11	10		1,172	1,172	"
		건물보수원	1	2	"	1,208	1,208	"
		간호보조원	1	1	"	1,000	1,000	"
		구내매점원	3	3	"	772	772	"
		주차정산원	9	9	"	1,100	1,100	"
		세탁보조원	1	1	"	840	840	"
		위생미용원	3	3	"	818	818	"
		운전보조원	1	1	"	1,500	1,500	"
		영양사		1	"	813	813	"
		병동환자보조원	1	1	"	840	840	"
		소계	1925	1869				
30	조달청	콜센터상담원	25	23	07.10	1,366~1,500	1,460~1,669	57
		공사원가및설계검토원	23	18	"	1,891	2,008	"
		공사원가및설계검토원	1	1	"	1,891	2,008	"
		선물거래연구원	1	1	"	3,278	3,573	"
		사무보조원	3	2	"	838	1,280	"
		조리종사 및 청소원	7	7	"	838	1,280	"
		소계	60	52				
31	중소기업청	사무보조원	51	48	07.10	955~1,162	964~1,450	57
		시험보조원	9	8	"	880~1,118	964~1,450	"
		소계	60	56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 (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32	산림청	행정보조원	57	51	07.10	803~1,200	957~1,300	57
		표본제작관리원	2	2	"	825	1,134	"
		통계요원	1	1	"	978	1,134	"
		종자품질검사원 (종자관리원)	5	0	-	-	-	-
		조리원	19	18	07.10	775~1,050	882~1,196	57
		전산보조원	5	3	"	800~1,028	1,172~1,217	"
		유전자원관리원	2	1	"	800	1,134	"
		원격탐사테크니션	2	1	"	875	1,134	"
		양묘장관리원	6	6	"	975~1,446	1039~1,446	"
		시험연구보조원	18	15	"	825~1,180	882~1,180	"
		시설관리원	22	22	"	750~1,104	882~1,119	"
		포장·온실관리원	1	0	-	-	-	-
		사서원	2	2	07.10	875~1,275	1,109~1,275	57
		병해충진단원	4	3	"	1,000~1,240	1,134~1,240	"
		홍보물제작원	1	0	-	-	-	-
		소계	147	125				
33	소방방재청	사무보조원	4	2	07.10	1,150	1,300	57
		조리종사원	1	1	"	850	1,210	"
		소계	5	3				
34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보조원	4	4	07.10	930~1,100	1,071~1,271	57
		실험동물관리보조원	3	3	"	930	1,000	"
		소계	7	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35	대검찰청	행정보조원	214	214	07.10	1,000	1,150	57
		소계	214	214				
36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사무보조원	5	5	07.10	1,500	1,600	57
		운전원	1	1	"	2,000	2,100	"
		소계	6	6				
37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	6	5	07.10	1,475~1,545	1,559~1,749	60
		사무보조원	1	1	"	1,448~1,500	1,532~1,584	"
		소계	7	6				
38	국가청렴위원회	행정보조원	4	4	07.12	1,060	1,190	57
		소계	4	4				
39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보조원	3	4	07.10	1,086	1,232~1,330	57
		소계	3	4				
40	금융감독위원회	사무보조원	5	5	07.10	1,170	1,215~1,280	57
		소계	5	5				
41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보조원	138	136	07.10	700~1,100	1,100	55
		소계	138	136				
42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보조원	4	5	07.10	1,168~1,246	1,190~1,542	57
		소계	4	5				
43	중앙인사위원회	조리원	3	3	07.09	1,380~1,550	1,650~1,800	57
		소계	3	3				
44	공정거래위원회	전산보조원	1	1	07.10	1,670	1,670	57
		사무보조원	6	6	"	1,300	1,300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7	7				
45	국무조정실	사무보조원	8	8	07.10	950	950	57
		자료관리원	1	1	"	950	950	"
		운전원	1	1	"	950	950	"
		소계	10	10				
46	대통령비서실	조경원	5	0	-	-	-	-
		조리원	2	1	07.10	1,600~1,800	1,600~1,800	"
		정리원(청소원)	3	5	"	1,600~1,800	1,600~1,800	"
		소계	10	6				
47	대통령경호실	조리원	6	5	07.10	1,069~1,643	1,085~1,668	57
		이미용사	5	5	"	1,000~1,500	1,015~1,523	"
		소계	11	10				

* 일부기관의 경우 '08년도부터 전환자 처우를 개선할 계획으로 '07년에 전환결과 제출시의 처우개선 임금액과 '08년도 예산집행시 실제 지급 임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정규직 전환 내용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총계	6,303	4,678				
1	서울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GIS편집)	7	7	07.10	1,445	2,267	58
			소계	7	7				
2	서울	동대문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945~2,085	1,945~2,085	57
			소계	1	1				
3	서울	중랑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945~2,085	1,945~2,085	57
			소계	1	1				
4	서울	성북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945~2,085	1,945~2,085	57
			소계	1	1				
5	서울	강북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945~2,085	1,945~2,085	57
			소계	1	1				
6	서울	노원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945~2,085	1,945~2,085	57
			소계	1	1				
7	서울	은평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945~2,085	1,945~2,085	57
			소계	1	1				
8	서울	서대문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945~2,085	1,945~2,085	57
			식당(취사)관리	8	0	-	-	-	-
			소계	9	1				
9	서울	양천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945~2,085	1,945~2,085	57
			소계	1	1				
10	서울	영등포구	의료급여관리사	0	1	07.10	1,945~2,085	1,945~2,085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0	1				
11	서울	강서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945~2,085	1,945~2,085	57
			소계	1	1				
12	부산	부산광역시	예방접종관리	1	1	07.09	900	1,000	57
			토양검정	1	1	"	700	1,000	"
			소계	2	2				
13	부산	영도구	국공유재산관리	1	1	07.10	653~852	953~1,752	57
			의료급여관리보조	1	0	-	-	-	-
			소계	2	1				
14	부산	기장군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20	-				
15	대구	대구광역시	토양검정실험보조	1	1	07.10	760	1,260	57
			소계	1	1				
16	대구	북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800	1,800	57
			의료급여전산관리사무원	1	0	-	-	-	-
			굴착작업, 준설, 누수수리	1	1	07.10	760	1,260	57
			하수도준설	4	0	-	-	-	-
			도로보수원	2	0	-	-	-	-
			소계	9	2				
17	대구	남구	도로보수원	1	0	-	-	-	-
			의료급여관리사	0	1	07.11	1,430	1,430	57
			소계	1	1				
18	대구	동구	의료급여관리사	1	0	-	-	-	-
			재산관리보조	1	1	07.11	725	1,192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대도시방문보건사업	1	0	-	-	-	-
			청사청소원	4	0	-	-	-	-
			도로보수원	4	3	07.11	1,618	1,781	57
			소계	11	4				
19	대구	서구	의료급여관리사	2	1	07.11	1,833	1,833	57
			방문보건사업	3	4	"	1,625	1,625	"
			식당취사관리	4	2	"	1,395	2,047	"
			소계	9	7				
20	대구	달서구	의료급여전산보조	1	0	-	-	-	-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 및 압류	2	2	07.12	1,020	1,300	57
			자동차등록원부발급보조	1	1	"	1,020	1,300	"
			불법주정차단속	2	2	"	1,160	1,490	"
			비상급수시설관리보조	1	1	"	1,160	1,490	"
			소계	7	6				
21	대구	달성군	국공유재산실태조사	1	1	07.12	800	1,430	57
			한방진료실보조원	3	3	"	900	1,548	"
			공원관리	1	0	-	-	-	-
			휴양림시설관리	1	0	-	-	-	-
			군민독서실관리원	1	1	07.12	900	1,307	57
			녹지관리	1	0	-	-	-	-
			소계	8	5				
22	인천	인천광역시	청사청소원	1	1	07.10	1,000	1,840	60
			식당(취사)관리	2	2	"	1,000	1,900~1,988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3	3				
23	인천	중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856	1,856	57
			의료급여관리	1	1	"	1,102	1,463	"
			순찰감시원, 건널목감시원	3	3	"	2,120	2,120	"
			운동처방사	1	1	"	816	2,019	"
			소계	6	6				
24	인천	남동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850	1,851	57
			의료급여관리	1	1	"	1,153	1,833	"
			소계	2	2				
25	인천	연수구	국공유재산관리	1	1	07.10	888	1,406	57
			의료급여관리사	1	1	"	1,956	1,956	"
			소계	2	2				
26	인천	부평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850	1,942	57
			소계	1	1				
27	인천	계양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430	1,500	57
			소계	1	1				
28	인천	강화군	의료급여전산보조	1	1	07.10	1,100	1,501	57
			한방보건(진료보조원)	2	2	"	1,300	1,751	"
			방사선관리 (검사장비보조원)	1	1	"	1,300	1,751	"
			농기계수리원	1	1	"	1,300	1,751	"
			소계	5	5				
29	인천	옹진군	구강보건사업	1	1	07.10	1,000	1,000	57
			면사무소 사무보조	2	2	"	1,000	1,0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청사관리	3	3	07.10	1,000	1,000	57
			소계	6	6				
30	광주	광주광역시	여성긴급전화상담원	4	4	07.10	1,300	1,600	57
			토양검정및조직배양실 운영보조	2	0	-	-	-	-
			농업기술정보화보조	1	1	07.10	700	1,600	57
			문화유적지관리	1	1	"	800	1,600	"
			식당취사관리	4	4	"	800	1,600	"
			건설공사품질시험보조	1	1	"	800	1,600	"
			소계	13	11				
31	광주	광주광산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400	1,400	57
			구강보조사업보조	1	1	"	1,200	1,200	"
			소계	2	2				
32	광주	광주 북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690	1,901	59
			재활용선별	4	4	"	977	1,901	"
			소계	5	5				
33	광주	광주 동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802~1,570	1,183~2,719	58
			구보편집보조	1	1	"	802~1,570	1,183~2,719	"
			벤처창업보육보조	1	1	"	802~1,570	1,183~2,719	"
			사진, 비디오 촬영기사, 음향기기 유지관리 보조, 보일러(배관), 전기, 통신공	1	1	"	802~1,026	1,727~2,470	"
			입장객 관리	1	1	"	802~1,026	1,727~2,470	"
			청사관리	2	1	"	802~1,026	1,727~2,470	"
			재활용 선별	1	1	"	802~1,026	1,727~2,47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연극시설관리보조	1	1	07.10	802~1,026	1,727~2,470	58
			전화교환보조	1	1	"	802~1,026	1,727~2,470	"
			소계	10	9				
34	광주	광주 남구	건강생활실천사업	2	2	07.10	1,900	1,900	57
			대도시방문보건사업	7	7	"	2,400	2,400	"
			방역소독	1	1	"	1,600	1,950	"
			방문주간보호센터송영관리	1	1	"	1,700	1,950	"
			소계	11	11				
35	대전	대전광역시	양곡지원관리	1	0	-	-	-	-
			여권발급	1	1	07.10	654~944	761~2,089	60
			주요전염병관리	1	1	"	654~944	761~2,089	"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	1	1	"	654~944	761~2,089	"
			지출증빙자료정리보조	1	0	-	-	-	-
			식당(취사)관리	3	2	07.10	603	1,204	60
			소계	8	5				
36	대전	동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09	1,500~1,700	1,700~2,000	57
			구강보건사업	2	2	"	1,500~1,700	1,700~2,000	"
			소계	3	3				
37	대전	서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500~2,000	1,500~2,000	57
			소계	1	1				
38	대전	중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580	1,641	57
			소계	1	1				
39	대전	유성구	의료급여관리사	1	1	07.09	1,400	2,022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환경미화원	20	20	07.09	880	2,780	57
			가로수관리	2	2	"	628~880	1,450~2,780	"
			공원관리	1	1	"	628~880	1,450~2,780	"
			수영장, 체육시설 관리	2	2	"	628~880	1,450~2,780	"
			입장객 관리	4	4	"	628~880	1,450~2,780	"
			기동생활민원처리	2	2	"	628~880	1,450~2,780	"
			생활지도	3	3	"	628~880	1,450~2,780	"
			문서전달수발, 사환	1	1	"	628~880	1,450~2,780	"
			민원인 안내	2	2	"	628~880	1,450~2,780	"
			부속실 등	1	1	"	628~880	1,450~2,780	"
			의회단순업무 해당인력	1	1	"	628~880	1,450~2,780	"
			소계	40	40				
40	울산	남구	국공유재산관리	1	1	07.09	1,188	1,296	57
			세정관리	4	4	"	1,188	1,296	"
			예산관리	1	1	"	1,188	1,296	"
			의료급여관리	1	1	"	1,188	1,296	"
			재무계약관리	1	1	"	1,188	1,296	"
			지적관리	2	2	"	1,188	1,296	"
			호적관리	9	9	"	1,188	1,296	"
			환경관리	1	1	"	1,188	1,296	"
			상담보조	6	6	"	1,188	1,296	"
			자원봉사센터	3	3	"	1,188	1,296	"
			문화유적지관리	1	0	-	-	-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식당(취사)관리	2	2	07.09	1,188	1,296	57
			청사관리	1	1	"	1,188	1,296	"
			불법주정차단속	6	6	"	1,188	1,296	"
			주차관리	1	1	"	1,188	1,296	"
			문서전달수발	1	1	"	1,188	1,296	"
			부속실등	4	4	"	1,188	1,296	"
			소계	45	44				
41	울산	동구	기록물관리	1	0	-	-	-	-
			상담보조	5	5	07.09	1,300	1,431	59
			자원봉사센터	1	1	"	1,300	1,431	"
			전산자료입력보조요원	6	6	"	1,300	1,431	"
			인사관리보조	1	1	"	1,300	1,431	"
			해피콜센터보조	1	1	"	1,300	1,431	"
			소계	15	14				
42	울산	울주군	의료급여관리사	1	1	07.09	1,500	1,500	57
			소계	1	1				
43	경기	경기도	농업경영정보관리	1	1	07.10	900	1,500	55
			도서관관리	1	1	"	900	1,500	"
			예산관리	1	1	"	900	1,500	"
			개별공시지가조사	1	1	"	900	1,500	"
			민원제증명발급	1	0	-	-	-	-
			단순행정보조 (전산입력,사무보조)	1	1	07.10	900	1,500	55
			문화유적지 관리	4	0	-	-	-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식당(취사) 관리	3	4	07.10	900	1,500	55
			청사관리	4	0	-	-	-	-
			농작업 현업보조	9	2	07.10	900	1,500	55
			실험보조	23	23	"	900	1,500	"
			비서실운영	1	1	"	900	1,500	"
			미용실관리	1	1	"	900	1,500	"
			소계	51	36				
44	경기	수원시	도서관관리	10	10	07.10	874	1,927	61
			세정관리	3	3	"	874	1,927	"
			지적관리	2	2	"	874	1,927	"
			호적관리	2	2	"	874	1,927	"
			환경관리	1	1	"	874	1,927	"
			매표원	1	1	"	874	1,927	"
			문서전달수발,▪사환	3	2	"	874	1,927	"
			소계	22	21				
45	경기	성남시	청사관리	3	3	07.10	800~900	1,200~1,300	60
			휴양림시설관리	1	0	-	-	-	-
			소계	4	3				
46	경기	의정부시	단순노무원	1	1	07.09	900~1,000	1,000~1,300	59
			행정보조원	4	4	"	1,200~1,400	1,400~1,800	"
			소계	5	5				
47	경기	광명시	환경관리	1	1	07.10	750	검토중	57
			매표원	1	1	"	900	검토중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식당(취사)관리	1	1	07.10	750	검토중	57
			불법광고물단속	0	2	"	1,213	검토중	"
			소계	3	5				
48	경기	평택시	산림병해충예찰	1	1	07.10	1,500	1,800	57
			개별공시지가조사	8	8	"	1,500	1,800	"
			소계	9	9				
49	경기	동두천시	도서관관리	4	4	07.10	900~1,000	1,150~1,300	57
			환경관리	1	1	07.06	900~1,000	1,150~1,300	"
			박물관관리	1	1	07.10	900~1,000	1,150~1,300	"
			소계	6	6				
50	경기	고양시	병해충예찰	1	1	07.10	1,073	1,599	61
			가로수관리	1	1	"	1,539	2,505	"
			산림관리	1	1	"	1,539	2,505	"
			소계	3	3				
51	경기	구리시	재무계약관리	1	1	07.10	800~900	1,300~1,500	57
			소계	1	1				
52	경기	남양주시	입장객관리	1	0	-	-	-	-
			수영장,체육시설관리	2	0	-	-	-	-
			청사청소원	2	0	-	-	-	-
			실험보조	2	2	07.10	1,493	1,761	60
			농기계수리	1	1	"	1,840	1,761	"
			부속실등	1	1	"	847	1,406	"
			소계	9	4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53	경기	안산시	의료급여	1	1	07.10	1,545	1,707	60
			기동생활민원처리	2	2	"	1,272	1,486	"
			건축물지도원	2	2	"	1,680	1,707	"
			가로수관리	2	1	"	965	1,485	"
			소계	7	6				
54	경기	시흥시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545	1,553	60
			소계	1	1				
55	경기	군포시	불법주정차단속	9	5	07.10	831	914	57
			식당(취사)관리	1	1	"	831	914	"
			배수장,취정수장시설관리	2	2	"	831	914	"
			공중화장실 관리	1	0	-	-	-	-
			소계	13	8				
56	경기	의왕시	방문보건사업	1	1	07.10	1,500	3,101	57
			공원관리	4	1	"	1,160	2,661	"
			청사청소원	1	1	"	1,160	2,661	"
			기동생활민원처리원	2	1	"	1,036	2,537	"
			소계	8	4				
57	경기	이천시	개별공시지가관리	5	5	07.10	800~1,000	900~1,300	57
			교통관리	2	2	"	800~1,000	900~1,300	"
			국공유재산관리	2	2	"	800~1,000	900~1,300	"
			지적관리	2	2	"	800~1,000	900~1,300	"
			여권발급	1	1	"	800~1,000	900~1,300	"
			방문보건사업	1	0	-	-	-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	3	0	-	-	-	-
			주차장주차관리	1	1	07.10	800~1,000	900~1,300	57
			부속실등	1	1	"	800~1,000	900~1,300	"
			소계	18	14				
58	경기	안성시	세정관리	3	0	-	-	-	-
			산림병해충방제	1	1	07.10	1,000~1,200	1,100~1,400	57
			소계	4	1				
59	경기	화성시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974~1,545	1,142~2,284	60
			국공유재산관리	3	3	"	974~1,545	1,142~2,284	"
			상하수도요금 전산자료관리	3	3	"	974~1,545	1,142~2,284	"
			소계	7	7				
60	경기	광주시	여권발급	1	1	07.10	850~900	1,000~1,100	57
			식당(취사)관리	4	1	"	850~900	1,000~1,100	"
			청사관리	1	0	-	-	-	-
			불법광고물단속	2	0	-	-	-	-
			의료급여관리사	0	1	07.10	1,750~1,800	1,750~1,800	57
			영농활동보조	0	1	"	850~900	1,000~1,100	"
			소계	8	4				
61	경기	양주시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500~1,600	1,800~2,000	57
			방역소독	1	1	"	1,000~1,100	1,800~2,000	"
			소계	2	2				
62	경기	양평군	지적관리	2	2	07.10	800~900	1,000~1,200	57
			환경관리	1	1	"	800~900	1,000~1,2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노인건강관리	1	1	07.10	800~900	1,000~1,200	57
			민원제증명발급	3	3	"	800~900	1,000~1,200	"
			과학영농시설관리	2	2	"	1,200~1,300	1,500~1,700	"
			식당관리	1	1	"	800~900	1,000~1,200	"
			청사청소원	1	1	"	800~900	1,000~1,200	"
			가축질병진단실	1	1	"	800~900	1,000~1,200	"
			실험보조	8	8	"	800~900	1,000~1,200	"
			주차장주차관리	2	2	"	800~900	1,000~1,200	"
			소계	22	22				
63	경기	과천시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4	-				
64	경기	오산시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4	-				
65	경기	포천시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11	-				
66	경기	하남시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7	-				
67	경기	연천군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5	-				
68	경기	여주시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5	-				
69	경기	가평군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4	-				
70	경기	파주시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7	-				
71	경기	안양시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14	-				
72	경기	용인시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4	-				
73	강원	강원도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1	0	-	-	-	-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2	0	-	-	-	-
			농업기술보급정보화	2	2	07.09	920	1,091	57
			지역특화기술개발(원예)	4	4	"	775~850	1,015~1,165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수질변동조사	1	1	07.09	1,000	1,200	57
			토양화학성변동조사	1	1	"	1,000	1,200	"
			환경친화적 병충해관리기술	1	1	"	850	1,090	"
			강원지방 병해충 발생조사	1	0	-	-	-	-
			잎새버섯 인공재배법 개발	1	0	-	-	-	-
			지역특화기술개발 (농산물가공)	3	1	07.09	1,040~1,170	1,120~1,380	57
			신림병해충방제	3	2	"	884~1,195	1,151~1,520	"
			조림	1	1	"	898	1,213	"
			매표원	1	1	"	744	964	"
			청사청소원	1	0	-	-	-	-
			휴양림(수목원)시설관리	1	0	-	-	-	-
			농작업현업보조	5	5	07.09	775	1,091	57
			동물사육 등 사육관리보조	7	5	"	600~1,300	1,000~2,022	"
			시험 묘포장사업 인부	3	0	-	-	-	-
			실험보조	29	24	07.09	720~1,090	939~1,330	57
			소계	**68**	**48**				
74	**강원**	**춘천시**	구강보건사업	1	1	07.10	1,300~1,400	1,800~2,000	57
			금연상담사	1	1	"	1,300~1,400	1,800~2,000	"
			건강생활실천	1	1	"	1,300~1,400	1,800~2,000	"
			영양상담사	1	1	"	1,300~1,400	1,800~2,000	"
			산림병해충예찰	1	0	-	-	-	-
			방역소독	1	1	07.10	1,000~1,100	1,400~1,550	57
			농기계수리	1	1	"	1,000~1,100	1,400~1,55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농작업현업보조	6	6	07.10	1,000~1,100	1,400~1,550	57
			소계	13	12				
75	강원	원주시	도서관관리	1	1	07.10	826~1,064	1,034~1,355	57
			세정관리	1	1	"	826~1,064	1,034~1,355	"
			예산관리	1	1	"	826~1,064	1,034~1,355	"
			의료급여관리	1	1	"	826~1,064	1,034~1,355	"
			지적관리	1	1	"	826~1,064	1,034~1,355	"
			민원제증명발급	2	2	"	826~1,064	1,034~1,355	"
			상수도 전산자료입력	1	1	"	826~1,064	1,034~1,355	"
			정보화교육강사	2	2	"	826~1,064	1,034~1,355	"
			학교용지부담금 업무	1	1	"	826~1,064	1,034~1,355	"
			매표원	3	3	"	826~1,064	1,034~1,355	"
			불법주정차단속원	2	2	"	826~1,064	1,034~1,355	"
			의회보조원	1	1	"	826~1,064	1,034~1,355	"
			소계	17	17				
76	강원	강릉시	건축물관리	1	1	07.09	861	1,500	57
			일반행정보조	5	3	"	861	1,500	"
			호적관리	1	1	"	861	1,500	"
			의료급여관리	1	1	"	1,420	2,200	"
			관광안내소전문통역	3	3	"	861~1,724	1,237~2,363	"
			금연클리닉	3	0	-	-	-	-
			보육교사	2	1	07.09	1,060	1,500	57
			산림병해충방제	2	0	-	-	-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지도단속원(환경감시대)	1	1	07.09	1,248	1,500	57
			매표원	6	0	-	-	-	-
			세정관리	1	0	-	-	-	-
			소계	26	11				
77	강원	동해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	0	-	-	-	-
			의료급여관리	1	1	07.10	700~750	900~1,050	57
			호적관리	1	1	"	700~750	900~1,050	57
			지도단속원	1	1	"	700~750	900~1,050	"
			민원인안내	1	0	-	-	-	-
			청소인부	9	8	07.10	900~950	1,150~1,250	57
			관광통역원	2	2	"	900~950	1,150~1,250	"
			화단화분양묘조경	1	1	"	1,100~1,250	1,350~1,550	"
			산림병해충방제	1	1	"	1,150~1,200	1,400~1,500	"
			금연클리닉사업	1	1	"	1,300~1,330	1,550~1,630	"
			정신보건센터	1	1	"	1,300~1,330	1,550~1,630	"
			예방접종	1	1	"	1,300~1,330	1,550~1,630	"
			분뇨처리	1	1	"	1,300~1,330	1,700~1,780	"
			주민자치센터운영	1	1	"	700~750	950~1,050	"
			소계	23	20				
78	강원	태백시	청사청소원	1	1	07.09	816	1,216	57
			개별공시지가관리	1	1	"	816	1,216	"
			재무, 계약관리	3	2	"	816	1,216	"
			매표원	1	1	"	816	1,216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문서전달수발, 사환	3	2	07.09	816	1,216	57
			향토특산물판매	1	1	"	816	1,216	"
			개별주택가격조사	1	1	"	816	1,216	"
			소계	11	9				
79	강원	속초시	의료급여관리사	1	1	07.09	1,420	1,420	57
			금연상담사	1	0	-	-	-	-
			영양상담사	1	0	-	-	-	-
			예방접종등록관리	1	1	07.09	1,338	1,338	57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보조	2	1	"	791	792	"
			교통관리	2	1	"	791	1,093	"
			의료급여관리	1	1	"	791	792	"
			개별공시지가조사	1	0	-	-	-	-
			새주소도로명부여사업 조사	2	1	07.09	791	1,093	57
			보육교사	1	1	"	791	1,093	"
			자원봉사센터	1	1	"	1,073	1,450	"
			민원 제증명발급	3	3	"	791	1,093	"
			산림병해충방제	1	1	"	1,033	1,034	"
			과학영농기술서비스강화	1	1	"	781	782	"
			공원관리	2	0	-	-	-	-
			식당(취사) 관리	5	4	07.09	1,073	1,450	50
			화단화분양묘조경	1	0	-	-	-	-
			농작업 현업보조	1	1	07.09	1,073	1,450	57
			방역소독	3	1	"	1,073	1,45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상하수도검침	1	0	-	-	-	-
			지도단속원	9	8	07.09	880~1,263	880~1,263	57
			관광통역안내원	6	5	"	1,073	1,450	"
			소계	47	32				
80	강원	삼척시	예산관리	1	1	07.10	980	1,256	57
			보도자료관리	1	1	"	912	1,166	"
			개별공시지가보조	1	1	"	912	1,166	"
			공시지가발급관리	1	1	"	850	1,104	"
			의료급여관리	1	1	"	1,000	1,254	"
			관광통역안내원	2	2	"	912	1,137	"
			농업경영정보관리	1	1	"	1,000	1,254	"
			진료업무보조	1	1	"	912	1,166	"
			탄광지역개발자료관리	1	1	"	912	1,166	"
			부속실안내	6	6	"	912	1,165	"
			식당취사관리	3	3	"	912	1,165	"
			청사청소	9	7	"	820	1,073	"
			양묘,조경관리	1	1	"	1,600	2,066	"
			청사관리	3	3	"	912	1,165	"
			입장객관리	2	2	"	1,000	1,253	"
			공원관리	5	4	"	912	1,138	"
			도로보수원	2	1	"	1,000	1,294	"
			소계	41	37				
81	강원	홍천군	청사청소원	7	7	07.09	838	1,276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7	7				
82	강원	횡성군	금연상담사	1	0	-	-	-	-
			세정관리	1	1	07.09	750	1,101	57
			의료급여관리	1	1	"	830	1,101	57
			지적관리	2	1	"	920	1,101	"
			공보업무보조	1	1	"	920	1,101	"
			면단위하수처리장	3	1	"	1,100	1,201	"
			묘지관리	1	0	-	-	-	-
			문화유적관리	2	0	-	-	-	-
			청사청소원	9	8	07.09	1,100	1,451	57
			부속실인력	2	2	"	1,100	1,100	"
			시설관리(여성회관)	1	1	"	920	1,101	"
			소계	24	16				
83	강원	영월군	농업기술보급정보화	1	1	07.09	750	1,000~1,050	57
			공시지가업무보조	1	1	"	750	1,000~1,050	"
			금연클리닉운영	1	1	"	1,500	1,750~1,800	"
			묘지관리	1	1	"	750	1,000~1,050	"
			문화유적관리	3	3	"	750	1,000~1,050	"
			청사관리	4	4	"	750	1,000~1,050	"
			불법주정차단속	2	2	"	750	1,000~1,050	"
			소계	13	13				
84	강원	평창군	예산관리	1	1	07.10	850~1,027	1,192~1,370	57
			불법주정차단속	3	3	"	955~1,173	1,283~1,502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장례식장 염사	1	1	07.10	1,126~1,250	1,940~2,065	57
			관광안내요원	2	2	"	727~918	985~1,177	"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1	1	"	850~1,030	1,192~1,372	"
			산림병해충방제	1	1	"	1,070~1,263	1,308~1,502	"
			소계	9	9				
85	강원	철원군	건강생활실천사업	1	1	07.09	1,625	1,654	57
			금연클리닉	1	1	"	1,625	1,654	"
			의료급여관리	2	2	"	1,027~1,545	1,054~1,792	"
			청소년지도사	1	1	"	1,400	1,425	"
			지적관리	1	1	"	1,027	1,284	"
			개별공시지가관리	5	4	"	1,027	1,284	"
			업무보조	1	1	"	1,027	1,284	"
			전산시스템관리	3	3	"	1,027	1,284	"
			시설관리	2	2	"	1,027	1,284	"
			청사관리	3	3	"	1,027	1,284	"
			관광안내원	7	7	"	1,130	1,273	"
			특수차량운전	2	2	"	1,027~1,241	1,060~1,488	"
			도로보수원	16	16	"	1,289	1,568	"
			소계	45	44				
86	강원	화천군	의료급여사례관리	1	1	07.09	1,000~1,500	1,000~1,500	57
			개별공시지가업무	1	1	"	500~1,000	700~1,300	"
			개별주택가격업무	2	1	"	500~1,000	700~1,300	"
			농업기술보급정보화	1	1	"	500~1,000	700~1,3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공원관리	2	0	-	-	-	-
			식당취사관리	1	1	07.09	500~1,000	700~1,300	57
			청사관리	6	5	"	500~1,000	700~1,300	"
			교환원	1	1	07.09	500~1,000	700~1,300	57
			쓰레기소각로운영관리	1	1	"	500~1,000	700~1,300	"
			소계	**16**	**12**				
87	강원	양구군	청소년시설지원	2	0	-	-	-	-
			청소년상담지도	1	0	-	-	-	-
			산림병충해방제	1	0	-	-	-	-
			소계	**4**	**0**				
88	강원	인제군	통역안내원	1	1	07.10	800~950	1,192~1,416	57
			농업경영정보관리	1	1	"	630~810	933~1,200	"
			건강생활실천사업	1	1	"	1,300~1,600	2,032~2,502	"
			지도단속원(환경감시대)	3	3	"	870~1,020	1,203~1,410	"
			불법주정차단속	1	1	"	770~830	1,156~1,246	"
			수산시설관리	1	0	-	-	-	-
			소계	**8**	**7**				
89	강원	고성군	비서	2	2	07.10	1,230	1,470	57
			민원제증명발급	3	3	"	830	1,021	"
			공중화장실관리	1	1	"	1,220	1,527	"
			수영장, 체육시설관리	4	3	"	1,230	1,471	"
			도서관관리	2	2	"	1,030	1,251	"
			청사관리	3	2	"	820	1,021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15	13				
90	강원	양양군	의료급여관리	1	1	07.09	900~1,100	1,100~1,450	57
			개별공시지가관리	1	1	"	900~1,100	1,100~1,450	"
			기록물관리	1	1	"	900~1,100	1,100~1,450	"
			예산관리	1	1	"	900~1,100	1,100~1,450	"
			통계조사	1	1	"	900~1,100	1,100~1,450	"
			금연상담사	2	2	"	1,200~1,400	1,100~1,450	"
			영양상담사	1	1	"	1,200~1,400	1,100~1,450	"
			건강증진센터	2	2	"	1,200~1,400	1,100~1,450	"
			구강보건사업	1	1	"	1,200~1,400	1,100~1,450	"
			민원제증명발급	1	1	"	900~1,100	1,100~1,450	"
			매표원	2	2	"	900~1,100	1,100~1,450	"
			수영장,체육시설관리	3	3	"	1,000~1,200	1,100~1,450	"
			입장객관리	5	4	"	900~1,100	1,100~1,450	"
			시험묘포장사업인부	2	2	"	900~1,100	1,100~1,450	"
			실험보조	1	1	"	900~1,100	1,100~1,450	"
			어린이집차량기사	1	1	"	1,100~1,300	1,100~1,450	"
			지도단속원	4	4	"	1,200~1,400	1,100~1,450	"
			소계	30	29				
91	충북	충청북도	광고제작	2	1	07.10	1,100	검토중	57
			학적부db구축	1	0	-	-	-	-
			기상분석자료관리	1	1	07.10	1,100	검토중	57
			과학영농시설관리	1	1	"	1,100	검토중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시험연구보조	14	13	"	1,100	검토중	"
			예찰지도원	2	2	07.10	1,100	검토중	57
			상담원	7	7	"	1,100	검토중	"
			소계	28	25				
92	충북	청주시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600	1,900~2,100	58
			소계	1	1				
93	충북	충주시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666	2,082	57
			소계	1	1				
94	충북	영동군	의료급여관리사	0	1	07.10	1,680	1,681	57
			지적불부합	1	1	"	820	1,030	"
			개별공시지가	1	1	"	817	920	"
			지적관리	1	1	"	817	920	"
			부랑인지원사업보조원	1	0	-	-	-	-
			소계	4	4				
95	충북	옥천군	농기계수리	2	2	07.07	900	1,210	57
			새기술보급사업보조	1	0	-	-	-	-
			소계	3	2				
96	충북	음성군	청소년 지도사	1	1	07.10	1,340	1,341	57
			의료급여	1	1	"	1,600	1,601	"
			산불방지대책	1	0	-	-	-	-
			병해충 예찰	1	0	-	-	-	-
			가축질병진단실	1	0	-	-	-	-
			개별주택가격 관리	1	0	-	-	-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건축물관리	2	1	07.10	842	1,356	57
			재무,계약관리	6	0	-	-	-	-
			민원 제증명발급	9	1	07.10	842	1,356	57
			행정업무보조	3	0	-	-	-	-
			임상병리사	1	0	-	-	-	-
			청사청소원	2	0	-	-	-	-
			화단화분양묘조경	2	0	-	-	-	-
			농작업 현업보조	2	0	-	-	-	-
			소계	33	4				
97	충북	제천시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500	1,650	57
			소계	1	1				
98	충북	증평군	상하수도검침	3	0	-	-	-	-
			소계	3	0				
99	충북	진천군	운동처방사	0	1	07.10	1,250	1,250	57
			청소년지도사	0	1	"	1,250	1,250	"
			건강증진사업	2	0	-	-	-	-
			소계	2	2				
100	충북	청원군	도서관관리	1	1	07.10	1,000~1,500	1,225~1,725	57
			의료급여관리사	1	1	"	1,000~1,500	1,000~1,500	"
			물리치료사	3	3	"	1,000~1,500	1,283~1,783	"
			방사선사	1	1	"	1,000~1,500	1,283~1,783	"
			소계	6	6				
101	충남	충청남도	여권발급	1	1	07.10	860	1,410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예방접종관리	1	1	07.10	1,900	1,900	57
			가축방역사업	11	5	"	800	1,350	"
			축산물검사	2	2	"	800	1,350	"
			식당(취사)관리	2	2	"	780	1,340	"
			문서수발,사환	1	1	"	760	1,300	"
			소계	18	12				
102	충남	서산시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3	0	-	-	-	-
			예방접종등록	1	1	07.10	1,600~1,700	1,650~1,800	57
			운동처방사	1	0	-	-	-	-
			한방보건	1	5	07.10	1,300~1,400	1,350~1,500	57
			행정업무보조	1	1	"	1,300~1,400	1,350~1,500	"
			가로수관리	1	0	-	-	-	-
			가축방역소독	0	1	07.10	1,400~1,500	1,450~1,600	57
			방문보건사업	0	1	"	1,400~1,500	1,450~1,600	"
			금연상담사	0	1	"	1,400~1,600	1,450~1,700	"
			식당조리종사	0	3	"	1,200~1,400	1,250~1,450	"
			재가복지요원	0	2	"	1,700~1,800	1,750~1,900	"
			복지관 관리	0	1	"	1,200~1,400	1,250~1,500	"
			자치센터운영	0	3	"	1,200~1,400	1,250~1,500	"
			소계	8	19				
103	충남	논산시	의료급여	1	0	-	-	-	-
			도로및건물부여사업	1	0	-	-	-	-
			개별공시지가조사	2	0	-	-	-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건강상담원	0	1	07.10	700~800	1,100~1,300	57
			식당(취사)관리	0	2	"	800~900	1,200~1,400	"
			국고보조(예방접종)	0	1	"	1,700~1,800	1,700~1,800	"
			국고보조(금연상담)	0	1	"	1,700~1,800	1,700~1,800	"
			소계	4	5				
104	충남	청양군	비 서	1	1	07.10	900~1,200	1,100~1,500	57
			사무보조	1	1	"	900~1,300	1,150~1,700	"
			단순노무	4	4	"	1,000~1,300	1,100~1,600	"
			소계	6	6				
105	충남	부여군	사무보조원	15	15	07.10	1,000~1,100	1,300~1,500	57
			소계	15	15				
106	충남	서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1	0	-	-	-	-
			개별공시지가관리	5	2	07.11	911	1,388	57
			개별주택가격관리	4	0	-	-	-	-
			농업기술정보화사업	1	0	-	-	-	-
			민원제증명발급	4	0	-	-	-	-
			업무보조	11	4	07.11	911	1,388	57
			물리치료실진료보조	1	1	"	1,334	1,880	"
			진료보조	6	6	"	1,334	1,880	57
			조직배양실운영	1	0	-	-	-	-
			토양검정실운영	1	1	07.11	911	1,388	57
			금연클리닉상담사	0	1	"	1,625	2,267	"
			공원관리	1	1	"	1,268	1,791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과학영농시설관리	1	1	07.11	911	1,388	57
			입장객관리	1	1	"	911	1,388	"
			청사청소원	4	1	"	911	1,388	"
			휴양림시설관리	1	0	-	-	-	-
			가축질병관리	1	1	07.11	911	1,388	57
			친환경농업관리실	1	0	-	-	-	-
			소계	45	20				
107	충남	아산시	국고보조	11	10	07.10	1,300~1,400	1,300~1,400	60
			복식부기	1	1	"	1,000~1,100	1,300~1,500	"
			상담보조	4	0	-	-	-	-
			제증명발급	17	13	07.10	1,000~1,100	1,300~1,500	60
			자치센터운영보조	2	2	"	1,000~1,100	1,300~1,500	"
			취업정보센터	1	1	"	1,000~1,100	1,300~1,500	"
			관광통역	3	3	"	1,100~1,200	1,400~1,600	"
			인터넷방송실	1	1	"	1,400~1,500	1,700~2,000	"
			공원관리	1	1	"	1,000~1,100	1,400~1,700	"
			문화유적지관리	1	1	"	1,000~1,100	1,400~1,700	"
			취사관리	1	1	"	1,000~1,100	1,300~1,500	"
			청사청소	2	2	"	1,000~1,100	1,300~1,500	"
			휴양림관리	2	2	"	1,000~1,100	1,400~1,700	"
			기동생활민원	1	0	-	-	-	-
			실험보조	2	2	07.10	1,000~1,100	1,300~1,500	60
			재활용선별	26	11	"	1,100~1,200	1,400~1,7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하수도준설	2	0	-	-	-	-
			지도단속	1	0	-	-	-	-
			문서수발	8	8	07.10	1,000~1,100	1,300~1,500	60
			민원안내	2	2	"	1,000~1,100	1,300~1,500	"
			비서실	4	3	"	1,000~1,100	1,300~1,500	"
			소계	93	64				
108	충남	보령시	사무보조원	37	37	07.10	700~1,000	950~1,350	57
			단순노무원	21	21	"	800~1,000	1,050~1,350	"
			소계	58	58				
109	충남	천안시	사무보조원	43	42	07.10	1,600	1,600	57
			단순노무원	14	9	"	1,600	1,600	"
			청소년지도사	2	2	"	1,200~1,800	1,200~1,800	"
			의료급여관리사	1	1	"	1,700	1,70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1	1	"	1,200~1,800	1,200~1,800	"
			소계	61	55				
110	충남	금산군	영양상담사	1	1	07.10	1,000	2,501	57
			금연상담사	1	1	"	1,000	2,501	57
			운동처방사	1	0	-	-	-	-
			한방건강증진사업	2	0	-	-	-	-
			방사선사	1	1	07.10	1,000	2,501	57
			물리치료사	1	0	-	-	-	-
			사회복지사업	2	3	07.10	1,000	2,501	57
			건축물관리	1	0	-	-	-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예산관리	1	0	-	-	-	-
			지적관리	1	0	-	-	-	-
			의료급여관리	1	1	07.10	1,000	2,501	57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	0	-	-	-	-
			식당(취사)관리	3	2	07.10	1,000	2,501	57
			청사관리	2	2	"	1,000	2,501	"
			청사청소원	2	5	"	1,000	2,501	"
			휴양림시설관리	1	0	-	-	-	-
			농기계수리	1	0	-	-	-	-
			순찰감시원	2	2	07.10	1,000	2,501	57
			문서전달수발	17	15	"	1,000	2,501	"
			민원안내	2	1	"	1,000	2,501	"
			의회단순	1	0	-	-	-	-
			소계	45	34				
111	충남	당진군	방문보건사업	3	5	07.10	1,300	1,350	57
			민원제증명발급	12	12	"	687～702	1,085~1,115	57
			행정보조	37	23	"	666～755	1,011~1,189	"
			취업상담	2	1	07.10	666	1,100	57
			사진, 비디오 촬영기사, 음향기기 유지관리 보조, 보일러(배관), 전기, 통신공	12	12	"	666～1,371	695~1,805	"
			소계	66	53				
112	충남	계룡시	단순노무원	5	4	07.10	800~1,000	1,000~1,400	57
			행정보조원	3	2	"	800~1,000	1,000~1,4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8	6				
113	충남	공주시	단순노무	8	8	07.10	950	2,250	57
			행정보조	8	8	"	1,152	2,880	"
			소계	16	16				
114	충남	연기군	의료급여	1	2	07.10	800～1,420	1,500~2,420	57
			건강생활실천사업	2	2	"	1,000～1,500	1,500~2,100	"
			금연클리닉	1	0	-	-	-	-
			개별주택가격관리	1	0	-	-	-	-
			건축물관리	0	1	07.10	860	1,260~1,360	57
			국공유재산관리	1	1	"	860	1,260~1,360	"
			도서관관리	2	2	"	860	1,260~1,360	"
			세정관리	2	2	"	860	1,260~1,360	"
			환경관리	1	1	"	860	1,260~1,360	"
			물가모니터	1	1	"	860	1,260~1,360	"
			한방보건	3	2	"	860	1,260~1,360	"
			노인일자리지원	1	1	"	860	1,260~1,360	"
			민원제증명발급	13	13	"	860	1,260~1,360	"
			재난재해업무	1	1	"	860	1,260~1,360	"
			군정소식지발간	1	1	"	860	1,260~1,360	"
			농지전용업무	2	2	"	860	1,260~1,360	"
			임상병리검사보조	1	1	"	860	1,260~1,360	"
			의료업무보조	1	1	"	860	1,260~1,360	"
			산업단지안전관리	1	0	-	-	-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과학영농시설관리	1	1	07.10	860	1,260~1,360	57
			배수장,취정수장 관리	2	2	"	860	1,260~1,360	"
			보일러관리	1	0	-	-	-	-
			수영장,체육시설 관리	1	0	-	-	-	-
			식당관리	5	5	07.10	860	1,260~1,360	57
			청사관리	1	0	-	-	-	-
			상하수도검침	2	2	07.10	860	1,260~1,360	57
			재활용선별	6	0	-	-	-	-
			하수도준설	4	0	-	-	-	-
			문서전달수발	3	3	07.10	860	1,260~1,360	57
			부속실단순업무	1	2	"	860	1,260~1,360	"
			침서지구관리	0	1	"	860	1,260~1,360	"
			도로보수원	6	0	-	-	-	-
			환경미화원	3	0	-	-	-	-
			소계	72	50				
115	충남	태안군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65	-				
116	전북	전라북도	단순노무원	7	7	07.08	942	1,422	57
			행정사무보조원	41	41	"	942	1,422	"
			시험연구보조원	17	17	"	942	1,422	"
			발간,제본공	1	1	"	1,147	1,697	"
			도로·산림관리원	3	3	"	1,409	1,907	"
			소계	69	69				
117	전북	전주시	개별주택/건축물	7	7	07.09	1,500~1,800	1,500~1,800	58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교통관리/기록물관리	7	7	07.09	1,500~1,800	1,500~1,800	58
			도서관/세정관리	5	5	"	1,500~1,800	1,500~1,800	"
			의료급여관리	1	1	"	1,500~1,800	1,500~1,800	"
			환경관리	2	2	"	1,500~1,800	1,500~1,800	"
			구강보건사업	2	2	"	1,500~1,800	1,500~1,800	"
			민원제증명발급	29	29	"	1,500~1,800	1,500~1,800	"
			취업센터상담사	5	5	"	1,500~1,800	1,500~1,800	"
			공원관리	3	3	"	1,500~1,800	1,500~1,800	"
			매표관리	3	3	"	1,500~1,800	1,500~1,800	"
			체육시설관리	3	3	"	1,500~1,800	1,500~1,800	"
			식당(취사)관리	17	17	"	1,500~1,800	1,500~1,800	"
			양묘,조경	1	1	"	1,500~1,800	1,500~1,800	"
			사육관리보조	2	2	"	1,500~1,800	1,500~1,800	"
			수도점검	4	4	"	1,500~1,800	1,500~1,800	"
			재활용선별(취약지청소)	19	19	"	1,500~1,800	1,500~1,800	"
			불법광고물단속	7	7	"	1,500~1,800	1,500~1,800	"
			주차장주차관리	4	4	"	1,500~1,800	1,500~1,800	"
			민원인안내	2	2	"	1,500~1,800	1,500~1,800	"
			부속실	2	2	"	1,500~1,800	1,500~1,800	"
			의회단순업무	5	5	"	1,500~1,800	1,500~1,800	"
			지하보도가로등	4	4	"	1,500~1,800	1,500~1,800	"
			배출가스/대기오염	7	7	"	1,500~1,800	1,500~1,800	"
			방치차량단속	1	1	"	1,500~1,800	1,500~1,8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142	142				
118	전북	익산시	교통관리	1	1	07.10	800~900	1,000~1,300	57
			도서관관리	2	2	"	800~900	1,000~1,300	"
			세정관리	1	1	"	800~900	1,000~1,300	"
			환경관리	1	1	"	800~900	1,000~1,300	"
			의료급여관리	1	1	"	800~900	1,000~1,300	"
			민원제증명	3	3	"	800~900	1,000~1,300	"
			주민자치센터운영	1	1	"	800~900	1,000~1,300	"
			부담금전산보조	1	1	"	800~900	1,000~1,300	"
			과학영농시설관리	2	1	"	800~900	1,000~1,300	"
			매표원	5	5	"	800~900	1,000~1,300	"
			취사관리	5	5	"	800~900	1,000~1,300	"
			청소원	18	18	"	800~900	1,000~1,300	"
			수도점검	1	1	"	800~900	1,000~1,300	"
			불법주정차단속	1	1	"	800~900	1,000~1,300	"
			민원인안내	2	2	"	800~900	1,000~1,300	"
			실국장비서실	3	3	"	800~900	1,000~1,300	"
			소계	48	47				
119	전북	정읍시	쌀소득보전전산보조	1	0	-	-	-	-
			국공유재산관리	1	0	-	-	-	-
			금연상담사	1	0	-	-	-	-
			운동처방사	1	0	-	-	-	-
			의료급여관리	1	1	07.10	1,000～1,500	1,000～1,500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자원봉사센터	1	0	-	-	-	-
			고객전산관리(단풍미인쌀 고객전산입력및관리)	1	0	-	-	-	-
			부동산특별조치법보조	2	0	-	-	-	-
			용지보상보조	1	0	-	-	-	-
			건강체조강사	1	0	-	-	-	-
			공원관리	1	0	-	-	-	-
			묘지관리	1	1	07.10	1,000～1,500	1,000～1,500	57
			문화유적지관리	1	1	"	1,000～1,500	1,000～1,500	"
			사진비디오촬영기사등	1	0	-	-	-	-
			청사청소원	20	18	07.10	1,000～1,500	1,000～1,500	57
			농기계수리	2	2	"	1,000～1,500	1,000～1,500	"
			재활용선별	8	0	-	-	-	-
			불법주정차단속	1	1	07.10	1,000～1,500	1,000～1,500	57
			의회단순업무해당인력	1	1	"	1,000～1,500	1,000～1,500	"
			관광통역안내원	2	0	-	-	-	-
			영양사	1	1	07.10	1,000～1,500	1,000～1,500	57
			소계	50	26				
120	전북	남원시	공시지가조사	2	2	07.10	1,100~1,400	1,200~1,700	57
			교통(차량)관리	1	1	"	1,100~1,400	1,200~1,700	"
			농업경영정보관리	2	2	"	1,100~1,400	1,200~1,700	"
			세정관리	2	2	"	1,100~1,400	1,200~1,700	"
			예산관리	2	2	"	1,500~1,800	1,600~1,700	"
			시설수급자전산관리	1	1	"	1,100~1,400	1,200~1,7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수도요금전산관리	1	1	07.10	1,100~1,400	1,200~1,700	57
			시설물정보관리	1	1	"	1,100~1,400	1,200~1,700	"
			건축물조사	1	1	"	1,100~1,400	1,200~1,700	"
			방문보건사업보조	1	1	"	1,100~1,400	1,200~1,700	"
			의료급여관리	2	2	"	1,100~1,400	1,200~1,700	"
			여성자원활동센터간사	1	1	"	1,100~1,400	1,200~1,700	"
			농어촌마을사업자료관리	1	1	"	1,100~1,400	1,200~1,700	"
			용지보상업무	1	1	"	1,100~1,400	1,200~1,700	"
			물리치료사	6	6	"	1,700~1,900	1,800~2,200	"
			매표원	3	2	"	1,100~1,400	1,200~1,700	"
			불법주정차단속	2	2	"	1,700~1,900	1,800~2,200	"
			문서전달수발	1	1	"	1,100~1,400	1,200~1,700	"
			민원인안내	1	1	"	1,100~1,400	1,200~1,700	"
			부속실기자실등	5	4	"	1,100~1,400	1,200~1,700	"
			의회단순업무	2	2	"	1,100~1,400	1,200~1,700	"
			공설시장관리	1	1	"	1,100~1,400	1,200~1,700	"
			관정양수장시설관리	1	1	"	1,100~1,400	1,200~1,700	"
			관광 안내	2	2	"	1,100~1,400	1,200~1,700	"
			소계	**43**	**41**				
121	전북	완주군	건강생활실천사업	1	1	07.09	1,166~1,250	1,216~1,350	57
			개별공시지가관리	1	1	"	1,166~1,250	1,216~1,350	"
			교통관리	2	2	"	1,166~1,250	1,216~1,350	"
			국공유재산관리	1	1	"	1,166~1,250	1,216~1,35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도서관관리	1	1	07.09	1,166~1,250	1,216~1,350	57
			세정관리	1	1	"	1,166~1,250	1,216~1,350	"
			의료급여관리	1	1	"	1,166~1,250	1,216~1,350	"
			지적관리	3	3	"	1,166~1,250	1,216~1,350	"
			개별공시지가조사	1	1	"	1,166~1,250	1,216~1,350	"
			통계조사	1	1	"	1,166~1,250	1,216~1,350	"
			의료급여관리	1	1	"	1,166~1,250	1,216~1,350	"
			한방보건	1	1	"	1,166~1,250	1,216~1,350	"
			민원제증명발급	1	1	"	1,166~1,250	1,216~1,350	"
			의회기록원	2	2	"	1,166~1,250	1,216~1,350	"
			사진비디오촬영기사등	2	2	"	1,166~1,250	1,216~1,350	"
			청사청소원	2	2	"	1,166~1,250	1,216~1,350	"
			시험묘포장사업인부	1	1	"	1,166~1,250	1,216~1,350	"
			실험보조	1	1	"	1,166~1,250	1,216~1,350	"
			지도단속원	1	1	"	1,166~1,250	1,216~1,350	"
			민원인안내	1	1	"	1,166~1,250	1,216~1,350	"
			부속실	4	4	"	1,166~1,250	1,216~1,350	"
			소계	30	30				
122	전북	진안군	산림병해충방제	1	1	07.09	1,040~1,500	1,220~1,680	57
			개별공시지가관리	2	2	"	1,040~1,500	1,220~1,680	"
			금연상담사	1	1	"	1,040~1,500	1,220~1,680	"
			한방보건	2	2	"	1,040~1,500	1,220~1,680	"
			토양검정	1	1	"	1,040~1,500	1,220~1,68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농업경영정보관리	1	1	07.09	1,040~1,500	1,220~1,680	57
			지적관리	1	1	"	1,040~1,500	1,220~1,680	"
			민원제증명발급	1	1	"	1,040~1,500	1,220~1,680	"
			농어촌소득지원기금관리	1	1	"	1,040~1,500	1,220~1,680	"
			가축방역	1	1	"	1,040~1,500	1,220~1,680	"
			수영장체육시설관리	1	1	"	1,040~1,500	1,220~1,680	"
			청사관리	1	1	"	1,040~1,500	1,220~1,680	"
			기동생활민원처리	1	1	"	1,040~1,500	1,220~1,680	"
			농기계수리	1	1	"	1,040~1,500	1,220~1,680	"
			부속실	1	1	"	1,040~1,500	1,220~1,680	"
			의회단순업무해당인력	2	2	"	1,040~1,500	1,220~1,680	"
			도로용지보상	1	1	"	1,040~1,500	1,220~1,680	"
			버섯재배사운영(일반)	1	1	"	1,040~1,500	1,220~1,680	"
			소계	21	21				
123	전북	무주군	전산보조 (계약및 조달업무보조)	1	1	07.09	850~880	1,500~1,560	57
			전산보조(지적관리)	2	0	-	-	-	-
			전산보조 (개별공시지가관리)	1	0	-	-	-	-
			시설관리(식당취사)	4	4	07.09	850~880	1,500~1,560	57
			시설관리 (주민자치센터관리)	2	1	"	850~880	1,500~1,560	"
			의료급여관리사	1	1	"	1,540	2,590	"
			현업종사(관광안내)	3	2	"	850~880	1,500~1,560	"
			현업종사 (폐기물처리장 재활용품선별)	1	1	"	850~880	1,500~1,560	"
			현업종사 (안전관리,수영강습)	2	2	"	1,515	2,315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현업종사(수영강습)	1	0	-	-	-	-
			현장지도(교통지도단속)	1	1	07.09	850~880	1,500~1,560	57
			현장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1	1	"	850~880	1,500~1,560	"
			소계	20	14				
124	전북	고창군	청소년상담지도	1	1	07.10	1,500	1,500	57
			농업경영정보관리	1	1	"	825	875~1,125	"
			개별공시지가조사	6	6	"	825	875~1,125	"
			개별주택가격조사	5	5	"	825	875~1,125	"
			건축물관리	2	2	"	825	875~1,125	"
			국공유재산관리	1	1	"	825	875~1,125	"
			기록물관리	3	3	"	825	875~1,125	"
			예산관리	1	1	"	825	875~1,125	"
			재무계약관리	1	1	"	825	875~1,125	"
			지적관리	1	1	"	825	875~1,125	"
			오수정화조실태조사	1	1	"	825	875~1,125	"
			통계조사	1	1	"	825	875~1,125	"
			상담보조	1	0	-	-	-	-
			자원봉사센터	1	1	07.10	825	875~1,125	57
			민원 제증명발급	1	1	"	825	875~1,125	"
			행정업무보조	8	8	"	825	875~1,125	"
			청사청소원	5	5	"	1,227	1,277~1,527	"
			실험보조	4	4	"	825	875~1,125	"
			산림병해충예찰	2	2	"	1,156	1,206~1,456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문화유적지관리	1	1	07.10	825	875~1,125	57
			수영장,체육시설관리	1	1	"	1,440	1,440	"
			식당(취사)관리	1	1	"	930~1,170	980~1,470	"
			입장객관리	1	1	"	825	875~1,125	"
			화단화분양묘조경	1	1	"	825	875~1,125	"
			시험 묘포장사업인부	1	1	"	825	875~1,125	"
			재활용선별	5	5	"	1,451	1,451	"
			의회단순업무	3	3	"	825	875~1,125	"
			환경미화원	4	4	"	1,451	1,451	"
			소계	64	63				
125	전북	임실군	의료급여관리사	2	2	07.11	1,100~1,420	1,100~1,420	57
			기록물관리	1	1	"	1,092	1,092	"
			예산관리	1	1	"	1,092	1,092	"
			재무,계약관리	1	1	"	1,092	1,092	"
			지적관리	2	2	"	1,092	1,092	"
			개별공시지가 조사	3	3	"	1,092	1,092	"
			국공유재산실태조사	1	1	"	1,092	1,092	"
			지적관리	2	1	"	1,092	1,092	"
			인사보조	1	1	"	1,092	1,092	"
			축산업무보조	1	1	"	1,092	1,092	"
			하천 및 소하천관리 보조	1	1	"	1,092	1,092	"
			토양검정 분석보조	1	1	"	1,092	1,092	"
			청사청소원	1	1	"	1,092	1,092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문서전달수발, 사환	1	1	07.11	1,092	1,092	57
			비서실, 실국장 부속실 내방민원인 안내, 접대 및 기자실운영	1	1	"	1,092	1,092	"
			가로등 보수	1	1	"	1,667	1,667	"
			소계	21	20				
126	전북	장수군	금연치료사업	1	0	-	-	-	-
			개별공시지가 관리	1	1	07.10	927	967	57
			세정관리	5	5	"	927	967	"
			예산관리	1	1	"	1,064	1,104	"
			재무,계약관리	1	1	"	927	967	"
			지적관리	1	1	"	927	967	"
			민원 제증명발급	3	3	"	927	967	"
			사무보조	4	4	"	927	967	"
			축산폐수처리 사업	1	1	"	1,064	1,104	"
			과학영농	1	1	"	927	967	"
			문화유적지 관리	1	1	"	927	967	"
			식당(취사) 관리	2	2	"	927	967	"
			청사청소원	4	3	"	927	967	"
			휴양림(수목원)시설관리	4	3	"	927	1,007	"
			상하수도검침	1	1	"	927	967	"
			시험 묘포장사업 인부	3	3	"	927	967	"
			재활용 선별	1	1	"	1,064	1,104	"
			문서전달수발, 사환	1	1	"	927	967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부속실 등	2	3	07.10	1,064	1,104	57
			소계	38	36				
127	전북	군산시	청소년상담사	1	0	-	-	-	-
			의료급여관리	1	1	07.11	1,745	1,745	57
			건강증진사업	2	0	-	-	-	-
			관광통역안내원	2	0	-	-	-	-
			소계	6	1				
128	전북	김제시	의료보호관리	1	1	07.10	1,400~1,500	1,500~1,700	57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3	0	-	-	-	-
			청소년 상담교육	1	0	-	-	-	-
			금연클리닉상담	1	0	-	-	-	-
			농업경영정보D/B화	1	0	-	-	-	-
			개별공시지가 관리	1	1	07.10	1,000~1,100	1,100~1,300	57
			도서관관리	2	2	"	1,000~1,100	1,100~1,300	"
			세정관리	1	1	"	1,000~1,100	1,100~1,300	"
			예산관리	1	1	"	1,000~1,100	1,100~1,300	"
			재무,계약관리	1	1	"	1,000~1,100	1,100~1,300	"
			정보화마을관리	3	1	"	1,000~1,100	1,100~1,300	"
			환경관리	3	3	"	1,000~1,100	1,100~1,300	"
			새주소도로명부여사업조사	1	1	"	1,000~1,100	1,100~1,300	"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1	1	"	1,000~1,100	1,100~1,300	"
			노인건강관리	2	2	"	1,000~1,100	1,100~1,300	"
			한방보건	1	1	"	1,000~1,100	1,100~1,3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청소년상담(지도)	1	1	07.10	1,000~1,100	1,100~1,300	57
			시정시책추진 지원	5	7	"	1,000~1,100	1,100~1,300	"
			과태료부과징수	1	1	"	1,000~1,100	1,100~1,300	"
			재해대책상황실	1	1	"	1,000~1,100	1,100~1,300	"
			공원녹지지원	1	1	"	1,000~1,100	1,100~1,300	"
			가축방역관리	2	2	"	1,000~1,100	1,100~1,300	"
			전문요양시설 입소자 간병	30	30	"	1,600~1,700	1,700~1,800	55
			노인복지타운 청소 및 관리	3	3	"	1,000~1,100	1,100~1,300	57
			민원제증명발급	3	3	"	1,000~1,100	1,100~1,300	"
			외국인 통역안내	4	2	"	1,000~1,100	1,100~1,300	"
			불법행위단속 및 보상	2	2	"	1,000~1,100	1,100~1,300	"
			상설시장 및 농공단지 관리	2	2	"	1,000~1,100	1,100~1,300	"
			조직배양작업	1	1	"	1,000~1,100	1,100~1,300	"
			토양점검 및 실증포장작업	1	1	"	1,000~1,100	1,100~1,300	"
			공원관리	2	2	"	1,000~1,100	1,100~1,300	"
			공중화장실 관리	2	0	-	-	-	-
			수영장, 체육시설 관리	2	0	-	-	-	-
			청사관리	1	1	07.10	1,000~1,100	1,100~1,300	57
			화단, 화분, 양묘, 조경	1	1	"	1,000~1,100	1,100~1,300	"
			농기계 수리	2	1	"	1,000~1,100	1,100~1,300	"
			병해충예찰	2	0	-	-	-	-
			불법광고물단속	1	1	07.10	1,000~1,100	1,100~1,300	57
			문서전달수발, 사환	2	2	"	1,000~1,100	1,100~1,3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민원인 안내	1	2	07.10	1,000~1,100	1,100~1,300	57
			비서실, 실국장 부속실 내방민원인 안내, 접대 및 기자실운영	3	3	"	1,000~1,100	1,100~1,300	"
			의회단순업무 해당인력	5	5	"	1,000~1,100	1,100~1,300	"
			소계	105	91				
129	전북	부안군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40	-				
130	전북	순창군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25	-				
131	전남	전라남도	여권보조	1	1	07.10	1,000~1,100	1,800~1,950	59
			도정소식지발간	2	2	"	1,000~1,100	1,800~1,950	"
			비서인력	3	1	"	1,000~1,100	1,800~1,950	"
			예산보조(기금)	1	1	"	1,100	1,100	"
			농업기술DB구축	2	2	"	800~900	950~1,100	"
			실험보조(농업)	24	13	"	800~900	950~1,100	"
			가축방역	3	1	"	800~900	950~1,100	"
			실험보조(수산)	1	1	"	800~900	950~1,100	"
			소계	37	22				
132	전남	목포시	의료급여 관리	1	1	07.09	1,074	1,174~1,474	57
			국공유재산관리	1	2	"	944	1,044~1,344	"
			기록물관리	1	1	"	944	1,044~1,344	"
			도서관관리	1	1	"	944	1,044~1,344	"
			세정관리	6	5	"	944	1,044~1,344	"
			예산관리	2	2	"	1,097	1,197~1,497	"
			의료급여관리	1	0	-	-	-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재무,계약관리	2	0	-	-	-	-
			개별공시지가 조사	3	3	07.09	944	1,044~1,344	57
			새주소도로명부여사업조사	1	1	"	944	1,044~1,344	"
			통계조사	1	0	-	-	-	-
			건강증진센터	2	3	07.09	1,074	1,174~1,474	57
			구강보건사업	1	1	"	1,074	1,174~1,474	"
			예방접종	2	3	"	1,074	1,174~1,474	"
			정신보건사업	3	3	"	1,074	1,174~1,474	"
			한방보건	1	1	"	1,074	1,174~1,474	"
			민원 제증명발급	4	5	"	944	1,044~1,344	"
			주민자치센터운영	1	1	"	944	1,044~1,344	"
			공원관리	3	3	"	944	1,044~1,344	"
			매표원	3	3	"	944	1,044~1,344	"
			문화유적지 관리	2	2	"	944	1,044~1,344	"
			상하수도검침	2	2	"	1,512	1,612~1,912	"
			지도단속원	1	1	"	944	1,044~1,344	"
			문서전달수발, 사환	3	3	"	944	1,044~1,344	"
			비서실, 실국장 부속실 내방민원인 안내, 접대 및 기자실운영	4	4	"	944	1,044~1,344	"
			의회단순업무 해당인력	6	6	"	944	1,044~1,344	"
			소계	58	57				
133	전남	여수시	관광안내원	2	2	07.10	1,610	1,731	57
			수산시설관리	2	1	"	928	1,428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예찰보조원	1	1	07.10	842	1,203	57
			실험보조원	1	1	"	662	1,024	"
			운동지도사	1	1	"	1,625	2,027	"
			영양상담사	1	1	"	1,625	2,027	"
			금연상담원	1	1	"	1,625	2,027	"
			한방보건	1	7	"	7,377	7,779	"
			예방접종전산등록	1	1	"	1,625	2,027	"
			홍보요원	1	1	"	1,042	1,757	"
			주차장주차관리	2	0	-	-	-	-
			기계기술공	1	1	07.10	801	1,932	57
			암검진사업	1	1	"	801	1,932	"
			소계	16	19				
134	전남	순천시	농업경영정보화사업	1	0	-	-	-	-
			토양검정실운영	1	1	07.10	1,400~1,500	1,500~1,900	57
			금연상담사	2	2	"	1,500~1,600	1,500~1,600	"
			예방접종	1	1	"	1,500~1,600	1,500~1,600	"
			개별공시지가관리	2	2	"	1,400~1,500	1,500~1,900	"
			기록물관리	4	4	"	1,400~1,500	1,500~1,900	"
			도서관관리	2	2	"	1,400~1,500	1,500~1,900	"
			세정관리	9	9	"	1,400~1,500	1,500~1,900	"
			지적관리	2	1	"	1,400~1,500	1,500~1,900	"
			호적관리	1	1	"	1,400~1,500	1,500~1,900	"
			새주소도로명부여사업조사	1	1	"	1,400~1,500	1,500~1,9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노인건강관리	5	5	07.10	1,500~1,600	1,500~1,600	57
			한방보건사업	3	3	"	1,500~1,600	1,500~1,600	"
			자원봉사센터	1	1	"	1,500~1,600	1,500~1,600	"
			청소년상담지도	2	2	"	1,500~1,600	1,500~1,600	"
			민원제증명발급	3	3	"	1,400~1,500	1,500~1,900	"
			실험보조	2	2	"	1,400~1,500	1,500~1,900	"
			문서전달수발사환	3	3	"	1,400~1,500	1,500~1,900	"
			영산강수변주민지원사업	4	3	"	1,400~1,500	1,500~1,900	"
			소계	49	46				
135	전남	광양시	건강증진센터	5	5	07.10	1,500	1,657	57
			금연상담사	2	2	"	1,500	1,657	"
			예방접종등록사업	1	1	"	1,500	1,657	"
			주민감시요원	2	0	-	-	-	-
			시장관리	2	1	07.10	1,118	1,334	57
			소계	12	9				
136	전남	나주시	의료급여	1	1	07.10	1,420	1,165	57
			국공유재산관리	1	1	"	743	1,041	"
			세정관리	2	2	"	756	1,056	"
			예산관리	1	1	"	1,173	1,164	"
			노인건강관리	1	0	-	-	-	-
			민원 제증명발급	2	2	07.10	743	1,041	57
			여권발급	1	1	"	743	1,041	"
			물리치료사	4	5	"	1,197	1,165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	1	1	07.10	715	1,038	57
			숲가꾸기	1	1	"	715	1,038	"
			가로수관리	1	1	"	743	1,041	"
			청사관리	1	0	-	-	-	-
			청사청소원	7	0	-	-	-	-
			문서전달수발, 사환	7	7	07.10	743	1,041	57
			비서실, 실국장 부속실 내방민원인 안내, 접대 및 기자실운영	1	1	"	743	1,041	"
			개별공시지가관리	0	2	"	743	1,041	"
			개별주택가격조사	0	4	"	743	1,041	"
			금연사업	0	2	"	1,300	1,162	"
			소계	32	32				
137	전남	담양군	전산보조	3	3	07.10	700~800	900~1,100	57
			현장조사	2	0	-	-	-	-
			현업종사	4	3	07.10	650~800	850~1,150	57
			소계	9	6				
138	전남	곡성군	농업기술보급정보화	1	1	07.09	700	700	57
			개별공시지가 관리	3	3	"	740	1,100	"
			개별주택가격 관리	3	3	"	740	1,100	"
			건축물관리	1	1	"	740	1,100	"
			농업경영정보관리	1	0	-	-	-	-
			도서관관리	1	0	-	-	-	-
			복식부기관리	1	1	07.09	740	1,100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세정관리	1	1	07.09	740	1,100	57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1	1	"	740	1,100	"
			자원봉사센터	0	1	"	740	1,100	"
			민원 제증명발급	3	3	"	740	1,100	"
			주민자치센터운영	1	1	"	740	1,100	"
			군정소식지 제작	2	2	"	740~866	1,100~1,283	"
			접수창구및수납전산보조	1	1	"	740	1,100	"
			첨단영농실운영	1	1	"	740	1,100	"
			산림병해충방제	3	3	"	880	880	"
			문화유적지 관리	2	1	"	740	1,100	"
			청사관리	1	1	"	740	1,100	"
			방역소독	1	1	"	905	1,341	"
			재활용 선별	4	1	"	815	1,274	"
			문서전달수발, 사환	1	1	"	740	1,101	"
			의회단순업무 해당인력	1	1	"	740	1,101	"
			소계	34	29				
139	전남	구례군	건축물관리	3	3	07.10	750~800	850~950	57
			교통관리	1	1	"	750~800	850~950	"
			국공유지재산관리	1	1	"	750~800	850~950	"
			기록물관리	2	2	"	750~800	850~950	"
			세정관리	3	3	"	750~800	850~950	"
			지적관리	3	3	"	750~800	850~950	"
			호적관리	6	6	"	750~800	850~95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환경관리	3	3	07.10	750~800	850~950	57
			노인일자리지원	1	1	"	750~800	850~950	"
			민원제증명 발급	1	1	"	750~800	850~950	"
			기초수급자관리	1	1	"	750~800	850~950	"
			과학영농시설관리	3	3	"	750~800	850~950	"
			비디오촬영기사	1	1	"	750~800	850~950	"
			청사관리	3	3	"	750~800	850~950	"
			농기계수리	2	2	"	750~800	850~950	"
			상수도 약품처리	1	1	"	750~800	850~950	"
			지도단속원	2	2	"	750~800	850~950	"
			야생화상품개발	1	1	"	750~800	850~950	"
			소계	38	38				
140	전남	보성군	단순업무보조	23	21	07.10	840~1,000	909~1,229	57
			상수도검침	8	8	"	920	1,069	"
			시설물관리	6	3	"	834~1,305	834~1,539	"
			청소원	3	1	"	857	1,068	"
			건강증진	2	2	"	1,500	1,500	"
			소계	42	35				
141	전남	장흥군	의료급여	1	1	07.09	1,430	1,430	57
			개별주택관리	2	6	"	1,200~1,320	1,300~1,700	"
			복식부기	1	1	"	1,200~1,320	1,300~1,700	"
			재무계약관리	0	1	"	1,200~1,320	1,300~1,700	"
			환경관리	1	1	"	1,200~1,320	1,300~1,7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민원제증명	0	2	07.09	1,200~1,320	1,300~1,700	57
			군민외국어능력향상	1	1	"	1,200~1,321	1,300~1,700	"
			기획전산	1	1	"	1,200~1,320	1,300~1,700	"
			묘지관리	1	0	-	-	-	-
			체육시설	1	0	-	-	-	-
			청사관리	6	1	07.09	1,200~1,320	1,300~1,700	57
			청사청소원	2	3	"	1,200~1,320	1,300~1,700	"
			상수도검침	6	5	"	1,200~1,320	1,300~1,700	"
			실험보조	3	3	"	1,200~1,320	1,300~1,700	"
			시장관리	1	0	-	-	-	-
			농특산물홍보	2	1	07.09	1,200~1,320	1,300~1,700	57
			소계	29	27				
142	전남	고흥군	건축물관리	1	1	07.10	844	1,399	57
			기록물관리	1	1	"	918	1,399	"
			세정관리	1	1	"	844	1,399	"
			예산관리	1	1	"	918	1,399	"
			재무,계약관리	2	2	"	918	1,399	"
			환경관리	1	1	"	844	1,399	"
			개별공시지가 조사	4	0	-	-	-	-
			통계조사	1	0	-	-	-	-
			민원 재증명발급	14	13	07.10	844	1,399	57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보조	1	1	"	844	1,399	57
			농지도면전산입력 보조	1	1	"	844	1,399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직속기관 문서채송	2	1	07.10	869	1,400	57
			상조회 관리 보조	1	1	"	844	1,399	"
			읍면사무소 업무보조 도양읍 소록, 시산도 출장소 업무보조, 투자유치 업무보조	8	8	"	844	1,399	"
			매표원	1	1	"	844	1,399	"
			배수장, 취정수장 시설관리	6	5	"	856~1,386	1,128~2,187	"
			수영장, 체육시설 관리	1	0	-	-	-	-
			청사관리	1	1	07.10	869	1,400	57
			휴양림(수목원)시설관리	2	2	"	869	1,400	"
			상수도 약품처리, 화공약품 투입	2	2	"	1,067	1,591	"
			상하수도검침	11	6	"	938	1,784	"
			비서실, 실국장 부속실 내방민원인 안내, 접대 및 기자실운영	1	1	"	918	1,399	"
			의회단순업무 해당인력	2	2	"	844	1,399	"
			팔영산 도립공원 관리원	2	2	"	1,144	1,592	"
			도유림 순산원	1	0	-	-	-	-
			시장사용료 징수원	2	2	07.10	869	1,592	57
			유자판매장 판매원	1	1	"	869	1,400	"
			한방보건진료 보조원	3	2	"	869	1,400	"
			자료정리	5	6	"	844	1,399	"
			자활복지도우미	1	0	-	-	-	-
			의료급여관리	0	1	07.10	1,668	1,668	57
			간척지매각대징수	0	2	"	856~1,386	856~1,386	"
			소계	81	68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143	전남	강진군	의료급여관리	1	0	-	-	-	-
			도서관관리	3	2	07.11	800	1,081	57
			지적관리	2	2	"	800	1,081	"
			민원제증명발급	9	9	"	800	1,081	"
			여권발급	1	1	"	800	1,081	"
			산림병충해방제	2	0	-	-	-	-
			문화유적지관리	1	1	07.11	800	1,081	57
			청사관리	1	1	"	800	1,081	"
			상하수도검침	3	4	"	800	1,081	"
			실험보조	2	2	"	800	1,081	"
			재활용선별	3	3	"	800	1,081	"
			지도단속원	2	2	"	800	1,081	"
			교환원	0	1	"	800	1,081	"
			청소원	4	2	"	800	1,081	"
			상수원보호감시	2	2	"	800	1,081	"
			관광안내원	3	3	"	800	1,081	"
			소계	39	35				
144	전남	해남군	건축물관리	1	1	07.10	1,000	1,109	57
			국공유재산관리	1	1	"	1,000	1,109	"
			농업경영정보관리	4	4	"	1,000	1,109	57
			도서관관리	2	2	"	1,000	1,109	"
			세정관리	2	2	07.10	1,000	1,109	57
			예산관리	1	1	"	1,000	1,109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의료급여관리	2	2	07.10	1,000	1,109	57
			호적관리	5	7	"	917	1,026	"
			환경관리	1	1	"	1,000	1,109	"
			개별공시지가 조사	3	3	"	1,000	1,109	"
			건강증진센터	1	1	"	1,000	1,109	"
			구강보건사업	1	1	"	1,000	1,109	"
			한방보건	1	1	"	1,000	1,109	"
			정보화육성사업보조	2	2	"	1,000	1,109	"
			군소식지 발간	1	1	"	1,000	1,109	"
			수산(어선등록등)전산관리	1	1	"	1,000	1,109	"
			재난상황관리	1	1	"	917	1,026	"
			가로수관리	2	2	"	1,083	1,200	"
			매표원	1	1	"	917	1,026	"
			문화유적지 관리	3	3	"	917	1,026	"
			사진, 비디오 촬영기사, 음향기기 유지관리 보조, 보일러(배관), 전기, 통신공	3	3	"	1,000	1,109	"
			수영장, 체육시설 관리	1	1	"	1,000	1,109	"
			청사관리	4	2	"	1,000	1,109	"
			청사청소원	3	3	"	1,166	1,292	"
			휴양림(수목원)시설관리	1	1	"	916	1,017	"
			기동생활민원처리	1	1	"	1,000	1,108	"
			상하수도검침	1	1	"	1,000	1,108	"
			실험보조	2	2	"	1,000	1,108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인쇄, 제본, 발간	2	2	07.10	1,166	1,292	57
			불법광고물단속	1	1	"	916	1,016	"
			주차장 주차관리	2	2	"	1,000	1,108	"
			민원인 안내	1	1	"	916	1,016	"
			부속실등	3	3	"	1,000	1,108	"
			소계	61	61				
145	전남	영암군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000~1,500	1,000~1,500	57
			건강생활실천사업	2	2	"	1,000~1,500	1,000~1,500	"
			금연상담사	1	1	"	1,000~1,500	1,000~1,500	"
			지적관리	1	1	"	1,000~1,500	1,100~1,800	"
			외국인관광객통역안내	1	1	"	1,000~1,500	1,100~1,800	"
			행정보조원	5	4	"	1,000~1,500	1,100~1,800	"
			산림병해충방제	1	1	"	1,000~1,500	1,100~1,800	"
			문화유적지관리	1	1	"	1,000~1,500	1,100~1,800	"
			식당관리	1	0	-	-	-	-
			청사관리	1	0	-	-	-	-
			가축질병진단실	1	1	07.10	1,000~1,500	1,100~1,800	57
			상하수도검침	1	1	"	1,000~1,500	1,100~1,800	"
			실험보조	2	2	"	1,000~1,500	1,100~1,800	57
			재활용선별	3	3	"	1,000~1,500	1,100~1,800	"
			청소인부	2	0	-	-	-	-
			소계	24	19				
146	전남	함평군	민원 제증명발급	10	10	07.10	1,000~1,200	1,310~1,510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과학영농시설관리	3	3	07.10	1,000~1,200	1,310~1,510	57
			청사관리	2	2	"	1,000~1,200	1,310~1,510	"
			문서전달수발, 사환	13	13	"	1,000~1,200	1,000~1,200	"
			소계	28	28				
147	전남	진도군	국공유재산관리	1	1	07.10	800~900	900~1,100	57
			한방보건	4	3	"	800~900	900~1,100	57
			민원 제증명발급	6	7	"	800~900	900~1,100	"
			공익사업용지보상	1	0	-	-	-	-
			상하수도요금정산	1	1	07.10	800~900	900~1,100	57
			통역안내원	1	1	"	800~900	900~1,100	"
			산림병해충방제	1	1	"	1,200~1,400	1,200~1,400	"
			상하수도검침	1	2	"	800~900	900~1,100	"
			의회단순업무 해당인력	1	1	"	800~900	900~1,100	"
			관광안내원	1	2	"	800~900	900~1,100	"
			기록물관리	0	1	"	800~900	900~1,100	"
			사회단체지원	0	2	"	800~900	900~1,100	"
			소계	18	22				
148	전남	완도군	한방보건	0	7	07.10	800~900	1,300~1,400	57
			매표원	0	2	"	800~900	1,300~1,400	"
			문화유적지 관리	2	2	"	800~900	1,300~1,400	"
			사진등	0	1	"	800~900	1,300~1,400	"
			입장객 관리	0	6	"	800~900	1,300~1,400	"
			청사관리	52	58	"	800~900	1,300~1,4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청사청소원	1	0	-	-	-	-
			민원인 안내	2	2	07.10	800~900	1,300~1,400	57
			부속실등	1	2	"	800~900	1,300~1,400	"
			소계	58	80				
149	전남	무안군	의료급여	1	1	07.11	1,430	1,431	57
			개별공시지가조사	2	2	"	742	1,076	"
			개별공시지가 관리	1	1	"	742	1,076	"
			건축물관리	1	1	"	742	1,076	"
			기록물관리	1	1	"	742	1,076	"
			도서관관리	1	1	"	742	1,076	"
			세정관리	1	1	"	742	1,076	"
			지적관리	4	4	"	742	1,076	"
			호적관리	3	3	"	742	1,076	"
			민원 제증명발급	8	9	"	742	1,076	"
			주민전산보조	2	2	"	742	1,076	"
			노인복지업무보조	1	1	"	742	1,076	"
			배수장, 취정수장 시설관리	3	3	"	742	1,076	"
			방역소독	2	2	"	742	1,076	"
			문서전달수발, 사환	6	6	"	742	1,076	"
			교환원	1	1	"	742	1,076	"
			소계	38	39				
150	전남	신안군	세정관리	14	14	07.12	805	1,216	57
			예산관리	1	1	"	805	1,216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지적관리	4	4	07.12	805	1,216	57
			민원 제증명발급	23	23	"	805	1,216	"
			소계	42	42				
151	전남	화순군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67	-				
152	전남	영광군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12	-				
153	전남	장성군	건강증진운동사업	2	0	-	-	-	-
			금연상담사	1	0	-	-	-	-
			개별공시지가 관리	3	1	07.09	750	830	57
			개별주택가격 관리	1	0	-	-	-	-
			건축물관리	1	0	-	-	-	-
			교통관리	1	0	-	-	-	-
			기록물관리	3	2	07.09	750	830	57
			복식부기관리	1	0	-	-	-	-
			세정관리	11	0	-	-	-	-
			재무,계약관리	1	0	-	-	-	-
			지적관리	4	1	07.09	750	830	57
			새주소도로명부여사업 조사	1	0	-	-	-	-
			민원 제증명발급	1	1	07.09	750	830	57
			양정업무전산관리	1	1	"	750	830	"
			산림병해충방제	1	0	-	-	-	-
			실험보조	2	0	-	-	-	-
			소계	35	6				
154	경북	경상북도	여권발급보조	2	2	07.10	800~1,000	1,000~1,300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국공유재산관리	1	1	07.10	800~1,000	1,000~1,300	57
			세정관리	1	1	"	800~1,000	1,000~1,300	"
			예방접종관리	1	1	"	800~1,000	1,000~1,300	"
			예산관리	2	2	"	800~1,000	1,000~1,300	"
			공직자재산등록	1	1	"	800~1,000	1,000~1,300	"
			통계DB자료입력	1	1	"	800~1,000	1,000~1,300	"
			산림병해충방제	2	2	"	800~1,000	1,000~1,300	"
			부속실등	1	1	"	800~1,000	1,000~1,300	50
			입장객관리	1	1	"	800~1,000	1,000~1,300	"
			농업연구보조	26	26	"	800~1,000	1,000~1,300	"
			농기계수리	1	1	"	800~1,000	1,000~1,300	"
			사육관리보조	1	1	"	800~1,000	1,000~1,300	"
			사양관리	3	3	"	800~1,000	1,000~1,300	"
			산림작물연구보조	1	1	"	800~1,000	1,000~1,300	"
			매표원	1	1	"	800~1,000	1,000~1,300	"
			소계	**46**	**46**				
155	경북	경주시	공원관리(소각장관리)	1	1	07.10	959~1,410	1,707~2,158	57
			의료급여관리사	1	1	"	1,430	1,430	"
			여권발급보조	1	1	"	544~704	1,059~1,219	"
			묘지관리(화장장관리)	1	1	"	1,148~1,318	1,798~1,968	"
			소계	**4**	**4**				
156	경북	경산시	지도단속원	1	1	07.10	875~1,660	875~1,660	57
			소계	**1**	**1**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157	경북	청송군	자원봉사센터	1	1	07.10	850~1,000	1,150~1,400	57
			민원 제증명발급	2	2	"	850~1,000	1,150~1,400	"
			여권발급	1	1	"	850~1,000	1,150~1,400	"
			의회단순업무 해당인력	1	1	"	850~1,000	1,150~1,400	"
			문화시설관리원	1	1	"	850~1,000	1,150~1,400	"
			지적측량보조	1	1	"	850~1,000	1,150~1,400	"
			소계	7	7				
158	경북	영덕군	예산관리	1	1	07.10	905~1,470	1,055~1,790	57
			민원 제증명발급	1	1	"	905~1,470	1,055~1,790	"
			운동처방사	0	1	"	905~1,470	1,055~1,790	"
			의료급여관리사	0	1	"	905~1,470	1,055~1,790	"
			기록물관리	1	1	"	905~1,470	1,055~1,790	"
			복식부기관리	1	1	"	905~1,470	1,055~1,790	"
			세정관리	1	1	"	905~1,470	1,055~1,790	"
			문화유적지 관리	1	1	"	700~1,200	1,000~1,900	"
			병해충예찰	1	1	"	700~1,200	1,000~1,900	"
			실험보조	1	1	"	700~1,200	1,000~1,900	"
			소계	8	10				
159	경북	포항시	공원관리	1	1	07.10	700~800	1,100~1,300	57
			소계	1	1				
160	경북	안동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1	0	-	-	-	-
			소계	1	0				
161	경북	영천시	청소년시설지원 (청소년지도사)	2	2	07.10	1,400	1,570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2	2				
162	경북	상주시	지적관리	1	1	07.10	800~1,000	1,070~1,270	57
			민원제증명	2	4	"	800~1,000	1,070~1,270	"
			세정관리	2	2	"	800~1,000	1,070~1,270	"
			청소년상담(지도)	2	2	"	800~1,000	1,070~1,270	"
			수영장, 체육시설 관리	1	1	"	800~1,000	1,070~1,270	"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1	0	-	-	-	-
			금연클리닉운영	1	0	-	-	-	-
			소계	10	10				
163	경북	영양군	청소년상담(지도)	1	0	-	-	-	-
			청사관리	2	1	07.11	1,088	1,193	57
			청사청소원	1	1	"	1,088	1,193	"
			관광안내원	1	0	-	-	-	-
			부속실 안내	0	1	08.01	1,088	1,193	57
			소계	5	3				
164	경북	예천군	신활력지역지원	2	3	07.10	825	954	57
			토양검정실운영	1	1	"	660	782	"
			생균제생산보조	1	1	"	660	782	"
			소계	4	5				
165	경북	봉화군	운동처방사	1	0	-	-	-	-
			의료급여관리사	1	1	07.09	2,000	2,000	57
			개별공시지가관리	1	0	-	-	-	-
			한방보건	2	2	07.09	1,000	1,300~1,500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5	3				
166	경북	울진군	청소년상담(지도)	1	1	07.10	1,500~2,000	1,500~2,000	57
			소계	1	1				
167	경북	울릉군	사무보조	5	6	07.10	1,075	1,175~1,475	57
			매표원(관광지관리원)	2	2	"	1,075	1,175~1,475	"
			관광안내요원	2	3	"	1,075	1,175~1,475	"
			청사청소원	5	4	"	1,075	1,175~1,475	"
			상수도검침원	1	1	"	1,075	1,175~1,475	"
			영안실관리원	1	1	"	1,390	1,175~1,475	"
			자원봉사센터	1	0	-	-	-	-
			소계	17	17				
168	경북	구미시	청소년상담(지도)	1	1	07.11	1,083~1,250	1,283~1,650	57
			소계	1	1				
169	경북	김천시	미전환 (단계적 전환)	33	-				
170	경남	경상남도	식당급식보조	2	0	-	-	-	-
			건강증진사업	1	1	08.01	1,500	1,500	57
			포장관리원	14	14	07.09	721~920	871~1,120	"
			시험보조원	12	12	"	700~1,013	805~1,213	"
			시설관리원	1	1	"	798	858~998	"
			전산보조원	2	2	"	853	868~1,053	"
			기성회직	10	10	07.08, '07.11	2,516~2,907	2,516~2,907	"
			기숙사직	3	3	"	1,005~2,866	1,005~2,866	"
			후생복지직	6	6	07.11	1,033~1,583	1,033~1,583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청소원	1	1	07.11	1,005	1,005	57
			소계	52	50				
171	경남	창원시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400~1,600	1,500~1,900	57
			토양검정요원	1	1	"	700~800	1,000~1,300	"
			벼병해충예찰보조원	1	1	"	700~800	1,000~1,300	"
			소계	3	3				
172	경남	마산시	단순잡역	0	1	07.09	1,300~1,500	1,900~2,300	57
			의료급여관리사	1	1	"	1,828	1,828	"
			청소년상담원	2	1	"	2,214~2,300	2,214~2,300	"
			소계	3	3				
173	경남	진주시	재가복지센터	2	2	07.10	1,200	1,200	57
			청소년상담원	1	1	"	1,250~2,317	1,250~2,317	58
			중장비기사	1	0	-	-	-	-
			소계	4	3				
174	경남	진해시	예산작업보조원	1	1	07.10	1,000~1,300	1,000~1,300	57
			구내식당 영양사	1	1	"	720~996	820~1,196	"
			재정통합시스템운영원	1	1	"	660~824	760~1,024	"
			청소년문화의집관리원	2	2	"	1,650	1,650	"
			소계	5	5				
175	경남	사천시	주요전염병관리	1	0	-	-	-	-
			배수.취수장관리	3	3	07.10	1,400~1,500	1,550~1,750	57
			수영장.체육시설관리	1	0	-	-	-	-
			입장객관리	1	1	07.10	750~800	1,000~1,070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청사관리	3	4	07.10	950~1,000	1,250~1,330	57
			시험묘포정사업인부	4	3	"	950~1,000	1,250~1,330	"
			실험보조	2	2	"	1,400~1,500	1,500~1,700	"
			불법주정차단속	3	3	"	1,300~1,400	1,700~1,860	"
			부속실관리	4	4	"	950~1,000	1,250~1,330	"
			매점관리	1	1	"	950~1,000	1,250~1,330	"
			소계	23	21				
176	경남	거제시	식당(취사)관리	3	3	07.10	1,000~1,500	1,100~1,800	57
			과학영농시설관리	2	4	"	700～800	700～800	"
			의료급여관리	0	1	"	1,657	1,657	"
			소계	5	8				
177	경남	양산시	의료급여관리	1	1	07.09	1,400~1,450	1,500~1,750	57
			건축물관리	3	2	"	900~950	1,000~1,250	"
			교통관리	1	1	"	900~950	1,000~1,250	"
			세정관리	4	4	"	900~950	1,000~1,250	"
			재무계약관리	1	1	"	900~950	1,000~1,250	"
			지적관리	1	1	"	900~950	1,000~1,250	"
			상담보조	1	1	"	900~950	1,000~1,250	"
			자원봉사센터	2	1	"	900~950	1,000~1,250	"
			민원제증명발급	10	10	"	900~950	1,000~1,250	"
			여권발급	1	1	"	900~950	1,000~1,250	"
			시보편집	2	0	-	-	-	-
			행정자료실운영	1	1	07.09	900~950	1,000~1,250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전화교환원	1	1	07.09	900~950	1,000~1,250	57
			하수도관리	0	1	"	900~950	1,000~1,250	"
			가로수관리	4	3	"	1,000~1,100	1,100~1,400	"
			식당(취사)관리	4	4	"	900~950	1,000~1,250	"
			청사청소원	7	8	"	900~950	1,000~1,250	"
			양묘	4	2	"	1,000~1,100	1,100~1,400	"
			조직배양원	1	1	"	1,000~1,100	1,100~1,400	"
			시범온실관리	1	0	-	-	-	-
			토양분석	1	1	07.09	1,000~1,100	1,100~1,400	57
			소계	51	45				
178	경남	함안군	개별공시지가	3	2	07.10	598~756	724~1,586	57
			쌀소득직불제	1	1	"	598~756	724~1,586	"
			토양검정사업	1	1	"	598~756	724~1,586	"
			의료급여관리사	0	1	07.11	1,400	1,400	"
			소계	5	5				
179	경남	남해군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1	1	07.10	800	1,300~1,400	57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1	1	"	800	1,300~1,400	"
			개별공시지가 조사	2	2	"	800	1,300~1,400	"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민원발급업무보조	1	1	"	800	1,300~1,400	"
			민주평통사무보조	1	0	-	-	-	-
			본청 구내식당조리원 (취사관리)	1	1	07.10	800	1,300~1,400	57
			쓰레기매립장	1	1	"	1,095	1,595~1,695	"
			전통문화(원예)예술촌관리	1	1	"	800	1,300~1,4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문화의집 관리	1	1	07.10	800	1,300~1,400	57
			향토역사관 관리	1	1	"	800	1,300~1,400	"
			종합사회복지관청소 및 환경정비	1	1	"	800	1,300~1,400	"
			충혼탑 위패관리 및 환경정비	1	1	"	800	1,300~1,400	"
			청소년상담원	2	2	"	1,458	1,458	"
			자원봉사센터 운영	1	1	"	800	1,300~1,400	"
			진료접수실 보조	1	1	"	800	1,300~1,400	"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1	1	"	1,033	1,300~1,400	"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조리원(취사)	1	1	"	800	1,300~1,400	"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1	1	"	800	1,300~1,400	"
			실증시험포장 관리	1	1	"	800	1,300~1,400	"
			농업정보화교육 및 교육시설 관리	1	1	"	800	1,300~1,400	"
			종합검정실운영 (토양검정보조)	1	1	"	800	1,300~1,400	"
			청소년수련원관리	1	1	"	800	1,300~1,400	"
			청소년수련원 영양사 (취사관리)	1	1	"	800	1,300~1,400	"
			청소년수련원 조리원 (취사관리)	2	2	"	800	1,300~1,400	"
			잔디운동장관리	2	2	"	1,100~1,200	1,500~1,700	"
			스포츠파크 공원관리	2	2	"	900~1,000	1,300~1,500	"
			수영장 안내소 근무	1	1	"	1,300	1,400~1,500	"
			의료급여관리사	0	1	08.01	1,778	1,778	"
			소계	32	32				
180	경남	하동군	체육청소년	1	1	07.10	800~1,300	1,150~1,800	57
			지적분야사무보조	2	2	"	800~1,300	1,150~1,8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공시지가업무보조원	3	1	07.10	800~1,300	1,150~1,800	57
			평통사무보조원	1	1	"	800~1,300	1,150~1,800	"
			교환원	1	1	"	800~1,300	1,150~1,800	"
			의료급여관리사	1	1	"	800~1,300	1,150~1,800	"
			자원봉사센터봉사원	1	1	"	800~1,300	1,150~1,800	"
			공성납골당관리원	1	1	"	800~1,300	1,250~1,900	"
			공원관리	1	1	"	800~1,300	1,250~1,900	"
			보상업무보조원	1	1	"	800~1,300	1,150~1,800	"
			폐기물반입계량및감시	2	1	"	800~1,300	1,250~1,900	"
			농기계수리보조원	1	1	"	800~1,300	1,250~1,900	"
			하수도관리원	3	1	"	800~1,300	1,250~1,900	"
			종말처리장보조원	1	1	"	900~1,400	1,350~2,000	"
			조리보조원	1	0	-	-	-	-
			청사관리원	1	0	-	-	-	-
			소계	22	15				
181	경남	산청군	청사관리(농업기술센터)	1	1	07.10	790~800	790~800	57
			의료급여관리사	1	0	-	-	-	-
			문화예술회관청소원	1	0	-	-	-	-
			한의학박물관청소원	2	0	-	-	-	-
			소계	5	1				
182	경남	함양군	청소원	3	3	07.09	750~800	950~1,050	57
			소계	3	3				
183	경남	합천군	사무보조원	3	3	07.10	700~800	1,100~1,300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자원봉사책임봉사원	1	1	07.10	700~800	1,100~1,300	"
			청소년상담요원	2	2	"	1,400~1,500	1,400~1,500	"
			청소년지도사	1	1	"	1,300	1,300	"
			공공시설관리원	6	6	"	700~800	1,100~1,300	"
			소계	13	13				
184	경남	거창군	부속실등	1	2	07.09	795	1,060	58
			전염병관리	1	0	-	-	-	-
			청사관리	9	3	07.10	795~910	1,060~1,213	58
			청사청소원	2	2	"	795~910	1,060~1,213	"
			인쇄제본발간	1	1	"	795~910	1,060~1,213	"
			불법주정차단속	1	1	07.09	877	1,170	"
			의료급여관리사	1	1	07.10	1,420	1,420	"
			청소년상담	2	2	"	1,228~1,500	1,228~1,500	"
			금연상담	1	1	"	1,500	1,500	"
			소계	19	13				
185	경남	김해시	방역소독	1	0	-	-	-	-
`			보일러관리	1	0	-	-	-	-
			양묘,조경	5	4	07.11	1,300~1,400	1,450~1,600	57
			상수도누수	1	1	"	1,300~1,400	1,450~1,600	"
			상수도 약품처리	1	1	"	1,300~1,400	1,450~1,600	"
			시험 묘포장	1	1	"	1,300~1,400	1,450~1,600	"
			불법주정차 단속	10	10	"	1,500~1,700	1,500~1,700	"
			노점상 지도단속	4	7	"	1,400~1,600	1,480~1,7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영농기술 지도	2	0	-	-	-	-
			시보편집 기자	2	0	-	-	-	-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3	3	07.11	1,500~1,700	1,500~1,700	57
			도로보수	5	2	"	1,400~1,600	1,480~1,700	"
			소계	36	29				
186	경남	창녕군	사무보조	8	7	07.11	800~1,500	900~1,700	57
			식당관리	1	1	"	800	900	"
			수도점검	1	1	"	860	900	"
			노인전문요양원	8	0	-	-	-	-
			의료급여관리사	0	1	"	1,500	1,500	"
			소계	18	10				
18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여권발급	1	1	07.10	1,000	1,000	58
			의료급여관리사	5	5	"	1,650	1,650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요원	2	0	-	-	-	-
			치아홈메우기요원	0	1	07.10	1,500	1,500	58
			개별공시지가관리	5	5	"	1,300~1,500	1,450~1,800	"
			건축물관리	4	4	"	1,300~1,500	1,450~1,800	"
			교통관리	11	11	"	1,300~1,500	1,450~1,800	"
			국공유재산관리	3	3	"	1,300~1,500	1,450~1,800	"
			기록물관리	5	5	"	1,300~1,500	1,450~1,800	"
			농업경영정보관리	2	2	"	1,300~1,500	1,450~1,800	"
			도서관관리	11	11	"	1,300~1,500	1,450~1,800	"
			복식부기관리	4	4	"	1,300~1,500	1,450~1,8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세정관리	23	23	07.10	1,300~1,500	1,450~1,800	58
			예산관리	6	6	"	1,600~2,000	1,700~2,250	"
			재무,계약관리	14	14	"	1,300~1,500	1,450~1,800	"
			지적관리	7	7	"	1,300~1,500	1,450~1,800	"
			호적관리	16	16	"	1,300~1,500	1,450~1,800	"
			환경관리	10	10	"	1,300~1,500	1,450~1,800	"
			개별주택가격 조사	1	1	"	1,350	1,450	"
			건축물조사	1	1	"	1,350	1,450	"
			건강증진센터	9	9	"	1,500	1,650~1,800	"
			구강보건사업	8	8	"	1,500	1,650~1,800	"
			노인건강관리	2	4	"	1,500	1,650~1,800	"
			방문보건사업	5	5	"	1,500	1,650~1,800	"
			영양상담사	2	2	"	1,500	1,650~1,800	"
			예방접종	2	2	"	1,500	1,650~1,800	"
			운동처방사	1	1	"	1,500	1,650~1,800	"
			정신보건사업	1	1	"	1,500	1,650~1,800	"
			한방보건	3	3	"	1,500	1,650~1,800	"
			보육교사	5	5	"	1,300~1,500	1,450~1,800	"
			상담보조	8	8	"	1,400	1,550	"
			청소년상담(지도)	6	6	"	1,300~1,500	1,450~1,800	"
			민원 제증명발급	72	72	"	1,300~1,500	1,450~1,800	"
			여권발급	1	1	"	1,400	1,550	"
			주민자치센터운영	21	21	"	1,300~1,500	1,450~1,8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인사프로그램관리	1	1	07.10	1,450	1,600	58
			방사선실 운영	1	1	"	1,500	1,600	"
			보건행정업무지원	2	2	"	1,300~1,500	1,450~1,800	"
			소방행정지원	3	3	"	1,300~1,500	1,450~1,800	"
			직원외국어 교육	1	1	07.10	1,300	1,400	58
			단체지원	1	1	"	1,300	1,400	"
			조사연구보조	1	1	"	1,300	1,400	"
			건축위원회운영지원	1	1	"	1,300	1,400	"
			축산업등록	1	1	"	1,300	1,400	"
			수목원업무보조	1	1	"	1,300	1,400	"
			감사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	1	1	"	1,300	1,400	"
			산림병해충방제	0	8	"	1,200~1,400	1,200~1,400	"
			소상공센터지원	6	0	-	-	-	-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요원	1	1	07.10	1,300	1,300	58
			가로수관리	14	14	"	1,500~1,800	1,650~2,050	"
			공원관리	7	7	"	1,300~1,500	1,750~1,800	"
			공중화장실 관리	4	4	"	1,300~1,500	1,750~1,800	"
			과학영농시설관리	12	12	"	1,300~1,500	1,750~1,800	"
			매표원	16	15	"	1,500~1,800	1,650~2,200	"
			묘지관리	4	4	"	1,500~1,800	1,700~2,300	"
			문화유적지 관리	1	1	"	1,400	1,550	"
			배수장, 취정수장 시설관리	6	6	"	1,500~1,800	1,650~2,05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사진, 비디오 촬영기사, 음향기기 유지관리 보조, 보일러(배관), 전기, 통신공	3	3	07.10	1,300~1,500	1,450~1,750	58
			수영장, 체육시설 관리	27	27	"	1,500~1,800	1,600~2,100	"
			식당(취사) 관리	5	5	"	1,300~1,500	1,400~1,800	"
			입장객 관리	8	8	"	1,500~1,800	1,650~2,100	"
			청사청소원	64	64	"	1,300~1,500	1,400~1,800	"
			휴양림(수목원)시설관리	10	9	"	1,300~1,500	1,400~1,800	"
			가축질병진단실	1	1	"	1,300	1,450	"
			기동생활민원처리	2	2	"	1,300~1,500	1,400~1,800	"
			농기계 수리	1	1	"	1,400	1,650	"
			농작업 현업보조	6	6	"	1,300~1,500	1,400~1,700	"
			동물사육 등 사육관리보조	18	18	"	1,300~1,500	1,400~1,800	"
			방역소독	5	5	"	1,300~1,500	1,400~1,800	"
			병리검사	1	1	"	1,400	1,500	"
			병해충예찰	2	2	"	1,300~1,500	1,450~1,650	"
			상하수도검침	23	23	"	1,300~1,500	1,400~1,800	"
			시험 묘포장사업 인부	26	26	"	1,300~1,500	1,400~1,800	"
			실험보조	55	53	"	1,300~1,500	1,400~1,800	"
			재활용 선별	11	11	"	900	1,000~1,200	"
			하수도준설	2	2	"	1,300~1,500	1,500~1,850	"
			불법주정차단속	21	21	"	1,800	1,950	"
			주차장 주차관리	6	6	"	1,300~1,500	1,400~1,800	"
			지도단속원	15	15	"	1,300~1,500	1,400~1,80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문서전달수발, 사환	56	52	'07.10	1,300~1,500	1,400~1,800	58
			민원인 안내	16	16	"	1,300~1,500	1,400~1,800	"
			부속실등	9	9	"	1,300~1,500	1,400~1,800	"
			의회단순업무 해당인력	7	7	"	1,300~1,500	1,400~1,800	"
			공영버스운전원	55	55	"	2,500	2,600~2,800	"
			이동목욕차량운전	1	1	"	1,300	1,450	"
			도로보수원	5	5	"	1,800	1,950	"
			환경미화원	20	20	"	1,650	2,650	59
			소계	843	838				
188	서울	강동구 시설관리공단	상용직(기술직)	3	3	07.10	1,600	1,600	57
			상용직(일반사무보조)	2	0	-	-	-	-
			상용직(안내)	1	0	-	-	-	-
			전문직(PD)	1	0	-	-	-	-
			소계	7	3				
189	서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원	13	13	07.09	1,512~2,339	1,542~2,395	57
			상장지도원	6	6	"	1,806~2,006	1,830~2,288	"
			사무보조원	5	5	"	1,145~1,336	1,167~1,370	"
			안전성검사원	5	5	"	1,547~2,328	1,582~2,380	"
			식당운영원	2	2	"	2,101~2,290	2,148~2,341	"
			인터넷방송원	1	1	"	2,203	2,204	"
			소계	32	32				
190	서울	도시철도공사	모타카운전	35	48	07.10	2,431	2,431	58
			식당보조	57	68	"	1,435	1,435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이용사	3	7	07.10	2,002	2,002	58
			소계	95	123				
191	서울	성동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	10	10	07.09	1,080~3,006	1,080~3,006	57
			행정지원	9	8	"	1,080~3,006	1,080~3,006	"
			도색	1	1	"	1,080~1,460	1,080~1,460	"
			소계	20	19				
192	서울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업무	4	4	07.10	1,450	1,450	60
			주차관리	2	2	"	1,450	1,450	"
			단속	1	1	"	1,450	1,450	"
			시설관리	1	1	"	1,450	1,450	"
			업무(안내 및 접수)	1	1	"	1,450	1,450	"
			운전	1	1	"	2,500	2,500	"
			환경미화	1	1	"	1,450	1,450	"
			소계	11	11				
193	서울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4	4	07.10	1,750	1,750	55
			소계	4	4				
194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무대기계	1	1	08.01	2,583	2,583	57
			시설관리원	6	6	"	3,208	3,208	"
			소계	7	7				
195	서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견인업무	0	1	07.07	1,000~1,300	1,370	57
			안내데스크	0	1	"	1,000~1,300	1,370	"
			주차관리	20	21	"	1,000~1,300	1,370	"
			환경관리	3	5	"	1,000~1,300	1,37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23	28				
196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운전원	8	5	08.01	2,510~2,890	2,510~2,890	60
			소계	8	5				
197	서울	서울메트로	식당찬모	23	0	추진중	1,583	1,583	58
			조리사	2	0	"	2,097~2,104	2,097~2,104	"
			목욕탕관리원	3	0	"	1,583~1,588	1,583~1,588	"
			면도사	8	2	07.10	1,289~1,293	1,289~1,293	"
			세탁소관리원	2	0	"	1,606~1,611	1,606~1,611	"
			매점 관리원	3	0	"	1,289~1,293	1,289~1,293	"
			취사원	1	0	"	1,240	1,240	"
			보육교사	3	0	"	1,490~1,780	1,490~1,780	"
			소계	45	2				
198	서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원	64	60	08.01	2,916	3,250	60
			시설정비보조	64	61	"	1,933	2,150	"
			혼잡징수원	42	39	"	1,483	1,750	"
			환경미화원	42	31	"	1,650	1,842	"
			운전원	18	18	"	1,975	2,100	"
			주차안내	10	12	"	1,550	1,800	"
			시설안전경비	9	8	"	1,650	1,892	"
			시설관리원	5	5	"	2,708	3,083	"
			시민안내	3	3	"	1,517	1,716	"
			차량정비원	3	3	"	1,916	2,166	"
			사무보조	2	2	"	1,500	1,625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음식조리	2	2	'08.01	1,475	1,608	60
			영양사	1	1	"	1,761	1,925	"
			전문기술원	0	1	"	4,650	3,425	"
			소계	265	246				
199	서울	성북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5	0	-	1,000	1,000	57
			견인기사	3	0	-	1,454	1,454	"
			청소	3	0	-	1,000	1,000	"
			민원상담	2	0	-	963	963	"
			열람실지원	2	0	-	945	945	"
			유아교육	2	2	07.07	1,045	1,045	"
			전문파트	2	0	-	1,400	1,400	57
			검표및안내	1	0	-	1,200	1,200	"
			사무보조	1	1	07.07	1,114	1,114	"
			소계	21	3				
200	서울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미전환 (이사회 승인 등)	14	-				
201	서울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미전환 (이사회 승인 등)	8	-				
202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5	-				
203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미전환 (이사회 승인 등)	74	-				
204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6	-				
205	서울	SH공사	미전환 (노조 협의)	201	-				
206	서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4	-				
207	부산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미전환 (노조 협의)	124	-				
208	대구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미전환 (이사회 승인 등)	50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209	광주	환경시설공단	청소원	5	4	08.01	900	900	57
			반입감시원	4	4	"	1,740	1,740	"
			복지시설관리원	4	4	"	1,740	1,740	"
			소계	13	12				
210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무보조원	1	1	08.01	1,560	1,680	57
			소계	1	1				
211	울산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간이휴게원	1	1	08.01	1,533	1,533	60
			간호원	1	1	"	1,533	1,533	"
			녹지관리원	38	45	"	2,094	2,094	"
			미아보호원	1	1	"	1,533	1,533	"
			보육교사	2	1	"	2,102	2,102	"
			보일러원	0	1	"	2,094	2,094	"
			사격지도원	0	1	"	2,094	2,094	53
			사무보조원	9	10	"	1,533	1,533	60
			수영장안전요원	5	10	"	2,094	2,094	53
			스쿼시지도원	1	1	"	2,094	2,094	53
			자전거대여원	2	2	"	1,533	1,533	60
			전기원	1	1	"	2,094	2,094	"
			조리원	2	2	"	1,533	1,533	"
			주차관리원	3	4	"	1,533	1,533	"
			청소원	4	4	"	1,579~1,824	1,579~1,824	"
			체육시설관리원	1	1	"	1,533	1,533	"
			카페관리원	1	1	"	1,533	1,533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탈의실요원	5	5	08.01	1,533	1,533	60
			테니스지도원	0	1	"	2,094	2,094	53
			헬스원	2	2	"	2,094	2,094	53
			호수주차관리원	1	1	"	2,094	2,094	60
			POS요원	8	11	"	1,533	1,533	"
			전문계약직	2	3	"	2,639~3,657	2,639~3,657	57
			소계	90	110				
212	경기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청사청소원	15	14	08.01	1,511~1,682	1,511~1,682	60
			안내	5	5	"	1,560~1,734	1,560~1,734	"
			시설관리(탁구장)	1	1	"	1,649	1,649	"
			시설관리(도서실)	1	1	"	1,515	1,515	"
			시설관리(아동놀이시설)	1	1	"	1,517	1,517	"
			시설관리(청계)	1	1	"	1,570	1,570	"
			견인사무소	3	1	"	1,679	1,679	"
			주차장	5	4	"	1,585~1,626	1,585~1,626	65
			위해시설	1	1	"	1,752	1,752	60
			공원관리	1	0	-	-	-	-
			시설관리(부곡)	1	1	08.01	1,688	1,688	60
			사무보조(인사이동으로 1명 청사청소원, 1명 견인 사무소관리배정)	2	2	"	1,542~1,817	1,542~1,817	"
			소계	37	32				
213	경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22	22	07.10	1,141~1,454	1,141~1,454	60
			소계	22	22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214	경기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사무보조	8	8	07.10	1,400~1,500	1,490~1,600	60
			청사청소원	13	11	"	1,800~1,900	1,900~2,020	"
			식당취사보조	3	3	"	1,800~1,900	1,900~2,020	"
			주차관리원	21	15	"	1,400~1,500	1,490~1,600	"
			견인관리원	2	2	"	1,700~1,800	1,800~1,910	"
			종량제봉투관리원	3	3	"	1,700~1,800	1,800~1,910	"
			환경미화원	7	6	"	2,900~3,000	3,090~3,200	"
			소계	57	48				
215	경기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비서	1	1	07.09	1,600~1,700	1,900~2,100	59
			소계	1	1				
216	경기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31	31	08.01	1,870~2,290	1,870~2,290	60
			공원관리원	2	2	"	2,400~2,460	2,400~2,460	"
			사무보조원	1	1	"	1,500	1,500	"
			소계	34	34				
217	경기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	2	2	07.10	1,000~1,200	1,200~1,500	39
			소계	2	2				
218	경기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	13	13	07.12	1,500~1,700	1,600~2,000	57
			사무보조	7	7	"	1,500~1,700	1,600~2,000	"
			소계	20	20				
219	경기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6	5	07.09	1,200	1,200	60
			장례지도사	3	3	"	2,000	2,000	57
			식당종사원	2	2	"	1,600	1,600	60
			사무보조원	3	3	"	1,500	1,500	57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14	13				
220	경기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5	5	08.01	1,400~1,800	1,400~1,800	60
			매표원	2	2	"	1,300~1,700	1,300~1,700	60
			행정관리	1	3	"	2,500~2,800	2,500~2,800	57
			소계	8	10				
221	경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미전환 (이사회 승인 등)	101	-				
222	경기	광주지방공사	미전환 (이사회 승인 등)	6	-				
223	경기	수원시 시실관리공단	미전환 (노조 협의)	2	-				
224	경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미전환 (이사회 승인 등)	2	-				
225	경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미전환 (이사회 승인 등)	128	-				
226	강원	태백관광 개발공사	사무보조원	1	1	07.12	1,200~1,250	1,400~1,500	57
			소계	1	1				
227	강원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매표	5	5	07.10	1,200~1,300	1,200~1,300	57
			사무업무보조	1	1	"	1,200~1,300	1,200~1,300	"
			수영강사	2	2	"	1,800~2,000	1,800~2,000	"
			주차요원	18	18	"	1,200~1,300	1,200~1,300	55
			환경관리	11	11	"	1,200~1,300	1,200~1,300	57
			소계	37	37				
228	강원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미전환 (이사회 승인 등)	13	-				
229	전북	전북개발공사	용지보상 계약직	1	1	07.09	2,500	2,500	57
			소계	1	1				
230	경북	경북개발공사	비서	1	1	07.09	1,371	1,966	57
			사무보조원	2	2	"	1,323	1,541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3	3				
231	경북	청도공영 사업공사	싸움소관리보조원	5	2	07.10	1,381~1,538 1,368~1,650	1,368~1,650	55
			사무보조원	1	0	-	-	-	-
			소계	6	2				
232	경남	창원경륜공단	사무보조	7	7	07.11	1,750～1,850	1,750～1,850	50
			행정사무	3	2	"	2,300～2,838	2,300～2,838	57
			영양사	1	1	"	3,266	3,266	"
			전기관리	1	1	"	3,584	3,584	"
			전광판	1	1	"	3,721	3,721	"
			경주운영	3	2	"	2,177～2,831	2,177～2,831	"
			조 편 성	1	1	"	2,296	2,296	"
			선수지원	1	1	"	2,831	2,831	"
			방송요원	2	2	"	2,559～2,943	2,559～2,943	"
			안전질서	1	1	"	3,212	3,212	"
			경주분석	1	1	"	3,702	3,702	"
			고객관리	2	2	"	2,553～3,212	2,553～3,212	"
			아나운서	1	1	"	2,846	2,846	"
			소계	25	23				
233	경남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환경정비	14	14	07.09	1,316	1,316	57
			입장권 발매원	0	3	"	1,316	1,316	"
			사무보조원	1	1	"	1,316	1,316	"
			매점관리원	1	1	"	1,316	1,316	"
			매점판매원(일시사역자)	2	0	-	-	-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18	19				
234	경남	창녕군 개발공사	사무보조원	1	1	07.11	1,240	1,341	57
			시설관리원	3	3	"	1,560	1,661	"
			매표원	1	1	"	1,560	1,661	"
			하수처리장 운영보조원	1	1	"	1,240	1,341	"
			소계	6	6				
235	경남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간호사	1	0	09.07 (예정)	2,100~2,500	2,100~2,500	-
			매표원	1	1	07.12	1,100~1,500	1,100~1,500	57
			물리치료사	2	0	"	2,300~2,700	2,300~2,700	-
			사무보조원	4	0	"	1,100~1,500	1,100~1,500	-
			사회복지사	10	0	"	1,500~2,000	1,500~2,000	-
			수영강사	2	0	"	1,600~1,900	1,600~1,900	-
			시설물관리원	2	0	"	1,100~1,500	1,100~1,500	-
			식당보조원	3	3	07.12, 08.01	1,100~1,500	1,100~1,500	57
			의사	0	0	"	2,400~2,800	2,400~2,800	-
			차량운전원	1	0	"	2,000~2,400	2,000~2,400	-
			청소년지도사	2	0	"	2,300~2,700	2,300~2,700	-
			체육지도원	1	0	"	1,700~2,100	1,700~2,100	-
			화장로운전원	4	4	07.12	1,400~1,900	1,400~1,900	57
			환경정비원	16	13	"	1,100~1,500	1,100~1,500	57
			소계	49	21				
236	경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13	-				
237	경남	경남개발공사	미전환 (내부절차 진행중)	5	-				

연번	시도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238	제주	제주특별 자치도개발공사	생산직	48	48	07.10	1,447~1,892	1,447~2,248	57
			사무직	13	12	"	1,447~1,704	1,447~2,060	"
			품질관리	4	4	"	1,447~1,589	1,447~1,945	"
			경비직	3	3	"	1,360	1,360	"
			청소직	3	3	"	1,478	1,478	"
			기숙사 관장/사감	2	2	"	1,958	1,958	65
			소계	73	72				

* 일부기관의 경우 '08년도부터 전환자 처우를 개선할 계획으로 '07년에 전환결과 제출시의 처우개선 임금액과 '08년도 예산집행시 실제 지급 임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3. 공기업 ·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 내용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총계		7,474	6,999				
1	재경부	기술보증기금	업무보조인력	45	45	07.10	1,814	2,230	58
			채권추심계약직	8	8	"	1,718	1,940	61
			소계	53	53				
2	재경부	신용보증기금	미전환 (노사협의중)	81	-				
3	재경부	예금보험공사	사무서무직	4	4	07.09	2,800	2,800	58
			소계	4	4				
4	재경부	한국기업데이터	미전환 ('08.3월 전환 예정)	43	-				
5	재경부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무출납	2	2	07.09	1,374	1,374	58
			운전기사	1	1	"	2,586	2,586	"
			소계	3	3				
6	교육부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원무직	4	3	07.11	990~1,320	1,040~1,680	57
			보건직	1	1	"	1,341	1,364	"
			간호사	0	1	07.10	1,341	1,483	"
			전산직	1	1	07.05	2,219	2,219	"
			소계	6	6				
7	교육부	강원대학교병원	미전환 ('08년 이사회 재논의)	18	-				
8	교육부	경북대학교병원	간호직	55	60	07.10	2,000~2,800	2,000~2,800	57
			의료기술직	12	12	"	2,000~2,800	2,000~2,800	"
			기능직	14	16	"	1,800~2,400	1,800~2,400	"
			약무직	0	2	"	2,800~3,200	2,800~3,200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81	90				
9	교육부	경상대학교병원	간호직	3	0	-	-	-	-
			보건직	5	6	07.10	1,250	1,500	57
			원무직	76	70	"	1,119	1,370	"
			소계	84	76				
10	교육부	부산대학교병원	간호직	5	5	07.10	1,545	1,644	57
			보건직	16	15	"	1,400	1,492	"
			원무직	14	14	"	1,220	1,301	"
			간호조무직	13	13	"	1,220	1,301	"
			행정직	6	6	"	1,400	1,492	"
			소계	54	53				
11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비서	3	3	07.10	1,439~1,559	1,734~1,841	57
			소계	3	3				
12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직	58	62	07.12	1,800~1,450	2,034~2,648	57
			보건직	62	67	"	1,800~1,450	1,747~2,394	"
			사무직	9	9	"	1,800~1,450	1,747~2,394	"
			기술직	1	1	"	1,800~1,450	1,747~2,394	"
			약무직	0	1	"	2,000~2,300	2,232~2,665	"
			운영기능직	66	58	"	1,300~1,000	1,516~2,043	"
			간호운영기능직	24	45	"	1,300~1,000	1,516~2,043	"
			소계	220	243				
13	교육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사무직	2	2	07.12	2,754~2,788	2,754~2,788	58
			치과위생사	1	2	"	1,606	2,651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전산직	3	3	07.12	2,822~3,126	2,822~3,126	58
			연구직	0	1	"	2,849	2,850	"
			운영기능직	9	8	"	1,189	1,707	"
			소계	15	16				
14	교육부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직	1	42	07.07	1,600	2,000	57
			보건직	11	11	"	1,470	1,840	"
			원무직	41	17	"	1,210	1,510	"
			기타(행정,영양)	0	2	"	1,470	1,840	"
			소계	53	72				
15	교육부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직	52	51	07.10	1,601~1,718	2,060~2,250	57
			보건직	31	31	"	1,468~1,581	1,900~2,100	"
			기능직	43	43	"	1,252~1,300	1,650~1750	"
			소계	126	125				
16	교육부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직	15	27	07.09, 08.01	1,600	1,840	57
			의료기술직	4	6	08.01	1,560	1,700	"
			행정직	2	4	"	1,320	1,590	"
			원무직	11	11	"	1,490	1,730	"
			소계	32	48				
17	교육부	충남대학교병원	간호직	24	40	08.01	1,702	2,119	57
			보건직	14	11	"	1,427~1,564	2,043~2,482	"
			원무직	55	22	"	957~1,427	1,876~2,339	"
			소계	93	73				
18	교육부	충북대학교병원	원무직	9	9	07.11	1,196	1,538	57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9	9				
19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관리원	12	11	07.08, '07.12	3,300~3,500	3,300~3,500	58
			소계	12	11				
20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무원	4	4	07.11	1,688～2,429	2,033~3,059	54
			전문원	5	5	"	1,905～2,148	1,934~2,372	"
			기능원	4	4	"	1,520～2,115	2,140~2,431	57
			사서원	3	3	"	1,688～2,029	2,103~2,472	54
			연구원	3	3	"	2,382～2,646	2,528~3,135	60
			전산원	2	2	"	1,751～1,971	2,189~2,314	54
			소계	21	21				
21	과기부	고등과학원	전산관리	1	1	07.10	2,417	2,417	58
			소계	1	1				
22	과기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직	4	0	-	-	-	-
			연구행정지원직	13	1	07.10	2,582	3,095	58
			행정지원직	7	4	"	2,383~2,565	3,404~3,645	"
			소계	24	5				
23	과기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미전환(노사협의중)	1	-				
24	과기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촉기술직	2	2	07.11	3,823	3,823	59
			위촉행정직	2	2	"	3,581	3,581	"
			행정보조직	29	28	"	2,671	2,671	"
			상용직	17	17	"	2,812	2,812	"
			소계	50	49				
25	과기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촉사무원	4	4	07.12	2,060~2,424	2,940~3,521	56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위촉연구원	0	2	07.12	2,226~2,521	2,915~3,329	56
			소계	4	6				
26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위촉연구원	29	18	07.09	2,851~3,925	2,851~3,925	58
			위촉기술원	8	8	"	2,851~4,178	2,851~4,178	"
			위촉행정원	15	11	"	2,717~3,772	2,717~3,772	"
			위촉기능원	4	1	"	3,313	3,313	56
			위촉사무원	14	2	"	2,870~3,024	2,870~3,024	"
			소계	70	40				
27	과기부	한국기계연구원	행정보조	2	1	07.07	2,040	3,350	58
			소계	2	1				
28	과기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촉기술원	3	3	07.11	3,711~4,067	3,711~4,067	58
			위촉행정원	4	4	"	3,275~3,909	3,275~3,909	"
			소계	7	7				
29	과기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행정보조직	5	5	07.10	1,959~2,891	2,878~3,555	58
			소계	5	5				
30	과기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행정보조	24	24	08.01	1,181~1,652	1,330~1,820	58
			소계	24	24				
31	과기부	한국식품연구원	위촉연구원	2	2	07.11	1,725~1,993	3,333~3,667	61
			소계	2	2				
32	과기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운전원	2	2	07.10	2,660~2,840	2,800~3,200	58
			비서	1	1	"	2,380	3,360	"
			소계	3	3				
33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위촉연구원(생산직)	18	0	-	-	-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18	0				
34	과기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사무기술직	6	0	-	-	-	-
			보건직	7	2	07.08	1,725	2,811	58
			일반업무직	37	1	07.06	1,346	2,308	"
			간호직	6	0	-	-	-	-
			소계	56	3				
35	과기부	한국전기연구원	사업보조	9	9	08.01	1,050~2,238	1,050~2,700	58
			행정보조	13	13	"	1,050~2,238	1,050~2,700	"
			소계	22	22				
36	과기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식당조리원	3	3	07.08	1,050~1,100	1,400	58
			사무보조	3	3	"	2,084~2,382	2,331~2,901	"
			운전기사	3	3	"	1,400~1,680	2,000	"
			시설관리원	2	2	"	2,438~2,497	2,636~2,701	"
			선원보조	2	2	"	3,184~3,287	3,184~3,287	"
			소계	13	13				
37	과기부	한국천문연구원	연구보조원	1	1	07.10	1,500	3,500	61
			소계	1	1				
38	과기부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실험실관리원	1	1	07.10	1,816	2,371	55
			동물실험실관리원	1	1	"	2,241	2,581	"
			행정보조원	3	2	"	1,898~2,300	2,238~2,640	"
			도서실관리원	1	0	-	-	-	-
			기능행정보조원	2	0	-	-	-	-
			소계	8	4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39	과기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장비운용직	13	13	07.12	2,800~3,950	2,800~3,950	58~61
			장비운용보조직	3	3	"	2,520~2,730	2,520~2,730	58
			특수근무직	15	15	"	2,370~4,320	2,370~4,320	"
			사무직	25	25	"	1,600~2,670	1,600~2,670	"
			소계	56	56				
40	과기부	한국화학연구원	행정지원	1	1	07.10	1,963	3,543	58
			소계	1	1				
41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미전환 (이사회 개최지연)	7	-				
42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청사관리	3	1	07.10	1,850	2,143	58
			소계	3	1				
43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심사간호사	2	1	07.12	2,565~2,760	2,962	57
			연금지제작	3	3	"	2,117~2,524	2,486~2,824	"
			비 서	4	4	"	2,019~2,097	2,382~2,454	"
			전화교환원	3	2	"	1,576~1,810	1,795~2,018	"
			업무보조원	2	2	"	1,486~1,542	1,935	"
			소계	14	12				
44	행자부	대한지적공사	측량보조	139	136	07.10	1,494	1,824	56
			사무보조	8	9	"	1,494	1,824	"
			휴양소관리	1	1	07.10	1,494	1,824	"
			소계	148	146				
45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지원	86	83	07.10	900~4,000	900~4,000	58
			경주운영	152	148	"	1,400~4,700	1,400~4,700	"
			호텔운영	18	18	"	850~2,200	850~2,200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현장관리	36	34	07.10	950~3,400	950~3,400	58
			소계	292	283				
46	문광부	대한체육회	스포츠마케팅	2	1	07.11	2,369	2,369	58
			국제스케이트장	2	2	"	4,355	4,355	"
			간호조무사	1	1	"	1,061	1,061	"
			전임지도자실	1	1	"	1,282	1,282	"
			소계	6	5				
47	문광부	정동극장	공연기획보조	1	1	07.10	1,531	1,808	60
			공연진행보조	1	1	"	1,693	2,106	"
			사무보조 및 시설관리	1	1	"	1,612	2,020	"
			소계	3	3				
48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코스관리	10	10	07.10	770~1,144	770~1,144	58
			사무보조	2	0	-	-	-	-
			판매보조	1	0	-	-	-	-
			소계	13	10				
49	문광부	한국문학번역원	경리	1	1	07.10	1,764	2,056	58
			소계	1	1				
50	문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계약직	8	8	07.04	3,625~4,505	4,197~5,150	58
			임시직	10	10	07.12	2,662~3,798	3,154~4,384	"
			촉탁직	4	0	-	-	-	-
			소계	22	18				
51	문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무대/전시기술	8	8	07.11	1,500~3,300	1,600~3,500	58
			사서/콘텐츠관리	6	5	"	1,400~2,200	1,500~2,400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전기기계원	4	4	07.11	1,900~2,800	2,000~3,000	58
			교육기획/운영	3	3	"	1,400~2,200	1,580~2,480	"
			전산웹관리	3	3	"	1,800~2,400	1,900~2,600	"
			출판편집	1	1	"	1,653	1,753~1,853	"
			총무회계	2	2	"	1,900~2,200	2,000~2,400	"
			소계	27	26				
52	문광부	한국문화진흥	조리	1	1	07.09	1,543	1,543	58
			소계	1	1				
53	문광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문위원	3	4	08.01	4,198~6,165	4,198~6,165	56
			고용직	4	4	"	2,608~3,118	2,608~3,118	"
			소계	7	8				
54	문광부	한국언론재단	행정직	5	5	07.08	2,679	3,779	58/56
			연구직	4	4	"	4,988	5,998	58
			소계	9	9				
55	문광부	한국영상자료원	영사기사	3	3	07.12	2,200~3,000	2,200~3,000	58
			필름복원 및 보수	1	1	"	2,700	2,700	"
			소계	4	4				
56	문광부	한국체육산업개발	시설관리원	45	45	07.10	1,400~2,400	1,400~2,400	57
			행정보조원	9	6	"	1,500~2,000	1,500~2,000	"
			소계	54	51				
57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	132	129	07.08	2,322~2,838	2,322~2,838	60
			소계	132	129				
58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무직	12	12	07.12	1,832~3,280	1,832 ~ 3,280	57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기술직	4	3	07.12	1,661~1,806	1,661~1,806	57
			소계	16	15				
59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기술보조	50	50	07.12	1,416	1,538	55
			소계	50	50				
60	농림부	한국마사회	경마시행	37	37	07.10	1,264~2,305	1,450~2,556	55
			마필관리	48	38	"	1,264~2,231	1,626~~2,019	"
			보건안전	13	13	"	1,459~3,847	1,598~4,045	"
			사무보조	22	22	"	1,264~2,524	1,314~2,621	"
			소계	120	110				
61	산자부	한전KPS	정비보조(갑)	231	226	07.10	1,677~4,447	1,777~4,528	55
			정비보조(을)	23	22	"	1,438~2,466	1,610~2,552	"
			사무보조	6	5	"	1,852~2,500	1,953~2,620	"
			운전원	2	1	"	2,427	2,526	"
			소계	262	254				
62	산자부	대한광업진흥공사	경영정보시스템관리	1	0	-	-	-	-
			통역	1	0	-	-	-	-
			문헌정보DB구축	1	1	07.11	1,908	2,109	58
			시험보조	3	2	"	1,623~1,988	2,014~2,036	"
			식당조리/청소	4	1	"	1,410	1,410	"
			인터넷홍보	1	0	-	-	-	-
			자원정보번역/DB작성	5	2	07.11	1,908	2,109	58
			전산도면제작	1	1	"	2,069	2,233	"
			지질도작성	3	0	-	-	-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행정사무보조	1	0	-	-	-	-
			B2B마케팅, 시스템개발	1	0	-	-	-	-
			소계	22	7				
63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계약직(을)	14	16	07.10	2,023	2,255	56
			소계	14	16				
64	산자부	요업기술원	기기운용	4	4	07.11	1,200~1,600	1,200~1,600	55
			비서	1	1	"	1,898	1,898	"
			운전기사	1	1	"	3,177	3,177	"
			사서	1	1	"	2,605	2,605	"
			소계	7	7				
65	산자부	강원랜드	청소원	13	21	07.07	1,248	1,248~1,280	58
			경비관리원	13	26	"	1,557~2,812	1,557~2,812	"
			조리보조원	11	11	"	1,567	1,568	"
			스키장운영	1	25	"	1,934~4,775	2,332~4775	"
			운전기사	1	6	"	1,557~2,205	1,771~2,205	"
			행정보조원	9	13	"	2,080~5,260	2,122~5,260	"
			테이블영선기사	1	2	"	1,898	1,898~2,418	"
			고객서비스보조원	1	1	"	2,377	2,577	"
			상담사	2	0	-	-	-	-
			세탁공장관리원	1	1	07.07	3,071	3,143	58
			꽃방보조원	1	1	"	2,031	2,411	"
			조경수목관리원	1	1	"	1,946	1,970	"
			소계	55	108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66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전문자격	8	8	07.09	3,566~6,072	3,566~6,072	58
			전문기술및기능	11	12	"	3,265~6,109	3,265~6,109	"
			일반사무	23	22	"	2,065~6,869	2,065~6,869	"
			충전소안전관리	0	53	"	2,173~2,787	2,173~2,787	"
			소계	42	95				
67	산자부	한국가스기술공사	경상정비 및 관로순찰 지원	19	50	07.09	1,575～1,688	1,575～1,688	56
			설계지원	0	2	"	2,900～3,200	2,900～3,200	"
			차량운전원	0	3	"	1,607～1,836	1,607～1,836	"
			변호사	0	1	"	4,590	4,590	"
			해외사업 지원	0	1	"	2,678	2,678	"
			기술기획 지원	0	1	"	1,688	1,688	"
			교육원 지원	0	1	"	2,200	2,200	"
			소계	19	59				
68	산자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위촉직원(을)	1	1	07.10	2,058	2,058	58
			소계	1	1				
69	산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위촉사무원	5	5	07.07	2,274~2,543	3,126~3,482	58
			위촉연구원	0	5	"	2,628~2,695	3,474~3,684	"
			소계	5	10				
70	산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무보조	6	3	07.10	1,800	2,200	58
			소계	6	3				
71	산자부	한국석유공사	전문계약직	13	11	07.12	2,041~2,631	2,295~2,958	58
			일반계약직	30	33	"	1,279~1,892	1,408~2,291	"
			소계	43	44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72	산자부	한국수출보험공사	사무보조	3	3	07.10	1,300~2,150	1,600~2,550	58
			소계	3	3				
73	산자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보조	7	7	07.12	1,900	1,900	57
			고객지원	3	2	"	1,425	1,425	"
			소계	10	9				
74	산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식당조리원	5	5	07.10	883~1,155	897~1,338	60
			소계	5	5				
75	산자부	한국전력공사	영업사무담당	265	264	07.10	2,790~2,840	2,790~2,840	55
			일용직	215	213	"	1,160~2,250	1,170~2,750	55/58
			소계	480	477				
76	산자부	한국전력기술	미전환(내부절차 진행중)	3	-				
77	산자부	한전원자력연료	생산보조원	8	8	07.12	1,222~1,356	1,352~1,556	55
			사무보조원	7	7	"	1,222~1,356	1,352~1,556	"
			시설관리보조원	1	1	"	1,222~1,356	1,352~1,556	"
			운전원	1	1	"	1,602	1,657	"
			소계	17	17				
78	정통부	별정우체국연합회	건물시설관리	1	1	07.07	1,673	1,704	57
			소계	1	1				
79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직	19	19	07.10	1,910~4,612	1,910~4,612	58
			기능직	27	25	"	750~1,467	750~1,467	"
			소계	46	44				
80	정통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일반직	9	9	07.10	1,884~2,682	1,884~2,682	60/57
			연구직	4	4	"	2,612~3,131	2,612~3,131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13	13				
81	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행정직	37	36	07.10	2,877~6,610	2,877~6,610	60/57
			소계	37	36				
82	정통부	한국전파진흥원	일반계약직	1	0	-	-	-	-
			소계	1	0				
83	정통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행정사무직	30	27	07.09	2,020~3,795	2,020~3,795	57
			소계	30	27				
84	정통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행정직	6	6	07.10	2,599~5,220	2,599~5,220	57
			기능직	14	14	"	1,648~3,524	1,648~3,524	"
			소계	20	20				
85	정통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기능직	6	5	07.10	2,239~4,502	2,239~4,502	57
			소계	6	5				
86	복지부	국립암센터	간호직	6	13	07.11	1,500~2,300	2,485~3,072	60
			보건직	1	3	"	1,900~2,100	2,643	"
			사무보조	0	2	"	1,500~2,100	2,174~2,275	"
			소계	7	18				
87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사	26	26	07.10	2,790	2,790	57
			급여조사원	12	12	"	2,790	2,790	"
			소계	38	38				
88	복지부	대한결핵협회	행정보조	2	2	07.05	1,300	2,128~2,156	60
			임상병리사	1	1	"	1,300	2,027	"
			방사선사	2	2	"	1,300	2,141	"
			간호보조	2	2	"	1,300	2,083~2,119	57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진료업무	1	1	07.05	4,320	5,536	60
			소계	8	8				
89	복지부	대한적십자사	간호직	73	51	07.11	1,200~2,800	1,920~2,920	58
			보건직	13	7	"	1,200~2,640	1,920~2,640	"
			기술직	1	2	"	960~1,920	1,560~1,956	"
			기능직	2	4	"	960~2,075	1,760~2,180	"
			고용직	18	86	"	600~1,816	1,340~1,816	"
			운전직	9	8	"	1,110~2,200	1,490~2,200	"
			소계	116	158				
90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무보조	1	1	07.07	1,200	1,600	57
			소계	1	1				
91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미화원	93	93	08.01	1,141	1,461	미정
			탐방안내원	38	35	"	1,141	1,461	"
			영선	23	23	"	1,505	1,705	"
			주차관리	21	20	"	1,141	1,461	"
			동식물보호	20	20	"	1,341	1,531	"
			안전관리	14	12	"	1,563	1,773	"
			수익시설물관리	14	13	"	1,484	1,864	"
			반달가슴곰복원	10	7	"	1,776	1,996	"
			행정보조	8	8	"	1,770	1,990	"
			조사연구보조	1	1	"	1,776	1,996	"
			셔틀버스운전원	1	0	-	-	-	-
			산양복원	2	2	08.01	1,776	1,996	미정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마필관리원	1	1	08.01	1,676	1,926	미정
			항공기정비	1	1	"	2,789	2,989	"
			소계	247	236				
92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정관리원	1	1	07.11	2,282	2,615	57
			도로관리원	1	1	"	1,979	2,465	"
			반입업무보조원	1	1	"	1,404	1,983	"
			수목(원예)관리원	2	2	"	2,282~3,334	2,510~3,486	"
			시설관리원	1	1	"	1,683	2,272	"
			중장비운전원	2	2	"	1,979	2,352~2,408	"
			토사감시원	2	2	"	1,683	2,272~2,464	"
			행정보조원	4	4	"	1,404~1,683	2,041~2,163	"
			소계	14	14				
93	노동부	산재의료관리원	방사선사	9	9	07.10	1,743	1,868	58
			임상병리사	7	7	"	1,793	1,855	"
			물리치료사	2	2	"	1,665	1,847	"
			간호직	7	7	"	1,749	1,847	"
			기술기능직	2	2	"	1,956	1,969	"
			산업위생직	1	1	"	1,665	1,847	"
			행정보조원	26	26	"	1,662	1,757	"
			소계	54	54				
94	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교사	126	126	07.10	2,066~2,259	2,307~2,680	60
			전산	2	2	"	2,304~2,655	2,304~2,655	57
			홍보	1	1	"	3,821	3,821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129	129				
95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전산지원	10	10	07.10	2,536	2,536	57
			연구지원	1	2	"	2,536	2,536	"
			사서직	1	0	-	-	-	-
			소계	12	12				
96	노동부	한국노동교육원	생활관사감	2	2	07.10	2,289	2,308	58
			전산보조	2	2	"	1,919	2,007	"
			운 전 원	2	2	"	2,595	2,608	"
			데이터베이스	2	2	"	2,082	2,133	"
			시설관리	1	1	"	3,042	3,079	"
			비서	1	1	"	1,754	1,848	"
			소계	10	10				
97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건강관리	1	1	07.10	2,418	2,695	57
			광고	1	1	"	2,977	3,281	"
			교재개발	1	1	"	2,134	2,374	"
			사서	1	1	"	1,042	1,187	"
			산업위생	1	1	"	2,055	2,298	"
			시스템	1	1	"	2,042	2,236	"
			식당조리	9	9	"	1,069	1,131	"
			역학조사	1	1	"	1,963	2,229	"
			연구지원	2	2	"	1,042	1,187	"
			영문	1	1	"	1,934	2,164	"
			유상보급	1	1	"	1,956	2,214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이동버스	2	2	07.10	1,473	1,613	57
			전자파	1	1	"	2,144	2,386	"
			정책방향	1	1	"	2,025	2,303	"
			체력측정	7	7	"	1,609~2,323	2,185~2,503	"
			체험교육	4	4	"	1,042	1,187	"
			통신교육	1	1	"	1,784	1,989	"
			행정업무	12	12	"	1,042	1,187	"
			DB구축	4	4	"	1,273~2,025	1,697~2,185	"
			IRMS	2	2	"	2,010~2,335	2,287~2,543	"
			S마크	1	1	"	2,812	3,112	"
			Web 디자인	1	1	"	2,044	2,253	"
			WISH	1	1	"	2,052	2,280	"
			소계	57	57				
98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	23	23	07.10	1,357~2,098	1,435~2,105	57
			외국인모니터링/보험관리	1	1	"	2,141	2,156	"
			외국인입국지원	4	4	"	2,141	2,156	"
			외국인취업교육	1	1	"	1,357	1,424	"
			출제지원	1	1	"	1,745	1,832	"
			자격분석	2	2	"	1,974	2,039	"
			직업능력표준개발	6	6	"	1,974	2,039	"
			초청훈련지원	1	1	"	1,357	1,424	"
			해외취업지원	6	6	"	2,141	2,156	"
			성장동력인력양성	2	2	"	1,892	1,949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진단평가/컨설팅	1	1	07.10	2,361	2,376	57
			콘텐츠개발	1	1	"	1,974	2,039	"
			원격훈련모니터링	4	3	"	1,745	1,832	"
			훈련지원	4	4	"	1,892	1,949	"
			훈련평가/모니터링	3	3	"	2,361	1,376	"
			원격훈련시스템관리	1	1	"	1,974	2,039	"
			전산관리	4	4	"	1,974	2,039	"
			소계	65	64				
99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터넷센터운영요원	4	4	07.08	1,844~1,965	2,683~3,090	57
			수중재활요원	3	3	"	1,755~2,010	2,310~2,696	"
			소계	7	7				
100	건교부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보조직	16	16	07.10	1,180~1,943	1,612~2,375	58
			AS시설관리직	65	65	"	1,180~1,943	1,612~2,375	"
			임대관리직	28	26	"	1,180	1,612	"
			고객상담직	18	16	"	1,180	1,612	"
			에너지관리직	2	1	"	3,140	3,572	"
			운전직	3	3	"	1,943	2,375	"
			광역관리사무직	1	1	"	1,180	1,612	"
			연수원운영직	6	2	"	1,180	1,612	"
			소계	139	130				
101	건교부	대한주택보증	전산직	5	5	07.10	3,460	3,460	58
			운전직	3	2	"	2,712	2,712	"
			사무직	0	1	"	1,507	1,507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8	8				
102	건교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직	25	17	08.01	1,991~3,207	2,567~5,230	59
			안전보안전문직	32	23	"	1,949~3,402	2,621~3,291	"
			소계	57	40				
103	건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무보조	5	5	08.01	1,300~1,600	1,700~1,900	58
			소계	5	5				
104	건교부	코레일개발	주차관리사원	2	2	07.10	1,000~1,500	1,000~1,500	61
			소계	2	2				
105	건교부	코레일네트웍스	사무직	4	11	07.10	1,200	1,200	58
			매표원	2	2	"	1,200~1,950	1,200~1,950	"
			소계	6	13				
106	건교부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감독요원	55	55	07.11	1,457~2,143	1,873~2,559	58
			시각환경디자이너	2	2	"	3,053~3,119	3,469~3,535	"
			급유관리자	1	1	"	3,608	4,524	"
			예비군참모	1	1	"	3,396	3,812	"
			소계	59	59				
107	건교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304	302	07.07	1,843	2,136	55
			도로정비원	107	106	"	1,696	1,916	"
			운전원	27	26	"	1,696	1,916	"
			정비원	4	4	"	1,696	1,916	"
			사무원	39	35	"	1,155	1,360	"
			식당조리원	4	4	"	1,229	1,388	"
			소계	485	477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108	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	수탁운영	50	48	07.11	1,665~1,731	1,846~1,912	58
			사무보조	21	3	"	1,560~1,623	1,741~1,804	"
			시설운영	12	8	"	1,813~1,886	1,994~2,067	58
			수질분석	5	4	"	2,299~2,391	2,480~2,572	"
			소계	88	63				
109	건교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사무보조직	11	11	07.12	3,106	3,269~3,439	58
			상근계약직	5	4	"	2,287	2,412~2,537	"
			소계	16	15				
110	건교부	한국철도공사	역무원	738	711	07.11	1,317~1,727	1,686~2,160	58
			방재요원	26	25	"	1,317	1,686	"
			차량관리원(정비보조)	224	221	"	1,009~1,217	1,585~1,611	"
			선로관리원	204	227	"	1,450	2,001	"
			건축설비원	1	1	"	1,271	1,686	"
			전기원	58	52	"	1,715	2,125	"
			역무보조원	54	55	"	927	1,465	"
			사무보조원	71	66	"	942	1,465	"
			물품관리원	16	16	"	1048~1,189	1,515~1,539	"
			소계	1392	1374				
111	건교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원 1종	16	20	07.12	1,714~1,990	2,056~2,400	58
			관리원 2종	17	17	"	1,524~1,671	1,766~1,803	"
			관리원 3종	19	22	"	1,101	1,283~1,434	"
			촉탁직	0	9	"	3,889~4,596	3,889~4,596	"
			소계	52	68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112	건교부	한국토지공사	미전환 (노사협의중)	87	-				
113	건교부	한국토지신탁	사무보조원	6	5	07.10	1,927~2,800	2,257~3,200	53
			소계	6	5				
114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사무보조	9	9	07.11	1,881~1,991	2,133~2,325	57
			운전원	3	3	"	1,919~2,603	2,227~2,889	"
			소계	12	12				
115	해수부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사무보조	8	8	07.09	2,006~2,484	2,090~2,595	57
			운전직	0	5	"	2,583~3,000	2,583~3,000	"
			소계	8	13				
116	해수부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식당조리원	1	1	07.12	1,527	1,695	57
			청소원	1	1	"	1,527	1,695	"
			소계	2	2				
117	보훈처	독립기념관	안내해설사	3	2	07.12	1,282	1,611	58
			전산보조	1	1	"	1,471	1,553	"
			소계	4	3				
118	보훈처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	간호직	2	2	08.01	1,918~2,318	2,543~3,247	57
			보건직	24	21	"	1,611~2,809	2,498~3,247	"
			기술직	1	0	-	-	-	-
			경비	1	1	08.01	1,685	2,472	57
			야간수납	3	3	"	1,495~1,725	2,448~2,515	"
			운전	5	5	"	1,829~2,823	2,496~3,490	"
			행정기능	5	6	07.09, 08.01	1,408~1,784	2,145~2,723	"
			취사원	30	30	07.06, 08.01	1,377~1,633	2,038~2,543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약무보조	2	2	08.01	1,606~1,723	2,525~2,647	57
			시설관리	4	5	"	1,593~1,605	2,402~2,367	"
			생활지도	1	1	"	1,329	2,209	"
			간호조무사	3	3	"	1,299~1,408	2,068~2,131	"
			중상이보조	3	3	07.06, 08.01	1,671	2,686	"
			생산기능	24	23	08.01	1,072~1,446	1,631~2,061	"
			소계	108	105				
119	국조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운전원	1	1	07.10	3,152	3,612	55
			소계	1	1				
120	국조실	통일연구원	사무원	1	6	07.12	2,000~3,000	2,000~3,000	57
			기능원	1	1	"	2,000~3,000	2,000~3,000	"
			부연구원	0	1	"	2,000~3,000	2,000~3,000	"
			소계	2	8				
121	국조실	한국개발연구원	미전환 ('08.5월 전환예정)	1	-				
122	국조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직	40	18	08.01	2,098~3,228	2,098~3,228	60
			행정직	8	5	"	2,098~3,228	2,098~3,228	"
			소계	48	23				
123	국조실	한국교통연구원	행정직	14	6	07.09	1,239~2,364	1,739~2,435	57
			소계	14	6				
124	국조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지원직	7	5	07.07	1,363	1,426	55
			소계	7	5				
125	국조실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시설관리원	3	3	07.07	2,585~2,988	2,610~3,021	57
			행정원	1	1	"	1,956	1,970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비서	1	1	07.07	2,665	2,671	57
			소계	5	5				
126	국조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직	15	13	07.11	2,499	2,716	57
			소계	15	13				
127	국조실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관리직	2	2	07.11	2,510~2,962	2,516~2,976	57
			기능직	18	12	"	1,502~1,809	1,508~1,823	"
			소계	20	14				
128	국조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행정직	6	7	07.05, '07.11	1,592~2,228	1,633~2,388	58
			전문직	1	1	07.05	2,210	2,430	"
			소계	7	8				
129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전화상담원	17	17	07.12	1,600~1,800	1,775~2,065	미정
			소계	17	17				
130	금감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관리직	273	278	07.10	3,778	3,778	58
			소계	273	278				
131	청소년위	한국청소년상담원	전산직	1	1	07.12	1,300	1,650	57
			소계	1	1				
132	청소년위	한국청소년수련원	식당보조	4	3	07.11	1,501~1,552	1,646~1,700	55
			시설관리	9	7	"	1,516~1,944	1,664~2,098	"
			소계	13	10				
133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미전환 ('08년 전환여부 재검토)	170	-				
134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미전환 ('08년 전환여부 재검토)	13	-				
135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방송운영	21	20	07.10	2,030~2,978	2,030~2,978	54
			행정업무	29	29	"	1,442~1,951	1,442~1,951	"

연번	소관부처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전환전	전환후	
			전기.기계시설관리	4	4	07.10	2,276	2,276	54
			사무보조	14	13	"	1,302	1,302	"
			교통정보제보접수	33	28	"	1,417	1,417	"
			소계	101	94				
136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연구직	4	4	07.12	1,900~2,200	1,950~2,250	58
			기능직	3	3	07.10	1,500~1,670	1,500~1,670	"
			소계	7	7				
137	중기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영업지원	0	9	07.07, '08.01	1,300~2,500	1,300~2,500	58
			홈쇼핑MD	1	2	"	2,000~2,700	2,000~2,700	"
			사무보조	0	5	07.10	2,050	2,050	"
			간호	1	1	08.01	1,709	1,709	"
			소계	2	17				

* 일부기관의 경우 '08년도부터 전환자 처우를 개선할 계획으로 '07년에 전환결과 제출시의 처우개선 임금액과 '08년도 예산집행시 실제 지급 임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4. 국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 정규직 전환내용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총계	51,205	49,515				
1	서울시교육청	과학실험보조 (발명보조)	449	445	07.09 ~07.10	914~1,250	969~1,316	55 ~57
		교무보조	347	339	"	914~2,500	969~2,500	"
		구육성회 (학부모회직원)	1,246	1,197	"	800~4,250	800~4,250	"
		급식사무보조	1	1	"	697~727	697~727	55
		사서	36	36	07.10	1,353	1,435	57
		사서 (구청지원및좋은학교)	0	1	"	818	818	55
		수련지도사	30	28	"	1,285	1,435	57
		실습보조	29	29	07.09 ~07.10	914	969	55 ~57
		영양사	52	47	"	1,353	1,435	"
		유치원교육보조	33	33	07.10	914	969	"
		전문상담원	9	6	07.09 ~07.10	1,417	1,435	55
		전산보조	237	229	"	959	969	55 ~57
		조리사	466	472	"	855	907	"
		조리원	2,142	2,112	"	814	864	"
		통학차량보조	27	26	"	643~1,071	643~1,071	55
		특수교육보조	83	76	"	818	969	55 ~57
		소계	5,187	5,077				
2	부산시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288	279	07.10	914	974	55 ~57
		교무보조원	377	363	"	1,213	1,292	55 ~57
		교육업무보조	62	77	07.10	914~1,213	993~1,292	55 ~5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구육성회직원	248	223	"	1,213~3,579	1,282~3,692	"
		기숙사 생활지도원	1	1	"	1,115	1,149	57
		사감	6	4	"	1,119~2,300	1209~2,433	"
		사무보조원	56	57	"	700~1,707	750~1,885	55 ~57
		영양사	129	127	"	1,353	1,441	"
		유치원교육보조	27	23	"	1,213	1,292	55 ~57
		전산보조원	136	136	"	800~1,213	805~1,292	"
		조리사	209	203	"	855~1,213	867~1,292	"
		조리종사원	1,425	1,364	"	814~1,213	867~1,292	"
		청소원	1	1	"	1,213	1,292	57
		통학차량보조	8	5	"	914~1,001	964~1,063	"
		특수교육보조원	77	74	"	914~1,213	973~1,213	55 ~57
		소계	**3,050**	**2,937**				
3	대구시교육청	과학실험보조 (발명보조)	231	218	07.09 ~07.10	914~1,213	969~1,287	55 ~57
		교무보조	167	164	"	914~1,213	969~1,287	"
		교육업무보조	2	2	07.10	914~1,213	969~1,287	57
		구육성회 (학부모회직원)	139	137	"	1,213~2,570	1,287~2,827	"
		사감	4	4	"	1,204	1,287	"
		사무,행정보조	103	101	"	914~1,263	969~1,287	"
		사서	2	2	07.09 ~07.10	1,353	1,435	"
		사서보조	5	4	07.10	914~1,353	969~1,435	"
		실습보조	2	2	"	1,213	1,287	"
		안내요원	1	1	"	1,213	1,287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영양사	98	89	07.09 ~07.10	1,353	1,435	57
		전산보조	186	180	"	959	1,018	55 ~57
		조리보조	1,420	1,417	"	814	864	"
		조리사	62	62	07.10	855	907	"
		특수교육보조	45	46	07.09 ~07.10	914	969	57
		소계	2,467	2,429				
4	인천시교육청	과학실험보조	223	216	07.09 ~07.10	914	973	55 ~57
		교무보조	65	62	"	914~1,144	973~1,144	57
		교육업무보조	9	8	"	1,213	1,292	"
		구육성회	177	170	07.09 ~07.12	914~2,443	973~2,602	"
		당직전담(경비원)	4	3	07.10	955~1,193	1,017~1,271	"
		사무(행정)보조	57	59	07.09 ~07.10	1,031~1,262	1,096~1,344	55 ~57
		사서	20	9	07.10	1,353	1,441	57
		실습보조	1	1	"	914	973	"
		안내도우미	6	6	"	1,213	1,292	"
		영양사	63	60	07.09 ~07.10	1,353	1,441	"
		유치원교육보조	44	29	07.10	447	476	"
		전산보조	53	44	"	914	973	"
		조리원	1,347	1,285	07.09 ~07.10	814	867	55 ~57
		통학차량보조	8	8	07.10	914	973	57
		특수교육보조	69	68	07.09 ~07.10	914	973	"
		평생교육사	6	6	07.10	1,353	1,441	"
		소계	2,152	2,034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5	광주시교육청	과학실험보조 (발명보조)	125	118	07.10	588~1,632	623~1,730	55 ~57
		교무보조원	129	120	"	847~1,932	898~2,048	57
		교육업무보조	5	6	"	997~1,213	1,057~1,286	"
		구육성회직원	106	109	"	1,000~2,679	1,020~2,733	"
		사무행정보조	15	7	"	1,150~2,000	1,173~2,040	"
		사서	67	76	"	812~2,155	861~2,284	"
		사서보조	104	84	"	812~2,155	861~2,284	55 ~57
		시설관리보조	1	0	-	-	-	-
		영상보조	1	0	-	-	-	-
		영양사	57	56	07.10	1,000~2,197	1,060~2,328	57
		조리사	116	117	"	656~2,287	696~2,425	55 ~57
		조리원	958	942	"	625~1,600	665~1,696	"
		청소년지도사	1	0	-	-	-	-
		청소원	1	1	07.10	650	826	57
		통학차량보조	10	10	"	1,029~1,100	1,091~1,166	"
		특수교육보조	0	31	"	1,150~2,000	1,219~2,120	"
		평생교육사	1	1	"	1,000~1,500	1,060~1,590	"
		소계	1,697	1,678				
6	대전시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46	48	07.10	735~1,300	786~1,391	55 ~57
		교무보조원	69	66	07.10	877~2,287	938~2,447	55 ~57
		교육업무보조	1	0	-	-	-	-
		구육성회 (학부모회직원)	98	94	07.09 ~07.10	913~2,450	940~2,524	55 ~57
		사무.행정보조	120	120	07.09 ~07.10	863~2,821	923~2,906	55 ~58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사서	1	2	07.10	1,353	1,448	55
		사서보조	7	9	"	749~1,353	801~1,448	55 ~57
		실습보조	4	4	"	914~952	978~1,019	"
		안내원	1	0	-	-	-	-
		영양사	53	54	07.09 ~07.10	870~2,061	931~2,205	55 ~57
		유치원교육보조	11	16	07.10	690~880	690~880	"
		유치원업무종사원	12	17	"	814~1,090	814~1,090	"
		유치원종일제보조	1	3	"	196~1,138	196~1,138	"
		전산보조	77	83	07.09 ~07.10	863~1,513	923~1,619	"
		조리사	37	33	07.10	785~1,293	840~1,384	"
		조리원	1,078	1,091	07.09 ~07.10	651~1,445	697~1,546	"
		특수교육보조	9	17	07.10	188~1,241	188~1,241	"
		소계	**1,625**	**1,657**				
7	울산시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94	94	07.10	800~1,500	832~1,560	55 ~57
		교무보조원	117	118	"	909~1,862	949~1,936	"
		구육성회직원	100	101	"	1,000~2,288	1,040~2,388	57
		급식보조원	54	53	"	319~1,661	332~1,727	"
		사무보조원	2	2	"	1,200	1,250	"
		영양사	78	73	"	1,000~2,065	1,040~2,198	55 ~57
		전산보조원	84	80	"	800~1,508	857~1,600	57
		조리사	90	88	"	700~1,089	750~1,240	"
		조리종사원	1,006	987	"	669~1,700	696~1,760	55 ~57
		특수교육보조원	26	26	"	800~1,500	832~1,560	5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1,651	1,622				
8	경기도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624	610	07.10 ~07.11	914	980	55 ~60
		교무보조원	517	494	07.10 ~07.12	914~1,214	980~1,302	50 ~59
		교육업무보조	11	11	07.10	914~1,214	980~1,302	55 ~57
		구육성회직원	722	681	07.10 ~08.01	915~2,960	915~2,960	50 ~59
		급식보조원	68	51	07.10	254~814	270~814	55 ~65
		당직전담원	41	14	"	595~1,599	595~1,696	57 ~69
		사감	3	3	"	1,129~1,525	1,129~1,750	55 ~57
		사무보조원	749	724	07.10 ~07.11	1,214	1,302	50 ~60
		사서	402	385	"	1,353	1,451	52 ~60
		실습보조원	2	2	07.10	1,213	1,264	57
		영양사	457	426	07.10 ~07.11	1,353	1,451	50 ~60
		운전원	8	8	07.10	800~1,672	802~1,772	57
		재산관리원	7	5	"	1,213~2,080	1,249~2,080	"
		전산보조원	1	0	-	-	-	-
		조리종사원	7,830	7,382	07.10 ~07.11	814~1,100	818~1,100	50 ~61
		조무원	3	3	07.10	1,213~2,110	1,264~2,159	57 ~59
		청소원	92	76	"	300~1,213	300~1,273	52 ~68
		통학차량보조	16	14	"	800~1,180	800~1,218	53 ~57
		특수교육보조원	110	100	"	914	980	"
		소계	11,663	10,989				
9	강원도교육청	과학실험보조	195	187	07.10	850~1,266	905~1,349	57
		교무보조	92	87	"	914~1,802	973~1,919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구 육성회직	97	93	07.10	1,260~2,400	1,291~2,460	57
		급식사무보조	34	30	"	814~1,664	867~1,772	"
		기숙사 사감	4	4	"	650~1,411	692~1,502	"
		사무보조	28	27	"	1,144~2,514	1,218~2,677	"
		영양사	77	73	"	1,353~1,726	1,441~1,838	"
		유아방교육보조	1	1	"	1,263	1,345	"
		유치원교육보조	3	3	"	1,213~1,263	1,292~1,345	"
		전산보조	88	79	"	914~1,353	973~1,441	"
		조리사	338	331	"	798~1,446	849~1,540	"
		조리종사원	1,004	962	"	556~1,490	592~1,587	"
		통학차량안내원	10	10	"	601~750	640~799	"
		특수교육보조	9	8	"	947~1,084	1,008~1,154	"
		소계	**1,980**	**1,895**				
10	**충북교육청**	간호조무사	2	2	07.09 ~07.10	1,213	1,298	57
		과학보조	123	121	"	864~1,811	924~1,938	55 ~57
		교무보조	278	281	"	814~1,908	855~2,042	"
		구육성회	99	99	"	1,213~1,998	1,249~2,112	"
		급식사무보조	71	70	"	814~1,214	871~1,299	"
		난방원	1	1	"	1,216	1,301	57
		사무보조	12	13	"	914~1,678	963~1,795	"
		사서	19	19	07.10	908~1,699	972~1,818	"
		사서보조	46	46	07.09 ~07.10	914~1,353	978~1,448	55 ~57
		수련지도원	1	1	07.10	1,353	1,448	5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승하차보조	3	3	07.09 ~07.10	914	978	"
		안내원	5	5	07.09	1,213	1,298	"
		안전관리자	8	7	"	1,213	1,298	"
		영양사	56	54	07.09 ~07.10	1,070~1,913	1,145~2,047	"
		유아종일반	58	0	-	-	-	-
		전산보조	77	75	07.09 ~07.10	913~1,541	977~1,649	55 ~57
		조리사	67	67	"	852~1,395	912~1,483	57
		조리원	1,463	1,399	"	686~1,333	734~1,426	55 ~57
		청소원	3	3	07.09	1,213	1,298	57
		특수교육보조	31	32	07.09 ~07.10	914~1,213	978~1,298	"
		평생교육사	1	1	07.10	1,047	1,120	"
		소계	**2,424**	**2,299**				
11	**충남교육청**	과학실험보조	128	128	07.09 ~07.10	780~1,079	780~1,079	53 ~57
		교무보조	76	78	"	899~2,020	899~2,020	57
		구육성회	244	238	"	1500~2,111	1500~2,111	55 ~57
		급식사무보조	10	8	"	407~1,487	407~1,487	57
		사무보조	9	12	"	900~1,250	900~1,250	"
		영양사	93	88	"	600~2,065	600~2,065	"
		전산보조	80	75	"	913~1,400	913~1,400	53 ~57
		조리사	89	89	"	627~1,900	627~1,900	55 ~57
		조리원	1,787	1,749	"	496~1,600	496~1,600	53 ~57
		통학차량보조	12	13	07.10	913~914	913~914	57
		특수교육보조	52	47	07.09 ~07.10	899~1,400	899~1,400	55 ~5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2,580	2,525				
12	전북교육청	과학실험보조	9	8	07.10	914	969	57
		교육업무보조	552	536	"	914	969	"
		구학부모회직	84	83	"	1,123~1,730	1,123~1,730	"
		급식보조	2	2	"	362~814	362~814	"
		기숙사생활지도원	2	2	"	1,100~2,000	1,100~2,000	"
		매점관리	1	1	"	708	708	"
		사무보조원	18	19	"	899~1,481	934~1,540	"
		사서	11	11	"	1,353	1,435	"
		영양사	82	80	"	1,353	1,435	"
		유치원업무보조	22	20	"	320~957	320~957	"
		전산보조	1	1	"	855	906	"
		조리사	274	288	"	752~1,538	782~1,600	"
		조리원	1,354	1,340	"	461~1,487	479~1,746	"
		청소원	2	2	"	570~851	570~851	"
		통학차량보조	1	1	"	688	688	"
		특수교육보조	63	66	"	822	887	"
		소계	2,478	2,460				
13	전남교육청	과학실험보조	25	25	07.10	914~960	951~998	57
		교무보조	554	537	"	814~951	847~1,668	55~57
		구육성회	155	153	"	960~2,931	979~2,931	57
		매점관리	1	1	"	1,213	1,213	"
		사감	2	2	"	1,636	1,636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사무보조	13	13	07.10	914~1,310	952~1,362	57
		사서보조	8	8	"	914~1,353	951~1,408	"
		시설관리보조	2	2	"	800~1,325	800~1,325	"
		영양사	161	155	"	1,229~2,426	1,278~2,523	55~57
		전산보조	212	205	"	864~1,784	899~1,855	57
		조리사	344	342	"	748~2,199	778~2,287	55~57
		조리원	1,648	1,604	"	407~1,822	423~1,895	50~57
		청소원	1	1	"	800~900	800~900	57
		특수교육보조	36	35	"	893~947	929~985	55~57
		PC정비원	5	3	"	1,100~1,300	1,144~1,352	57
		소계	**3,167**	**3,086**				
14	**경북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183	180	07.10	851~1,583	885~1,646	55~58
		교무보조원	567	555	07.09~07.10	893~1,921	929~1,998	55~58
		구육성회직원	128	129	07.10	1,457~2,269	1,515~2,360	55~57
		사감	10	9	"	920~1,609	957~1,674	57
		사무보조원	72	67	"	914~1,556	951~1,618	55~57
		실습보조원	3	2	"	1,090~1,266	1,134~1,317	57
		영양사	57	54	"	964~1,817	1,004~1,889	55~57
		유치원교육보조	17	14	"	861~1,434	895~1,492	57
		전산보조원	29	28	"	893~1,351	929~1,405	"
		조리사	281	285	"	833~1,689	867~1,757	55~58
		조리원	2,410	2,411	07.09~07.10	606~1,945	630~2,022	"
		통학차량보조	6	6	07.10	1,063~1,064	1,105~1,135	5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특수교육보조원	56	53	"	792~1,485	824~1,544	55~57
		소계	**3,819**	**3,793**				
15	경남교육청	과학실험보조(발명보조)	189	182	07.10	853~2,260	911~2,413	55~57
		교무보조	242	241	"	750~1,632	801~1,742	55~57
		교육업무보조	8	12	"	913~1,290	975~1,377	"
		구육성회	169	172	"	914~2,800	976~2,990	"
		급식사무보조	5	3	"	914~1,450	976~1,548	"
		기숙사생활지도원	0	4	"	902~1,415	963~1,511	57
		사무(행정)보조	100	110	"	814~2,090	869~2,232	55~57
		사서보조	1	3	"	997~1,500	1,064~1,602	57
		영양사	152	153	"	1,127~2,300	1,203~2,456	55~57
		전산보조	73	71	"	914~1,791	976~1,912	"
		조리사	236	262	"	676~2,164	721~2,311	"
		조리원	2,291	2,272	"	478~1,570	510~1,676	"
		특수교육보조	111	125	"	814~2,269	869~2,423	"
		소계	**3,577**	**3,610**				
1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66	66	07.09~07.10	809~1,032	841~1,073	57
		교무보조원	1	0	-	-	-	-
		사무보조원	28	31	07.09~07.10	804~2,031	836~2,112	57
		사서보조	2	1	07.09	914	951	"
		영양사	23	20	07.09~07.10	1,353~1,624	1,407~1,689	"
		전산보조원	4	3	"	804~994	836~1,034	"
		조리보조원	67	58	"	814~980	847~1,019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조리사	102	104	07.09 ~07.10	855~1,029	880~1,070	57
		특수교육보조원	16	14	"	914	951	"
		소계	309	297				
17	강원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사무행정보조	2	2	07.09	1,400~2,100	1,400~2,100	55
		시설관리(보조)	1	1	"	1,400~2,100	1,400~2,100	"
		소계	3	3				
18	경북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사무보조	0	2	07.09	1,610~2,623	1,702~2,623	57
		사무행정보조	1	1	"	1,213	1,263	"
		구육성회	2	0	-	-	-	-
		과학실험보조	1	1	07.09	914	952	57
		시설관리(보조)	1	1	"	1,213	1,263	"
		영양사	1	1	"	1,353~2,162	1409~2,162	"
		조리사	1	1	"	1,314~1,895	1361~1,895	"
		조리원	6	6	"	1,080~1,409	1125~1,409	"
		소계	13	13				
19	경북대사범대 부설중학교	사무보조	0	1	07.09	2,289	2,391	57
		사무행정보조	1	1	"	1,213	1,263	"
		구육성회	2	0	-	-	-	-
		전임코치	1	0	-	-	-	-
		조리원	6	5	07.09	814	849	57
		소계	10	7				
20	경북대사범대 부설초등학교	사무행정보조	0	2	07.10	1,113	1,113	57
		조리사	0	1	"	855	855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조리원	0	5	07.10	814	814	57
		청소원	0	1	"	584	584	"
		소계	0	9				
21	경상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사무행정보조	3	3	07.10	1,864~2,048	1,879~2,063	57
		소계	3	3				
22	경상대사범대 부설중학교	구육성회	2	2	07.10	2,176~2,258	2,362~2,384	57
		과학실험보조	1	1	"	1,213	1,318	"
		소계	3	3				
23	경인교대부설초	과학실험보조	1	1	07.09	914	962	57
		조리원	1	2	"	814~855	855~857	"
		소계	2	3				
24	공주교대부설초	사무행정보조	1	1	07.09	1,100~1,200	1,100~1,200	57
		과학실험보조	1	1	"	850~914	850~914	"
		조리원	6	5	"	763~814	763~814	"
		소계	8	7				
25	공주대사범대 부설중고등학교	사무보조원	0	4	07.10	1,806~2,087	2,087~2,106	57
		구육성회	4	0	-	-	-	-
		영양사	1	1	07.10	1,354	1,654	57
		조리사	2	2	"	1,211	1,511	55
		조리원	3	3	"	1,154	1,454	"
		기숙사생활지도원	3	0	-	-	-	-
		소계	13	10				
26	광주교대 광주부설초	과학실험보조	1	1	07.10	914	914	5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조리사	1	1	07.10	855	855	57
		조리원	5	5	"	407~814	407~814	"
		소계	7	7				
27	광주교대 목포부설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	1	1	07.10	914	914	57
		조리사	1	1	"	855	855	"
		조리원	3	3	"	815	815	"
		소계	5	5				
28	구미전자 공업고등학교	조리원	5	5	07.10	814~1,555	814~1,555	57
		소계	5	5				
29	국악고등학교	교무보조	2	2	07.10	1,191~1,328	1,419	57
		조리원	6	6	"	1,210~1,256	1,419	"
		교육업무보조	1	1	"	1,359	1,419	"
		방호원	1	1	"	1,330	1,419	"
		매점관리	1	1	"	762	906	"
		소계	11	11				
30	대구교대 대구부설초등학교	사무행정보조	1	1	07.09	1,213	1,213	57
		과학실험보조	1	1	"	914	914	"
		조리원	2	2	"	814	814	"
		소계	4	4				
31	대구교대 안동부설초등학교	사무행정보조	1	1	07.09	1,213	1,213	57
		교무보조	1	1	"	1,213	1,213	"
		조리사	1	1	"	907	907	"
		조리원	4	4	"	799	799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7	7				
32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	전산보조	1	1	07.10	960	960	57
		조리사	1	1	"	855	855	"
		조리원	3	3	"	815	815	"
		소계	5	5				
33	부산기계공고	교무보조	1	1	07.10	1,000	1,000	57
		소계	1	1				
34	부산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구육성회	4	4	07.10	2,500~3,000	2,500~3,000	57
		소계	4	4				
35	부산해사고등학교	교무보조	1	1	07.10	800~1,000	800~1,000	57
		소계	1	1				
36	서울교대부설초	과학실험보조	1	1	07.10	910~1,100	910~1,100	57
		조리원	2	2	"	810~860	810~860	"
		소계	3	3				
37	서울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위생원	0	1	07.10	1,930	1,930	55
		사무원	0	1	"	1,485	1,485	"
		구육성회	2	0	-	-	-	-
		교무보조	1	1	07.10	917	917	55
		소계	3	3				
38	서울사대부설여중	과학실험보조	1	1	07.09	1,000~1,500	1,000~1,500	58
		사서보조	1	1	"	1,000~1,500	1,000~1,500	"
		소계	2	2				
39	서울사대부중	교무보조	1	1	07.09	900	1,045	5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1	1				
40	서울대사범대 부설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	1	1	07.09	914	914	57
		조리사	1	1	"	855	855	"
		조리원	3	3	"	814	814	"
		소계	5	5				
41	인천해사고등학교	사무보조	0	1	07.10	1,679~2,967	1,679~2,967	55
		구육성회	1	0	-	-	-	-
		조리원	1	1	07.10	967~1,545	967~1,545	55
		소계	2	2				
42	전남대사대부고	구육성회	3	3	07.10	1,240~1,731	1,413~1,855	57
		소계	3	3				
43	전남대사대부중	교무보조	1	0	-	-	-	-
		구육성회	2	3	07.10	1,256~1,586	1,414~1,711	57
		소계	3	3				
44	전북기계 공업고등학교	조리원	6	6	07.10	1,070~1,323	1,070~1,323	55
		소계	6	6				
45	전북대사대부고	사무보조원	0	1	07.10	1,850	1,865	57
		구육성회	1	0	-	-	-	-
		영양사	1	1	07.10	1,353	1,353	57
		조리사	1	1	"	960	960	"
		조리원	3	3	"	914	914	"
		소계	6	6				
46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	사무.행정보조	1	1	07.09	1,200~1,300	1,200~1,300	5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과학실험보조(발명보조)	1	1	07.09	910~920	910~920	57
		조리사	1	0	-	-	-	-
		조리원	3	4	07.09	810~850	810~850	57
		소계	6	6				
47	전주교대 전주부설초등학교	사무행정보조	1	1	07.10	1,296	1,296	57
		과학실험보조	1	1	"	956	956	"
		조리사	1	1	"	892	892	"
		소계	3	3				
48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사무행정보조	1	1	07.09	1,266	1,342	57
		과학실험보조	1	1	"	947	1,004	"
		조리원	0	3	"	851	902	"
		조리사	3	0	-	-	-	-
		소계	5	5				
49	제주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조리사	2	2	07.10	1,210~1,310	1,210~1,310	57
		소계	2	2				
50	제주대사범대 부설중학교	과학실험보조	1	1	07.10	914	960	57
		조리사	1	1	"	815~855	859~897	"
		사무행정보조	3	0	-	-	-	-
		소계	5	2				
51	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조리사	1	1	07.10	854	854	57
		조리원	4	4	"	814	814	"
		과학실험보조	1	1	"	1,032	1,032	"
		소계	6	6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52	청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급식사무보조	1	1	07.10	1,497	1,554	57
		사서보조	1	1	"	1,497	1,554	"
		과학실험보조	1	1	"	1,126	1,169	"
		조리사	1	1	"	1,181	1,226	"
		조리원	7	7	"	1,126	1,169	"
		소계	11	11				
53	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	1	1	07.09	910~930	910~930	57
		조리사	1	1	"	850~880	850~880	"
		조리원	4	4	"	800~830	800~830	"
		소계	6	6				
54	충북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구육성회	1	1	07.10	1,259~1,738	1,259~1,738	57
		사무보조원	0	1	"	1,213~1,243	1,213~1,243	"
		소계	1	2				
55	충북대사범대 부설중학교	사무행정보조	1	1	07.10	1,292~1,712	1,292~1,712	57
		교무보조	1	1	"	1,242~1,662	1,242~1,662	"
		과학실험보조	1	1	"	970	970	"
		소계	3	3				
56	한국교원대 부설미호중학교	사무보조원	0	1	07.10	1,759	1,759	57
		사무보조원	0	1	"	1,213	1,213	"
		구육성회	1	0	-	-	-	-
		교무보조	1	0	-	-	-	-
		사서	1	1	07.10	1,353	1,353	57
		소계	3	3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57	한국교원대 부설초등학교	사무행정보조	1	1	07.10	1,000~1,500	1,000~1,500	58
		과학실험보조	1	1	"	900~1,000	900~1,000	"
		조리원	8	8	"	800~1,000	800~1,000	"
		소계	10	10				
58	한국우진학교	스포츠센터안내	0	1	07.10	1,900	1,900	55
		소계	0	1				
59	강릉대	경비원	2	2	07.09	1,098	1,098	57
		미화원	1	1	"	1,155	1,200	55
		판매원	3	3	"	1,040~1,082	1,040~1,082	"
		영양사	1	1	"	1,374	1,374	"
		시설관리원	1	1	"	1,040	1,040	"
		사무원	14	14	"	884~1,910	914~1,910	55 ~57
		조리종사원	9	9	"	1,032~1,550	1,082~1,550	55
		소계	31	31				
60	강원대	사무원	6	5	07.10	1,300~2,026	1,300~2,283	55
		시설관리원	6	5	"	1,385~1,617	1,385~1,617	55 /57
		미화원	5	5	"	711~1,062	902~1,062	"
		조리종사원	35	32	"	888~1,515	965~1,520	55
		소계	52	47				
61	경북대	행정보조원	33	30	07.10, 07.11	1,150~3,607	1,200~3,757	55
		냉난방원	2	2	07.11	1,379	1,439	"
		조리원	62	62	07.10	1,056~2,900	1,096~3,020	"
		청소원	12	12	"	934 ~1,041	974~1,091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경비원	6	6	07.10	1,352	1,412	55
		전산보조원	6	5	"	1,300~2,300	1,350~2,400	"
		전산연구원	1	0	-	-	-	-
		기자재운용원	4	4	07.10	1,280~1,815	1,330~1,895	55
		시설관리원	4	4	"	1,100~2,700	1,140~2,810	"
		학예연구사	2	2	"	1,190	1,240	"
		배관공	2	2	07.10	1,630	1,700	55
		자동제어계장공	1	0	-	-	-	-
		조경원	4	4	07.11	1,537~2,030	1,597~2,120	55
		실험기자재관리원	3	0	-	-	-	-
		집필원	2	2	07.11	1,630~1,920	1,680~1,980	55
		판매원	19	19	07.10	1,200~2,400	1,250~2,500	"
		소계	163	154				
62	경상대	경비원	1	1	07.09	1,990	2,050	57
		미화원	3	3	"	1,000~1,200	1,030~1,300	"
		사무원	14	12	"	1,000~1,800	1,050~1,900	"
		사서직	5	5	"	1,200	1,260	"
		전문직	1	1	"	3,000	3,090	"
		조리종사원	4	4	"	1,050	1,100	"
		통신원	2	2	"	1,500~2,600	1,550~2,680	"
		소계	30	28				
63	공주대	사무보조원	5	4	07.09	1,300~1,520	1,606-1,826	57
		관리원	2	1	"	1,400~2,200	1,400~2,200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청소원	1	1	07.09	1,200~1,900	1,200~1,900	57
		조리원	30	30	"	1,060~1,269	1,060~1,269	55
		전산보조원	1	1	"	2,200	2,300	57
		소계	39	37				
64	군산대	사감	3	3	08.03	1,678~2,034	1,787~2,147	58
		경비원	2	2	"	1,551	1,613	"
		조리종사원	9	8	"	1,481~1,547	1,552~1,615	"
		미화원	5	5	"	1,490	1,545	"
		소계 ('08.3월 전환)	19	18				
65	금오공대	사무보조원	11	11	07.11	1,000~2,000	1,000~2,000	52
		기계원	1	1	"	1,000~2,000	1,000~2,000	59
		소계	12	12				
66	목포대	사무보조원	13	10	07.10	1,050~2,050	1,250~2,100	55
		영양사.조리원	10	8	"	1,045~1,550	1,100~1,600	"
		시설관리원	7	7	"	1,050~1,900	1,250~1,950	"
		연구원	1	0	-	-	-	-
		소계	31	25				
67	목포해양대	사무원	11	10	07.10	1,200~1,500	1,200~1,500	57
		조리종사원	4	3	"	1,200~1,300	1,200~1,300	"
		소계	15	13				
68	부경대	사무원	5	5	08.01	1,408~3,518	1,491~3,802	57
		소계	5	5				
69	부산대	간호사	1	1	07.09	1,587	1,587	5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농장관리자	1	0	-	-	-	-
		기술원	4	4	08.01	2,245~3,195	2,245~3,195	57
		난방원	1	1	07.09	1,587	1,587	"
		사무원	32	30	07.09(18명) 08.01(12명)	975~1,917	1,120~2,250	"
		영선원	1	1	07.09	1,470	1,470	"
		영양사	1	1	"	1,587	1,587	"
		전기원	1	1	07.09	1,587	1,587	57
		전산원	8	3	07.09 08.01(1명)	1,633~1,545	1,633~1,545	"
		조리종사원	1	0	-	-	-	-
		통역원	2	1	07.09	1,843	1,843	57
		홍보원/홍보전문위원	1	1	07.09	1,909	1,909	57
		소계 (일부 '08.1월 전환)	54	44				
70	서울대	가축관리원	1	2	08.01	1,048~1,103	1,087~1,170	55
		기자재관리원	13	3	07.12 ~08.01	1,545~2,641	1,716~3,000	55 ~57
		냉난방원	1	1	08.03	1,614	1,614	58
		미화원	7	4	07.07 ~07.11	650~1,480	650~1,480	55
		사무원	100	52	07.12 ~08.03	1,000~3,300	1,100~3,477	55 ~58
		사서직	6	6	08.01, 08.03	1,050~1,191	1,190~1,480	55
		연구원	26	10	08.03	1,575~4,794	1,689~4,937	55 ~60
		전문직	6	2	07.12	1,600~3,100	1,600~3,100	55
		전산원	2	2	07.11 ~08.1	1,000~1,550	1,000~1,550	"
		보육교사	2	2	07.07	1,680~1,920	1,680~1,920	"
		시설관리원	2	2	"	1,200~1,300	1,200~1,300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운동강사	7	7	07.07	1,800~3,300	1,800~3,300	55
		안내원	1	1	"	1,600~2,900	1,600~2,900	"
		조리종사원	12	0	-	-	-	-
		소계 (일부 전환절차 추진중)	186	94				
71	순천대	시설관리원	4	0	-	-	-	-
		미화원	4	0	-	-	-	-
		사무원	5	4	07.10	1,200~2,000	1,200~2,000	57
		연구원	3	3	"	1,200~1,720	1,200~1,720	"
		조리종사원	17	0	-	-	-	-
		소계	33	7				
72	안동대	연구원	3	2	07.10. 1명, '08년	800~2,050	866~2,166	57
		소계	3	2				
73	전남대	간호조무사	1	1	07.10	1,241	1,731	57
		경비원	2	2	07.03	1,310~1,360	1,310~1,360	58
		관리원	9	6	07.03, 07.06, 07.10	900~2,010	950~2,010	57 ~58
		난방원	3	3	07.03, 07.10	1,960~2,100	1,960~2,100	57 ~58
		사무원	10	13	"	1,450~2,300	1,450~2,300	57
		위생원	2	1	07.10	1,830	1,830	55
		전문요원	6	3	07.10	2,069~2,835	2,109~2,835	"
		전임연구원	2	0	-	-	-	-
		조리원	14	14	07.03, 07.10	1,397~1,890	1,490~1,890	55 ~57
		판매원	10	11	07.06	1,128~1,259	1,181~1,259	58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59	54				
74	전북대	미화원	2	0	-	-	-	-
		사무보조원	15	9	07.11	900~1,892	1,260~1,858	57
		시설관리원	8	1	"	1,166	1,491	"
		실습장관리원	2	2	"	1,102	1,357	"
		연구원	1	0	-	-	-	-
		전문직	1	0	-	-	-	-
		전산원	1	0	-	-	-	-
		조리종사원	14	2	07.11	930	1,280~1,625	57
		주차관리원	12	2	"	1,188	1,420	"
		기자재관리원	0	1	"	1,800	1,482	"
		소계	56	17				
75	제주대	간호사	1	1	07.10	1,870	1,900	57
		관리보조원	1	1	"	1,106	1,156	58
		사무원	1	1	07.09	1,395	1,440	57
		판매원	1	1	07.10	1,096	1,146	58
		소계	4	4				
76	창원대	사무원	7	7	07.12	1,250~2,030	1,567~1,999	57
		기술원	1	1	"	1,977	1,977	"
		전문직	3	3	"	900~1,800	1,567~1,819	"
		소계	11	11				
77	충남대	사무원	63	55	07.12	1,180~1,900	1,215~1,850	55
		연구원	1	1	"	1,600	1,800	50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영양사	2	2	07.12	1,190~1,210	1,240~1,260	58
		미화원	3	3	"	1,150~1,200	1,150~1,255	55
		전문직	2	4	"	2,173~2,600	1,860	"
		전산원	3	3	"	1,100~1,300	1,265	"
		조리종사원	24	24	"	916~961	1,016~1,061	53
		소계	98	92				
78	충북대	예비군연대장	1	1	07.03	2,651	2,651	57
		참모요원	1	1	"	2,163	2,163	54
		상담원	1	1	"	1,890	1,890	"
		홈페이지관리원	2	1	07.03	1,575~1,050	1,575~1,050	54
		학예원	1	1	"	1,890	1,890	"
		사무원	7	6	07.11	1,200~1,743	1,200~1,743	55
		교통관리원	2	2	07.03	1,500~1,800	1,500~1,800	"
		경노무직	10	7	07.12	962~988	962~988	54
		조리원	23	17	07.11	900~1,200	900~1,200	50
		분석요원	1	0	-	-	-	-
		위생원	5	4	07.11	1,000~1,200	1,000~1,200	50
		방호원	3	3	"	1,300~1,500	1,300~1,500	55
		국제교육원전임교수	2	0	-	-	-	-
		소계	59	44				
79	한국교원대	사무원	20	18	07.09	1,314~1,540	1,314~1,540	57
		조경원	2	2	"	1,335~1,484	1,335~1,484	"
		조리종사원	37	34	"	1,003~2,130	1,003~2,130	"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경비원	14	12	07.09	1,656~2,139	1,656~2,139	57
		미화원	9	5	"	1,325~1,551	1,325~1,551	"
		폐기물처리원	2	2	"	1,314	1,314	"
		냉난방원	2	2	"	1,657~1,667	1,657~1,667	"
		통신원	1	0	-	-	-	-
		판매원	1	1	07.09	1,382	1,382	57
		자판기관리원	2	2	"	1,559~1,643	1,559~1,643	"
		영양사	1	1	"	1,256	1,256	"
		소계	91	79				
80	한국체육대	사무원	3	4	08.01	1,700~1,800	1,753~1,853	57
		미화원	2	2	"	2,300~2,400	2,335~2,435	"
		사감	1	0	-	-	-	-
		예비군연대장	1	0	-	-	-	-
		운전원	1	1	08.01	1,800~1,900	1,818~1,918	57
		소계 ('08.1월 전환)	8	7				
81	한국해양대	전산원	1	1	07.10	1,323	1,494	57
		통신원	1	1	"	1,682	1,853	"
		환경원	1	1	"	1,682	1,853	"
		경비원	1	1	"	1,500	1,526	"
		조리원	8	7	"	1,100~1,300	1,100~1,464	"
		판매원	3	3	"	1,100	1,100	47
		사무원	6	6	"	1,293~1,630	1,464~1,788	57
		소계	21	20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82	한국방송통신대	사무.행정보조	1	1	08.10	2,030	3,000	57
		전산보조	2	2	07.11	2,498	2,410	58
		전문상담원	7	7	"	1,692	1,823	"
		강의제작	19	18	"	1,675~2,587	1,864~2,401	"
		평생교육프로그램	1	1	"	1,925	1,940	"
		소계 (1명 '08년 전환)	30	29				
83	상주대	연구원	1	1	07.10	1,733	1,733	57
		소계	1	1				
84	서울산업대	행정보조원	8	8	07.10	1,394~1,809	1,535~1,833	55
		전산원	2	2	"	2,156~2,535	2,250~2,666	"
		소계	10	10				
85	진주산업대	사무원	10	9	07.09	1,190~1,731	1,190~1,731	57
		조리종사원	4	1	"	1,204	1,204	"
		미화원	1	1	"	836	836	"
		연구원	5	5	"	1,059~1,373	1,059~1,373	"
		소계	20	16				
86	한경대	판매원	2	2	07.10	1,297~1,571	1,337~1,571	57
		소계	2	2				
87	한밭대	사무원	3	3	07.10	1,267~2,131	1,317~2,211	55
		연구원	4	4	"	2,370~2,950	2,410~3,020	"
		원격교육운영요원	1	1	"	2,850	2,915	"
		소계	8	8				
88	경인교대	사무보조	10	10	07.10	1,700~2,600	1,700-2,600	57

연번	기관명	직종명	정규직 전환			전환자 처우(천원, 월평균)		정년(세)
			전환 대상	전환 인원	전환 시기	전환전	전환후	
		소계	10	10				
89	부산교대	미전환 (결정유보)	11	0				
90	서울교대	행정사무보조	2	1	07.10	1,750	1,750	57
		소계	2	1				
91	제주교대	경비원	1	1	07.10	1,081	1,108	57
		소계	1	1				
92	청주교대	예비군중대장	1	1	07.10	1,650	1,650	57
		경비원	2	0	-	-	-	-
		사무원	1	1	07.10	1,416	1,516	57
		소계	4	2				

* 일부기관의 경우 '08년도부터 전환자 처우를 개선할 계획으로 '07년에 전환결과 제출시의 처우개선 임금액과 '08년도 예산집행시 실제 지급 임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부록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6.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227

Ⅱ. 비정규직 사용 실태 ····· 229

Ⅲ. 그간의 대책 평가 ····· 238

Ⅳ. 개선방안 ····· 240

1.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241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 246
3.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감독 강화 ····· 249
4.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 정립 ····· 250

Ⅴ. 추진전략 및 일정 ····· 254

< 붙임 1 > 공공부문의 범위 및 비정규직 개념 ····· 260

< 붙임 2 >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차별판단의 예 ····· 26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외환위기 이후,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및 경비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 비정규직수 : 364만명('01.8월) → 548만명('05.8월) **184만명, 50.5% 증가**

- 원칙없는 사용,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 위법·탈법적 활용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 이에 대해 그간 정부는 특별근로감독,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

- 특히, '04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공공부문 주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상당히 기여

- 그러나, 원칙없는 사용관행, 원·하청구조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 외주·용역에서의 근로조건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

○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도록

※ 국회, 언론, 노동계 뿐 아니라 **대통령님**께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

-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2. 추진경과

가. 2004년도 대책 수립

○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지시('03.3.19)

○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03.4～10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04.5.18, 국무회의)

나. 2006년도 종합대책 수립

○ 대통령님께서 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지시('06.4.11, 제73차 국정과제회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방향" 확정('06.4.26,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 대책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 및 이를 보좌하는 "실무위원회" 및 "실무T/F" 설치・운영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계획" 확정('06.5.4, 제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 "비정규직 실태조사계획" 확정('06.5.15, 제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위원회) 및 실태조사(7월초)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책안 마련을 위한 관련 단체 의견수렴('06.5～7월)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15개 기관으로부터 10회 의견수렴 실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검토('06.6～8월)

※ 실무T/F(4회), 실무위원회(3회), 추진위원회(3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2회), 당정협의(2회)

Ⅱ. 비정규직 사용 실태

1. 실태조사 개요

가. 전수조사

○ 조사대상 : 총 10,198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54, 지자체 250, 교육기관 9,493, 공기업·산하기관 401(중앙행정기관 소관 307, 지자체 소관 94)

※ 공공부문의 범위 및 비정규직 개념 : 붙임1

○ 조사기간 : ’06.3～7월초

○ 조사내용 : 비정규직 인원, 유형, 임금수준 및 기타 근로조건 등

○ 조사방법 :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조사표에 의해 서면조사

나. 심층사례조사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기업·산하기관 등에서 총 68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10, 지자체 10, 공기업·산하기관 29, 국·공립학교 19

○ 조사기간 : ’06.5.17～6.9(3주간)

○ 조사내용 : 비정규직의 남용·차별 여부, 인력관리체계 및 용역·외주 실태 등

○ 조사방법 : 노동부, 관계부처, 노동연구원 등으로 총 53명의 조사반을 구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면접조사

2. 비정규직 사용 실태

가. 비정규직 규모(전수조사 결과)

□ 총 괄

○ 조사대상기관 총인원 1,554천명 중 비정규직은 312천명

- 비정규직 비율은 20.1%로서 전체(민간부문 포함) 비정규직 비율 36.6%('05.8월)보다 낮은 수준

-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1.1%, 지자체 18.8%, 교육부문 21.3%, 공기업·산하기관 26.3%임

○ '03년에 비해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1.3%p 증가**

※ 조사대상을 '03년과 같은 기준으로 할 경우 0.9%p 증가

- 중앙행정기관(2.0%p) 및 공기업·산하기관(1.9%p)은 다소 감소
- 지자체(4.2%p) 및 교육부문(0.5%p)은 다소 증가

< 비정규직 인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2003년 실태조사				2006년 실태조사			
	총인원 (A=B+C)	정규직 (B)	비정규직 (C)	비율 (C/A)	총인원 (a=b+c)	정규직 (b)	비정규직 (c)	비율 (c/a)
합 계	**1,249,151**	**1,014,836**	**234,315**	**18.8**	**1,553,704 (1,464,575)**	**1,242,038 (1,176,330)**	**311,666 (288,245)**	**20.1 (19.7)**
중앙행정기관	272,605	237,004	35,601	13.1	273,715	243,408	30,307	11.1
지자체	305,089	260,442	44,647	14.6	383,801	311,564	72,237	18.8
교육부문	476,358	377,281	99,077	20.8	527,804	415,411	112,393	21.3
공기업·산하기관	195,099	140,109	54,990	28.2	368,384 (279,255)	271,655 (205,947)	96,729 (73,308)	26.3 (26.3)

※ ( )는 '03년과 동일기준 '경영혁신대상 기관(224개)' 조사 결과, '03년은 202개 기관
※ 정규직은 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의미

○ '03년 대비 총인원 증가는 **공기업·산하기관 조사대상 확대** (202개→401개), **학교증설**(초중고 8,803개→9,198개)이 주된 요인

❑ 유형 및 성별 구성

○ 비정규직 유형은 기간제(70.0%)가 대부분이며, 용역(19.4%), 시간제(8.8%), 파견(1.4%)은 비중이 낮음

○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63.2%

- 용역은 여성보다 남성, 기간제는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정규직의 유형 및 성별 구성 >

(단위 : 명, %)

구분	총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기타	파견	용역
전체	311,666 (100.0)	218,324 (70.0)	27,391 (8.8)	1,129 (0.4)	4,395 (1.4)	60,427 (19.4)
남성	114,807 (100.0)	67,117 (58.5)	10,776 (9.4)	694 (0.6)	1,713 (1.5)	34,507 (30.0)
여성	196,859 (100.0)	151,207 (76.8)	16,615 (8.4)	435 (0.2)	2,682 (1.4)	25,920 (13.2)

❑ 주요 직종

○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전업시간강사 등 10개 직종이 전체 비정규직의 46.6%를 차지

< 비정규직의 주요 직종 >

(단위 : 명, %)

직종	인원	비율	직종	인원	비율
비정규직 총계	**311,666**	**100.0**	**10개 직종 합계**	**145,136**	**46.6**
▪ 조리종사원	44,166	14.2	▪ 청소종사원	7,994	2.6
▪ 사무보조원	40,196	12.9	▪ 시간제 경마직	6,253	2.0
▪ 전업시간강사	11,441	3.7	▪ 시설관리종사원	6,065	1.9
▪ 산불감시원	10,301	3.3	▪ 시험연구보조원	5,759	1.8
▪ 경비원	8,032	2.6	▪ 환경미화원	4,929	1.6

○ 동일 직종이라도 사용기관, 고용형태, 처우수준, 근로시간 등이 다양하여 직종별 대책 마련은 곤란

※ 조리종사원의 예 :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산하기관 등으로 사용기관이 다양하고, 일용, 시간제, 기간제, 파견, 용역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하며, 임금수준도 월 70~170만원으로 다양

나. 비정규직 사용분야(이하 심층사례조사 결과)

○ 비정규직 사용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

- 비정규직은 일시업무보다는 **상시업무**(59.9%)에 많이 사용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조정할 필요

- 비정규직은 핵심업무보다 주변업무(77.3%), 전문업무보다 단순업무(83.6%)에 주로 사용

<비정규직 담당업무의 성격>

(단위 : 개, 명, %)

구분	합계	업무 지속성		설립 목적 관련성		업무 전문성	
		상시	일시	핵심	주변	전문	단순
인원 (비율)	54,256 (100.0)	32,492 (59.9)	21,764 (40.1)	12,328 (22.7)	41,928 (77.3)	8,909 (16.4)	45,347 (83.6)
직종 (비율)	370 (100.0)	320 (86.5)	50 (13.5)	98 (26.5)	272 (73.5)	122 (33.0)	248 (67.0)

자료 : 68개 공공기관 사례조사 결과, '06.5월, 노동부

○ ·예산만 있으면 우선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정규직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

※ ·일부 지자체는 현재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감축해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고, 특히 행정보조인력은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관리자, 직장협의회)

※ ·C기관 사례 : 시설증축을 위해 일시 채용한 인력을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그대로 존치

다. 비정규직 처우

□ 개 요

○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 부가급부, 후생복지제도 수혜 등에서 **격차**가 **존재**

※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법상 차별금지규정에 위반될 개연성도 있음

□ 임금수준

○ 비정규직은 유사·동종 업무담당 **정규직의 85.1%**(3년차 또는 1년차 기준 평균)

▲ 정 규 직 : 월 1,977,623원 ▲ 비정규직 : 월 1,682,348원

※ 조사대상 68개 기관 중 유사·동종 정규직이 있는 33개 기관, 68개 직종별 각 1명의 임금수준을 단순 평균한 것임

○ 일부 단순노무인력은 절대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가 있고, 동일직종이라도 기관별로 임금격차가 큼

▲ 환경미화원 : B기관 월68만원(주35시간) / O기관 월300만원(주40시간)
▲ 사무보조원 : S기관 월63만원(주40시간) / S기관 월158만원(주42시간)
▲ 주차단속원 : W기관 월62만원(주40시간) / N기관 월155만원(주42시간)

○ 성과급 및 상여금 적용 차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수입 격차를 크게 하는 요인

▲ 성과급 : 전체 68(100%) / 비정규직 20(29.4%) / 정규직 65(95.6%)
▲ 상여금 : 전체 68(100%) / 비정규직 34(50.0%) / 정규직 58(85.3%)

□ 임금형태

○ 정규직은 호봉제, 비정규직은 고정급형태를 채택하여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격차 확대

❑ 복지후생

○ 퇴직금, 사회보험 가입 등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휴게실·주차장 이용 등 예산부담이 없는 분야는 격차가 크지 않음

○ 학자금, 주택자금, 맞춤형복지, 교통비 등 예산이 필요한 분야는 격차가 큼

<복지후생제도 등 수혜정도>

(단위 : 개소, %)

복지후생제도	정규직(A)		비정규직(B)		격차(B-A)	
	적용기관	비율	적용기관	비율	적용기관	비율
퇴직금(공무원연금 포함)	68	100.0	68	100.0	0	0.0
사회보험 가입	68	100.0	68	100.0	0	0.0
정기건강진단	68	100.0	68	100.0	0	0.0
생리휴가	68	100.0	68	100.0	0	0.0
산전후휴가	68	100.0	68	100.0	0	0.0
휴게실 이용	61	89.7	61	89.7	0	0.0
주차장 이용	67	98.5	67	98.5	0	0.0
작업복·장비지원	**62**	**91.2**	**60**	**88.2**	**△2**	**△3.0**
육아휴직	**68**	**100.0**	**61**	**89.7**	**△7**	**△10.3**
의료시설 이용지원	**36**	**52.9**	**28**	**41.2**	**△8**	**△11.7**
육아비 지원	**34**	**50.0**	**22**	**32.4**	**△12**	**△17.6**
병가	**68**	**100.0**	**54**	**79.4**	**△14**	**△20.6**
교통비 지원	**60**	**88.2**	**35**	**51.5**	**△25**	**△36.7**
맞춤형 복지 적용	**57**	**83.8**	**17**	**25.0**	**△40**	**△58.8**
주택자금 지원	**47**	**69.1**	**6**	**8.8**	**△41**	**△60.3**
학자금 지원	**66**	**97.1**	**13**	**19.1**	**△53**	**△78.0**

주) 일부 직종이 적용되는 경우도 적용으로 분류
자료 : 68개 공공기관 사례조사 결과, '06.5월, 노동부

라.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

○ 정규직 인사관리는 전담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 **비정규직**은 **사용부서별로 관리**하여 방만한 사용 우려

※ S기관 사례 : 비정규직 채용·관리가 교수별로 이루어져 기관 전체의 비정규직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인원파악 조차 곤란

○ 평가시스템, 직무훈련 등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미흡

<비정규직 인사관리 실태>

(단위 : 개소, %)

전체	채용·관리부서			평가시스템		승진시스템	
	인사부서	사용부서	혼재	있음	없음	있음	없음
68 (100.0)	26 (38.2)	24 (35.3)	18 (26.5)	25 (36.8)	43 (63.2)	6 (8.8)	62 (91.2)

자료 : 68개 공공기관 사례조사 결과, '06.5월, 노동부

○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정규직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은 극소수

마. 외주화 실태

□ 현 황

○ **외주업무**는 시설·장비관리(25.1%), 청소(20.2%), 경비(11.8%) 등이 대부분

< 외주화 대상 업무의 내용 >

(단위 : 명, %)

합계	시설·장비관리	청소	경비	기타
26,643 (100.0)	6,696 (25.1)	5,375 (20.2)	3,137 (11.8)	11,435 (42.9)

자료 : 68개 공공기관 사례조사 결과, '06.5월, 노동부

○ 특히 공공성이 큰 업무는 서비스중단 우려 때문에 외주업체의 부정행위, 단가인상 등에 적극 대처 못하는 경우도 있음

※ A기관 사례 : 용역업체 S기업이 약 4년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임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서비스 중단 우려로 용역계약을 계속 유지

□ 외주화 사유

○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70.6%), 관리의 용이성(14.7%) 등을 주된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 비용절감에 대한 사전 정밀조사, 사후 성과측정 없이 막연히 외주화가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음

※ H기관, S기관 사례 등 : 정부지침에 의해 일괄적으로 외주화 실시

※ D기관 사례 : 외주화시 업무방식 효율화 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급여삭감(연봉 4,000→2,000여만원)을 통해 경비절감

< 외주화(간접고용) **사유 >**

(단위 : 개소, %)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	관리의 용이성	정규직 부담경감	정원확보 곤란	전문인력 · 시설활용	일시적 업무증가
48 (70.6)	10 (14.7)	10 (14.7)	6 (8.8)	8 (11.8)	1 (1.5)

주) 1개 기관에서 복수로 답한 경우 모두 계산
자료 : 68개 공공기관 사례조사 결과, ’06.5월, 노동부

- 외주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10%), 기업이윤(5%내외), 관리비(5%내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수행시보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외주업체 선정방법

○ 대부분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의하여 경쟁입찰 또는 (단체)수의계약 방법을 활용

○ **경쟁입찰의 경우** 합리적인 사업운영자가 도태되고 저임금 의존 사업자만이 생존하게 할 우려

- **최저가낙찰방식**은 근로자 처우수준 악화 요인으로 작용

※ '06.5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일원화

- **적격심사낙찰방식**은 낙찰하한률*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의한 경우 각각 달라 **형평성**이 **문제**

* 국가계약법 기준(조달청) : 87.7%
* 지방자치단체계약법 기준(행자부) : 지자체가 행자부와 협의·결정

○ **수의계약의 경우** 예산단가가 낮아서 부가가치세, 법정부담금, 이윤 등을 제외하면, 용역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

		<월 용역비>	<실제 월 임금>
▲ M기관	:	125 만원	80 만원
▲ S기관	:	105 만원	82 만원
▲ S기관	:	88 만원	60 만원

□ 외주업체 사후관리

○ '04년 대책에서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후에 관리하지 않는 실정

- 특히, 일부 외주계약서에는 위법·부당한 내용도 포함

▲ K기관 : 연장근무수당을 연차수당에 갈음
▲ S기관, B기관, N기관 : 용역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용역업무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 용역계약 해지

Ⅲ. 그간의 대책 평가

▣ '04.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한계도 존재

1. 주요직종별 대책

○ 주요직종 비정규직(139천명)에 대해 정규직제 반영*, 무기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 등으로 고용안정을 추진하였으나

* 근로복지공단 계약직(705명), 상시위탁집배원(2,590명)
** 직업상담원, 지자체 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 상시위탁집배원(정규직제 미반영 인력 전체)

- 학교회계직, 정부부처 사무보조원 및 지자체 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 일부(1,429명)는 여전히 1년 단위 기간제로 사용

○ 처우개선은 학교회계직과 같이 일부직종에 한해 추진되고 여타 비정규직은 차별개선 대책이 미흡

2. 용역·예산제도 개선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용역제도를 개선(「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개정) 하였으나

-「외주화 통제장치」, 「외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근로조건 악화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이 미흡

○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법정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개선(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 하였으나

- 예산편성단계에서 이들 예산을 반영하는 조치는 부족

3. 예방점검

○ 노동관계법 위반 예방점검(851개소), 인사담당자 교육(758명), 사회보험 적용누락 일제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나,

※ 노동관계법 위반 1,171건 적발 및 시정조치

※ 고용・산재보험 12천여개 사업장, 건강보험 5,445개 사업장, 국민연금 129개 사업장 점검 및 가입누락자 가입조치

- 점검・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제도화 실적은 미흡하여 일회적인 대책에 그칠 가능성

4. 관리평가체계 마련

○ '05년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합리적 운영(법적의무・권장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 지자체 및 공기업・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미실시

○ 주요직종 이외의 여타직종(95천명)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대책마련을 일임하여 관리가 소홀할 우려

○ '03년 실태조사는 현장방문조사 등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06년도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

Ⅳ.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

○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인**을 **해소**

○ 행정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방지**

○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립**하고, 외주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

비정규직의 남용방지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1.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기간제 사용원칙 마련, 불합리한 사용 억제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개선

가. 기간제 근로 사용관행 개선

□ 기간제 근로자 사용원칙

○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 토록 함

- 다만, 명백하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 인정

< 예외적인 사유 >

①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②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예: 교수임용 방식, 전문의 채용방식)로 인해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③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조교·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⑥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⑦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⑧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무기계약 근로자로 단계적 전환

○ 각 기관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원칙'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여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요구

- 다만,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 공립학교 및 시군구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에 요구

* 계획서 포함 내용 : 정규직 전환의 타당성, 전환규모, 전환시기, 전환시 처우수준, 별도 직렬신설 등 전환방법, 소요예산 등

○ 각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은 각 기관이 요구한 내용을 검토·조정한 후

- **행자부**(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기획예산처** 및 **교육부**(시·도 교육청)와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후술, 이하 추진위원회)」에 보고

※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별·직종별 형평성, 통일성,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부처 등과의 사전협의를 적극 활용

○「추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시도 교육청의 **계획서,** 행자부·기획예산처·교육부 **협의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여부 등을 결정

○ 각 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추진

- 전환되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무조건 기존의 정규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님)

나. 인력 · 예산 관리체계 확립

□ 인원관리

○ 직제 미반영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는 행자부가 별도로 인원관리(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인건비 예산과목 명칭(비정규직보수, 102목)도 고용형태에 걸맞게 개정 추진 검토

○ 1년미만 기간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관리부서**」를 지정, **주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 인사관리

○ **비정규직** 채용, 성과평가, 복무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여 각 기관이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지도

- 표준안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다수임을 감안,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금지, 모성보호** 등의 내용 포함

○ **임금피크제 도입, 단시간근로 활용, 평가** 및 **성과급제 확대 · 적용** 등 **정규직**의 **경직성 완화방안** 적극 **강구**

□ 예산관리

○ 부서단위로 편성 · 집행*되는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관리부서**」에서 사전협의 등 **통합 관리**(상시적 파견 · 용역도 준용)

* 사례 : N부처는 일반회계 45개 사업(세세항), 기금 · 특별회계를 포함할 경우 60여개 사업에 분산 편성

○ **총액인건비제** 적용대상을 1년이상 기간제로 확대 검토

-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여 정규직 인건비 통제에 따른 비정규직 사용 경향을 완화(현행 총액인건비 적용 범위 : 붙임4)

다. 비정규직 실태조사 정례화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시도 교육청별로 「비정규직 총괄부서」를 지정,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사용억제 유도(년 1회)

- 이를 위해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등 조사체계 정비

※ 조사대상기관 범위, 조사대상 비정규직 범위, 조사기준일, 조사표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위원회가 마련

○ 실태조사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년1회)

- 비정규직 증가규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증가사유, 증가내역, 비정규직 사용의 타당성 등에 대해 특별조사

라. 교육훈련 참여기회 보장

○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기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적극 제공

- 다만, 예상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에 대해 장기훈련 제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비정규직에 대해 연간 일정시간 내·외부 직무훈련 참여 적극 유도

- 각 기관별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추진실적을 확인

- 소요재원은 각 기관의 자체예산 이외에 고용보험기금(사업자 훈련지원)을 적극 활용

마.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우선 고용

○ 정규직 채용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경력인정 등으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

※ 관련법령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 비정규법 시행시 법위반 방지를 위해 **차별 요인**을 **정비**하고, 민간부문을 감안하여 **처우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가. 차별금지 위반소지 개선

○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판단원칙**은 '06.11월 노동위원회 원칙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06.12월까지 마련**

- 각 기관은 이 원칙에 따라 비정규법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별 시정

○ 각 기관은 차별관련 법안의 취지와 외국의 운영사례(붙임5)를 참고하여 차별시정을 미리 준비

<비정규법안의 차별금지 관련 내용>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법안 제8조①)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법안 제8조②)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파견법개정안 제21조①)
-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기간제법안 제2조 및 파견법개정안 제2조)

나. 차별 관련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 각 기관별로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운영

○ 차별금지제도 정착시까지 각 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

-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대응방안 마련

다.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 별도 편성

○ 비정규직에 대해 보수 외에 퇴직금, 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

- 이를 통해 퇴직금·법정수당 미지급, 사회보험 가입누락 및 임금저하 방지

- 각 부처에서 '07년도 예산안에 반영토록 노력(향후 예산 반영실적 점검)

※ 위법·탈법 및 저임금 사례

▲ 851개 공공기관 지도·점검에서 임금·수당 및 퇴직금 관련 법위반 247건 적발('04년 및 '05년)

▲ 일부기관은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고, 일정기간 후 재고용

▲ 퇴직금, 법정수당, 사회보험료 등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일용임금 예산만 편성된 경우 일용임금에서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

라. 저임금 근로자 임금수준 인상

○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임금수준이 유사·동종 민간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방식 개선**

- 현행 : 예산편성시점에서 유관기관이 기 조사·발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 편성(예산집행시점까지 2년간 임금인상률 미반영)

※ 예산편성단가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 발표기관

▲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 엔지니어링부문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기타부문 : 한국물가협회

- 개선 : 시중노임단가 인상률을 감안, 예산 집행시점까지의 적정 임금인상률 반영

<예산상 노임단가와 시중 노임단가 비교>

(단위 : 원 / 일)

직종	예산상 노임단가('05년)	시중 노임단가('05.9월)
사무보조	28,855	33,504
전산요원	37,017	40,951
보일러공	39,247	43,494

※ '05년도 예산상 노임단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03.9월 기준으로 조사·발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편성

3. 위법 ·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 · 감독 강화

▣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 · 점검, 노무관리교육 등을 추진

가. 노동관계법 준수, 사회보험 가입 등 지도 · 점검

○ 노동관계법 준수, **모성보호제도** 활용 및 사회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지도 · 점검

○ 지도 · 점검 분석결과는 지침서 형태로 제작 · 배포하여 각 기관이 비정규직 사용과정에 적극 활용

나. 노무관리 교육체계 구축

○ 공공기관별로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인력 · 예산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충

※ 전담교육기관

▲ 중앙행정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지방자치단체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 공기업 · 산하기관 → 한국노동교육원
▲ 국 · 공립학교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결과 비공무원에 대한 노무관리 곤란 사유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39.6% (설문조사결과 : 붙임6)

다.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일원화

○ 비정규직은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으므로 퇴직연금제 채택을 적극 지도하고, 그 실적을 정기점검

4.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 정립

▣ 외주화 대상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공공성이 강한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주화
▣ 외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근로조건 보호장치 마련

가. 외주화 대상업무 선정원칙

○ 기관의 업무를 '주변업무(또는 부가업무)'와 '핵심업무(또는 본연의 업무)'로 구분하고,

-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되 시장임금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외주화는 불인정

-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

※ 핵심업무 여부는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등을 감안하여 판단

<예외적인 사유>

① 고도의 전문기술, 고가의 시설·장비 또는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을 필요로 하여 자체충당이 곤란한 업무

② 상시적인 업무이기는 하나 단시간 또는 간헐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해당인력을 직접 고용할 경우 지나치게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③ 외주화에 의해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명백한 경우

④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임금 등의 처우를 시장수준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⑤ 공공부문의 생산성, 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과 경쟁시킬 목적으로 병렬적으로 설치된 유사·동일업무 부서(조직) 중 일부를 외주화 하는 경우

⑥ 기타 외주화의 필요성 또는 직접수행의 불합리성이 명백한 경우

○ 외주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

① 관련 분야의 외부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 외주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없고, 외주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공급이 어려울 때 다른 업체로 신속한 대체가 가능할 것

② 외주화에 의해 공익성 또는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 낮을 것

③ 해당기관의 여타업무와의 업무분리가 용이하고, 업무수행에 일정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

나. 외주화 타당성 여부 일제 점검

○ 각 기관은 외주업무를 일제 점검하고 '**외주화 대상업무 선정 원칙**'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검토서 포함 내용 : 외주화 현황, 외주방법 지속여부 및 그 근거, 직접 수행으로 전환시 방법 및 시기 등

※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 공립학교 및 교육청은 동 대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정비

○ 중앙행정기관은 각 기관의 검토서를 검토·조정한 후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 보고

※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별 형평성, 통일성,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부처 등과의 사전협의를 적극 활용

○ 「추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정안,**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 **협의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직접수행 여부 등 결정

○ 각 기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심의결과에 따라 단계적 조치

다. 단순노무 외주업무 예산·입찰방식 등 개선

☐ 예산편성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 **예산편성**시 적용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수준으로 조정(집행시점까지의 적정 임금인상률 반영)

☐ 외주업체 선정

○ 입찰과정에서 적용하는 **예정가격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중기협이 조사·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 「예정가격작성준칙」('05.6월)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05.12월) 개정 완료, 공기업·산하기관 개선 유도 필요

※ 시중노임단가 및 최저임금액 비교

▲ 보통인부 노임단가('06) : 33,504원/일(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
▲ 최저임금액('06) : 24,800원/일

○ 지자체의 일반용역 낙찰하한률이 국가계약법 수준(조달청 기준 87.7%)이 되도록 협의(행자부)

□ 외주업체 사후관리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재경부 적격심사기준 개정 추진, 지자체는 권고)

<적격심사 평가항목 추가 사항>

①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별도 책정・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

④ 일정기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없을 것

- 이들 **적격심사 평가항목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운영실적을 보아가며 검토

○ 1년이상 용역계약에 대해 당초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인상분**을 **반영**하는 방안 강구

- 현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특례**를 **설정**하는 방안 추진

Ⅴ. 추진전략 및 일정

1. 추진전략

가. 지속적인 대책추진을 위해 "총리훈령" 제정

○ 추진체계 구성, 기능, 권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책이 상시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화

나. 추진체계 구축

□ 최종 의사결정기구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총리주재)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노동부장관이 주재하고 관련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한시적(3년)으로 운영

※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별도 운영

- 주요 기능

▲ 세부 추진일정계획 심의·확정
▲ 정규직 전환대상 및 외주업무의 직접수행 전환대상 결정(일제점검시)
▲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그에 따른 대책 보완
▲ 기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주요사항 논의

- 참석범위는 중앙행정기관(차관급), 광역지자체(행정부시장·부지사), 시·도교육청(부교육감)으로 하되, 국조실·재경부·교육부·행자부·기획예산처·노동부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여타기관은 관련안건이 있을시 참석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단**(이하 추진단)」 **설치・운영**

○ 관계부처 인력으로 구성되는 한시기구(3년)로 설치

- 고위공무원(노동부)을 단장으로 하고,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산하기관, 교육기관 등을 담당하는 2~3개의 팀을 설치

※ 팀장 및 팀원은 노동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직원 등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소요인원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결정

□ 「**비정규직 총괄부서**」 **지정・운영**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시・도 교육청별로 각각 지정・운영하고, 각 소속・산하기관의 대책추진을 총괄 지휘・감독

▲ 중앙행정기관 : 소속·산하기관(공기업 포함, 교육부는 국립학교 포함)
▲ 광역지자체 : 시·군·구 및 소속·산하기관(지방공기업 포함)
▲ 시·도 교육청 : 시·군·구 교육청(소속 공립학교 포함)

다. 추진실적 평가・보상체계 도입

○ 적극적인 대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체계 도입**・시행

-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부처평가에 반영

-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차등 재정지원

-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부 교부금 또는 보조금 지원 규모 산정시 반영

- **공기업・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반영(기관장 평가지표에 반영)

라. 추진과제를 코드화하여 정기점검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행자부) 및 시·도 교육청(교육부)은 **세부 추진일정계획**을 마련하여 '06.9월말까지 추진단에 제출

- 추진단은 제출한 **세부 추진일정계획**이 **동 대책**에 **부합**하는지를 **검토·보완**하고,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

○ 이후 세부 추진과제를 코드화하여 추진단에서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점검** 및 **평가**

-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관계부처 협의 또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보완

2. 주요 추진일정

가. '06.8월(정부예산안 확정전) 까지 조치할 사항

○ 단순노무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조정('07년 예산안)

○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 별도편성('07년 예산안)

○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조정('07년 예산안)

○ 총리훈령 제정

○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

나. '06년말 까지 조치할 사항

○ 세부 추진일정계획 마련·제출

○ 비정규직 인력·예산관리체계 확립

○ 비정규직 실태조사체계 정비

○ 차별관련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판단원칙 마련

다. '07년 조치할 사항

○ 기간제 근로자중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 확정

○ 외주업무 일제점검 및 직접수행으로 전환대상 확정

○ 전담교육기관 지정 및 인력·교육프로그램 확충

○ 외주업체 선정관련 입찰제도 개선

3. 세부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담당부처
1. 비정규직 사용원칙 정립		
1-1. 기간제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 각 기관별 검토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시도교육청 검토 ○ 행자부 협의 ○ 기획처 협의 ○「추진위원회」에 심의의뢰 및 최종결정	 '06.9월까지 '06.11월까지 '07.1월까지 '07.3월까지 '07.5월까지	 ▪ 각 기관 ▪ 각 부처 등 ▪ 각 부처 등(행자부) ▪ 각 부처 등(기획처) ▪ 각 부처 등→추진위원회
1-2. 적정한 인력·예산관리 체계 확립 ○ 1년이상 기간제 등 인원관리방안 마련 ○ 예산과목(102목) 명칭 변경 ○ 비정규직 인사관리 표준안 마련	 '06.12월까지 '07.3월까지 '06.12월까지	 ▪ 행자부 ▪ 기획처 ▪ 추진위원회(중앙인사위 협조)
1-3. 총액인건비제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계속	▪ 행자부·기획처·중앙인사위
1-4. 비정규직 실태조사 정례화 ○ 조사대상기관의 범위, 조사대상 비정규직 범위, 조사기준일, 조사표 등 마련 ○ 실태조사 실시	 '06.12월까지 매년	 ▪ 추진단 ▪ 각 부처 등
1-5. 비정규직 직무훈련계획 수립·시행	'07.2월까지	▪ 각 기관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개선		
2-1.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원칙 마련	'06.12월까지	▪ 노동부(노동위원회)
2-2. 차별여부 일제점검 및 시정조치	비정규법 시행이전	▪ 각 기관
2-3. 차별에 대한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차별처우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 비정규직 차별관련 고충사례 정기점검	 '06.12월까지 (계속)	 ▪ 각 기관 ▪ 노동부
2-4.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편성 요구 및 반영	'06.8월까지	▪ 기획처(중앙행정·공기업·산하기관) ▪ 행자부(지자체) ▪ 교육부(교육기관)
2-5. 저임금 근로자 예산 노무단가 인상조정	'06.8월까지	- 상동 -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담당부처
3.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감독		
3-1. 노동관계법 준수, 모성보호제 활용 및 사회보험 가입누락 지도·점검	매년	▪ 노동부 ▪ 복지부(건강보험,국민연금)
3-2. 인사노무담당자 전담교육기관 지정, 인력·예산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07.1월시행	▪ 중앙인사위(중앙공무원교육원) ▪ 행자부(지방혁신인력개발원) ▪ 노동부(노동교육원) ▪ 교육부(교육인적자원연수원)
3-3. 퇴직금제의 퇴직연금제로 일원화 유도	(계속)	▪ 각부처(당해기관·소관 공기업·산하기관) ▪ 행자부(지자체) ▪ 교육부(교육기관)
4.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4-1. 외주화 타당성 일제 점검 ○ 각 기관별 검토 및 중앙행정기관에 요구 ○ 중앙행정기관별 검토 ○ 행자부 협의 ○ 기획처 협의 ○「추진위원회」에 심의의뢰 및 최종결정	 '06.9월까지 '06.11월까지 '07.1월까지 '07.3월까지 '07.5월까지	 ▪ 각 기관 ▪ 각 부처 ▪ 각 부처(행자부) ▪ 각 부처(기획처) ▪ 각 부처→추진위원회
4-2. 단순노무 외주업무 노임단가 인상·조정	'06.8월까지	▪ 기획처(중앙행정·공기업·산하기관) ▪ 행자부(지자체) ▪ 교육부(교육기관)
4-3. 단순노무 외주업체 선정 입찰제도 개선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 노임단가 변경 ○ 낙찰하한률 협의·조정 ○ 적격심사 평가항목 추가 ○ 적격심사 입찰자격 제한 ○ 다년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인상분 반영	 '07.1월부터 '07.1월부터 '06.12월까지 '07.12월까지 '07.3월까지	 ▪ 각 공기업·산하기관 ▪ 행자부 ▪ 재경부·행자부 ▪ 재경부 ▪ 재경부·행자부
5. 추진실적 점검·평가		
5-1. 총리훈령 제정	'06.8월까지	▪ 국조실(노동부 협조)
5-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단 구성	'06.8월까지	
5-3. 추진실적 평가체계 정비	'07년 평가	▪ 국조실(중앙행정기관) ▪ 행자부(지자체) ▪ 교육부(학교) ▪ 기획처(공기업·산하기관)
5-4. 세부 추진일정계획 제출	'06.9월까지	▪ 각 부처 등→추진단
5-5. 추진실적 점검	(계속)	▪ 추진단

※ '각 부처 등'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시·도 교육청을 의미

<붙임1>

공공부문의 범위 및 비정규직 개념

○ 본 대책에서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 학교 및 공기업·산하기관**을 의미

- 공기업·산하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 위탁기관, 자회사 및 재출연기관이 포함

▲ 출자기관 : 정부가 최대 지분을 소유하는 기관
▲ 출연기관 : 법률에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기관
▲ 보조 위탁기관 : 정부지원이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 자회사 : 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 재출연기관 : 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서 정부출연을 받는 기관
▲ 기타 :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관(경영혁신 대상기관)

○ 본 대책의 주된 정책대상은 공공부문 근로자를 ①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인 인력(공무원, 직제에 반영된 인력), ②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규직인 인력, **③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비정규직인 인력**으로 분류할 때

- 노사정위 합의기준상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세번째 집단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함

- 다만, 외주업체 근로자 근로조건을 감안, 외주화 대책에는 일부 노사정위 합의기준상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도 포함

<노사정위 합의기준>

▣ 비정규직은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 ③**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근로자

<붙임2>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차별판단의 예

1. 비정규직 차별금지 적용대상 및 범위

○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관계에 적용됨

※ 다음의 경우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육군·해군·공군·공익근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

▲ 정부 등에 의해 직업훈련, 직업경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자

▲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거나 실무수습·직업훈련 중인 자

○ 내부규정, 행정처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용자의 모든 조치나 급부

2. 비교대상 근로자

○ 차별여부 비교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음. 단, 차별이 일어난 시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됨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와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

○ 동종·유사업무 여부는 인적요소보다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 업무의 동일·유사성을 추정할 수 있는 사례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상 명시적 업무내용이 동일·유사한 경우

▲ 근로계약서상 서로 상이한 직종으로 표기된 경우라도 근로자들을 통상적으로 상호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3. 차별처우의 판단

○ 차별이란 기간제·시간제·파견근로자를 각각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별이 기간제·시간제·파견이라는 고용형태에 따른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요구됨

○ 차별처우는 기업의 형편상 필요에 부합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정당화됨

4. 외국의 판례

판단범위	판 결 내 용
비교대상 근로자	○ 정규직 비서로 근무하다가 회계담당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 후 회계 일자리가 폐지되어 해고되자, 정규직 비서와 해고자 선발기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기 술 · 자격수준	○ 대기 소방수(필요시 활용)는 법정연금제 가입자격이 부인되고 추가 급부가 없고, 질병휴가시 임금지급율이 전일제 소방수보다 불리하여 차별이라고 주장 ⇒ 중심기능은 소방업무지만 전일제 소방수는 상당한 추가적 업무를 수행하고, 채용기준·시용기준 및 훈련을 살펴볼 때 양 그룹 사이에는 기술 및 자격 수준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기각
시간당 임 금	○ 부업으로 시간제 음악강사를 하는 근로자에게 통상 음악강사 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지급 ⇒ 이미 주업으로 생활기초를 위한 재화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인용
특별대부 제 도	○ 능력있고 장기간 근무한 자를 더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종업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특별대부제도를 실시하면서 단시간 근로자를 배제 ⇒ 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
사업장 연금제도	○ 단체협약으로 근로관계가 1년간 존속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업장 차원의 연금제도에서 배제 ⇒ 급부의 목적이 사업에 대한 귀속감의 고취이므로 그 목적 자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배제시킬 수 있음
식 대 청구권	○ 월요일~목요일은 07:30~14:00, 금요일은 07:30~13:30의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전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를 미지급 ⇒ 식대가 근로시간 중에 점심식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단시간근로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로형태라면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를 미지급하는 것은 차별임

부록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

2007. 6. 25.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 진 위 원 회

- 목 차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269
1. 추진배경 ····· 269
2. 추진경과 ····· 269
Ⅱ. 무기계약 전환 ····· 271
1. 무기계약 전환기준 ····· 271
2. 무기계약 전환 검토결과 ····· 272
3. 전환자 인원관리 및 소요예산 ····· 274
4. 전환지침 ····· 275
Ⅲ. 외주화 개선 ····· 277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 277
2. 직접수행 전환 ····· 279
Ⅳ.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시정 ····· 280
1. 저임금근로자 처우개선 ····· 280
2. 차별시정 ····· 280
Ⅴ. 향후 추진계획 ····· 282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06.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

○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 미전환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외주화 타당성 점검」을 추진

2 추진경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확정**('06.8.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제도화 (국무총리훈령 486호, '06.10.4)

○ 실무추진단 발족('06.10.30)

- 교육부·행자부·노동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상설 실무추진단 운영(총15명)

○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 적용 공공기관의 범위, 무기계약 전환 추진일정 등 조정('06.12.18)

-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및 「외주화 타당성 검토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지침을 배포('06.12월초)

- 총 10,714개 기관에 「전환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06.12월)

- 주무부처 및 교육부·행자부·기획처(이하 협의부처)는 각 기관이 제출한 「전환계획서」 등을 검토·협의('07.3~4월)

○ **제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점검 **「검토기준」 확정**('07.4.4)

- 각 기관은 「검토기준」에 따라 「전환계획서 수정안」을 다시 협의부처에 제출('07.4중순 - 5월초)

- 협의부처는 수정된 「전환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서」를 재검토·협의하여 결과를 실무추진단에 제출('07.5월중순)

○ 주요 협의부처 위원 **간담회**('07.5.18, 6.4)를 통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재 추진단 종합 검토회의 개최**(총10회)

○ **제3차 「추진위원회」**를 개최('07.6.25)하여 「무기계약 전환, 외주개선 및 차별시정계획」을 **심의·의결**

[「대책」 적용 대상기관 : 10,714개]

◈ **중앙행정기관 : 57개**

* 대통령 소속기관 및 소속이 없는 독립기관 포함(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중소기업특별위, 국가청렴위,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인권위)

* 감사원, 국정원, 방송위원회는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추진

*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육·해·공군, 총리훈령에서 제외된 지자체 산하기관은 자율추진

◈ **지자체·지방공기업 : 346개**

* 광역지자체 16개, 기초지자체 230개, 지방공기업 100개

◈ **학교·교육행정기관 : 10,041개**

* 공립초중등학교 9,382개, 국립대학 44개, 국립학교 52개, 교육행정기관 563개

◈ **공기업·산하기관 : 270개**

* '06년 기획처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등재된 313개 기관 중 '07년 경영정보공개 대상 기관

Ⅱ 무기계약 전환

1 무기계약 전환기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07.5.31 현재 2년 이상인 자

가. 상시·지속적 업무

○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

○ 성질상 업무의 종료가 예측되는 일시적인 업무와 특정 또는 불특정 시점에만 발생하는 간헐적 업무는 제외

나. '07.5.31일 현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다. 예외 사유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기간제법 제4조 등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전환에서 제외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예: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 사업 종사자 등)
-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육아휴직 대체 인력 등)
- ❑ 조교·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예: 대학조교, 인턴 등)
- ❑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 ❑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예: 전문자격 소지자 등)
- ❑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예: 공공근로 등)
- ❑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예: 사업의 폐지, 업무수행 방식의 변경 등)

2 무기계약 전환 검토결과

○ 대상 공공기관(총 10,714개) **기간제근로자 206,742명** 중 112,582명이 전환 요청되었으며, 이 중 **71,861명을 전환**

※ 이는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34.8%, 각 기관요구 대비 63.8%에 해당

[공공부문별 전환인원]

대상기관	기간제수(A)	전환요청(B)	전 환(C)	전환율(C/A)
중앙부처 (57)	21,912	14,474	6,879	31.4
지자체·지방공기업 (346)	59,923	11,093	6,303	10.5*
학교·교육행정기관 (10,041)	89,757	73,675	51,205	57.0
공기업·산하기관 (270)	35,150	13,340	7,474	21.3
총 계 (10,714)	206,742	112,582	71,861	34.8

* 지자체·지방공기업의 전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력이 '07.6월 현재 44,562명 존재하여 전환요구인원이 적기 때문임

○ 주요 전환대상 직종은 **학교 식당종사자**(44.4%), **행정사무 보조원**(10.3%), **교무·과학실험 보조원**(9.2%) 등임

[주요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인원]

부 문	직 종	인 원	비 율(%)
전체 전환자수		71,861	100%
중앙부처	사무보조원	3,002	4.2
	우편물구분원	1,030	1.4
지자체·지방공기업	시설관리 등 노무종사자	2,430	3.4
	사무보조원	1,973	2.7
학교·교육행정기관	조리원·조리사	31,872	44.4
	학교회계업무 담당자	3,810	5.3
	교무·과학실험 보조원	6,595	9.2
공기업·산하기관	행정·사무보조원	2,421	3.4
	시설관리원	1,712	2.4
총 계		54,845	76.3

○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94,122명) 중 **76.3%**(71,861명) **전환**

[2년 이상 근속자 전환인원]

부문별	2년 이상 기간제수	무기계약 전환	전환율(%)
중앙부처	9,698	6,879	70.9
지자체·지방공기업	12,088	6,303	52.1
학교·교육행정기관	57,461	51,205	89.1
공기업·산하기관	14,875	7,474	50.2
총 계	94,122	71,861	76.3

※ 2년 미만 근속자(112,620명)는 「기간제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환 제외

○ **2년 이상** 근속자 중 **전환 제외된 22,261명**의 주된 제외 사유는 **일시·간헐적 업무**(39.4%), **고령자**(20.7%),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9.4%) 등임

[2년 이상 근속자 전환 제외사유별 인원]

제외사유	인 원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 등	공기업	총계
일시·간헐적 업무	1,587	2,365	1,816	2,997	8,765(39.4%)
휴직·파견 등 대체인력	0	15	31	44	90(0.4%)
조교·수습생 등	129	0	25	118	272(1.2%)
고령자	959	1,390	1,560	692	4,601(20.7%)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	35	49	1,678	325	2,087(9.4%)
복지·실업대책	43	155	12	147	357(1.6%)
업무수행방식 변경 등 기타	66	1,811	1,134	3,078	6,089(27.4%)
총 계	2,819	5,785	6,256	7,401	22,261

3 전환자 인원관리 및 소요예산

가. 전환자 인원관리

○ 무기계약 전환자는 향후 통상적 인력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

- 행정기관(학교 포함)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등 인력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인원관리

- 공기업·산하기관은 **해당기관 정원에 반영**하고 직렬·직급·임금체계 등을 정비

나. 추가 소요예산

○ 추가 소요예산은 **'07년 151억원, '08년 1,306억원**으로 추산

※ 동 예산소요는 '07.10월 일시에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를 개선함에 따라 유사·동종 정규직의 임금수준(예: 교육부문 기능직 10등급 1호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총액 추정치임

[연도별 추가 소요예산(억원, 잠정)]

부 문	'07년	'08년
중앙부처	36	144
지자체·지방공기업	56	221
학교·교육행정기관	17	743
공기업·산하기관	42	198
총 계	151	1,306

※ '07년 예산은 4/4분기(3개월)부터 전환되므로 동기간 소요예산을 산정한 것임

다. 추가 소요예산 확보 방안

○ **중앙부처**의 경우 **'07년**에는 **자체예산 이·전용** 후 부족시 예비비로 충당하고, **'08년**에는 **본예산**에 반영

- **지자체**의 경우 **'07년**에는 **자체예산을 이·전용**하여 활용하고, **'08년**에는 총액인건비 등과 자체예산에 반영

- **학교·교육행정기관**의 경우 **'07년**에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08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체예산**에 반영

-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우 **'07년**에는 **자체예산을 이·전용**하고, **'08년**에는 **본예산**에 반영

4 전환지침

가. 전환 시기 및 대상자 확정

○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무기계약 전환대상 인력에 대하여

- 각 기관은 직급·임금체계 설계, 인사관리규정 마련, **전환대상자 확정** 등 **전환절차**를 **'07.9.30 까지 완료**

- **'07.10월말**까지 **전환실적을 추진위원회에 제출**

※ 전환실적 등을 각 기관평가시 반영하여 점검할 예정

나. 전환 제외자 대책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08.6월 2차 「대책」을 시행하여 전환 추진**

- 2차 대책 시행 전까지 법령·예산 등에 따른 사업의 종료·폐지 등 합리적인 사유 외에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함**

○ 각 기관의 장은 미전환자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고충처리 담당자)를 운영**하고, 미전환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환제외사유 등을 설명

- 다만, 이의제기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은 **협의부처의 검토 및 추진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환여부 결정

Ⅲ 외주화 개선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가. 검토 기준

○ 청소·경비 등 **외주업무**에 대하여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시장임금(예산편성 기준 최근 시중노임단가)보다 불합리하게 낮지 않도록 입찰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

외주근로자의 임금을 불합리하게 낮추는 요인

① 외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가낙찰방식을 적용
②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노임단가에 최근 시중노임단가를 미적용
③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조달청 기준 낙찰하한률 87.7% 미적용)

나. 입찰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

○ 총 277개 기관의 입찰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단순노무 외주업무 등**에 대하여

- **▲최근 시중노임단가**(501개 업무) **및 적격심사제**(94개 업무)**를 적용하고 ▲낙찰하한률을** 조달청 기준으로 **상향 조정**(117개 업무)하도록 **입찰제도 운영방식**을 개선

- '07.7월 이후 새로운 외주계약 체결시부터 적용

※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우 동 조치가 신속히 반영되도록 입찰제도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특별지도

[입찰제도 운영방식 개선 사항]

점검 결과	외주계약수 (기관수)	개선 내용
예정가격 작성시 최근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501 (146)	시중노임단가 적용
적격심사제 미적용(최저가낙찰제 시행)	94 (41)	적격심사제 적용
낙찰하한률이 조달청 기준(87.7%)에 미달	117 (50)	낙찰하한률 상향조정

○ 「**적격심사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9-18, 2006.12.29)에 '06. 8월 대책에 따라 마련된 단순노무 외주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보호조항」** 신설('07.9월까지)

[근로조건 보호조항 주요 내용]

①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임금과 별도로 책정·지급해야 함

③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음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07.9월까지)하여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

※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재경부령)**도 개정하여 **외주근로자 보호 관련 입찰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하도록 조치

2 직접수행 전환

가. 전환 기준

○ 고유(핵심)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외주화 인정

※ 고유(핵심)업무 여부는 각 기관의 판단을 존중

○ 지원(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허용하되 업무수행에 독립성 확보 곤란 등 외주가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직접수행으로 전환

나. 직접수행 전환

○ 총 277개 기관 1,371개 외주업무 중 **14개 기관의 18개 업무*(354명)**를 직접수행으로 전환

* 국정홍보처 방송제작, 서울대 마이크로자료관리, 예술의전당 무대장치 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지계측업무, 전기연구원 시험보조, 지역난방공사 사진촬영 및 관리, 농촌진흥청 가축관리 등

[외주업무 직접수행 전환 현황]

부 문	외 주 업 무			직접수행 전환업무 (근로자)
	합계(근로자)	고유업무(근로자)	지원업무(근로자)	
중앙부처(37)	445 (10,881)	30 (3,566)	415 (7,315)	6 (98)
국립대학(43)	178 (3,189)	1 (1)	177 (3,188)	1 (1)
공기업·산하기관(197)	748 (57,654)	38 (9,363)	710 (48,291)	11 (255)
총 계(277)	1,371 (71,724)	69 (12,930)	1,302 (58,794)	**18 (354)**

- 동 **18개 업무(14개 기관)**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노사협의, 직급 및 임금체계 설계, 인사관리규정 마련 등 절차를 완료하여 **직접수행으로 전환**

Ⅳ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시정

1 저임금근로자 처우개선(既조치 완료)

○ 단순노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편성·집행지침을 개편('07.4월)

- 예산편성시 퇴직금·법정수당·사회보험료를 별도편성하고, 최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함

○ 예산편성·집행지침에 따라 실제 처우개선 여부를 기관평가 등을 통해 확인·점검('07년 하반기)

[저임금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제도 개편 현황]

부 문	조 치 현 황
중앙부처	'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07.1월, 기획처) '07년 예산편성세부지침('06.9.17, '07.4월, 기획처)
지자체·지방공기업	'0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 기준('06.12월 행자부)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06.12.29, 행자부)
공기업·산하기관	'07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06.11.9, 기획처) '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07.2.9, 기획처)

2 차별시정

가. 차별시정계획의 수립·시행

○ 각 공공기관은 차별시정안내서('07.6.7 배포) 등을 참고하여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시정계획을 수립·시행**('07.7~9월말까지)

※ 차별시정계획 수립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수렴 등 협의

○ **'07년 차별시정 소요예산**은 이·전용 등 자체예산을 활용하되 부족분은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비비 요청

- **'08년 차별시정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차별시정계획 수립과 함께 **'08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하도록 추진('07.7~9월말까지)

< 차별시정계획 수립·시행(예시) >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실태파악(인원, 직종, 임금 등)

↓

비정규직 근로자별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비정규직 의견수렴)

↓

임금, 복리후생 등 불합리한 격차를 산출(비정규직 의견수렴)

↓

관련규정 개정, 예산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차별시정계획」수립

↓

「차별시정계획」시행

나. 차별관련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

○ 각 공공기관의 **「차별시정 고충처리담당자」**는 차별 관련 고충 제기 절차(ex 고충처리방 등)를 운영하여 차별을 신속히 시정

다. 홍보자료 배포, 교육 실시

○ 차별시정 관련 외국 사례 자료집* 등을 배포하고 각 기관에 대한 차별시정 교육 실시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7월초 배포할 계획

Ⅴ 향후 추진계획

1. 무기계약 전환 등 실적 점검

○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무기계약 전환, 외주업무 직접 수행 전환 및 입찰제도 개선 실적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07.7~11월)

- 전환추진 실적이 낮거나 노사갈등 등 문제 발생기관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하여 대응방안 마련·조치('07년말)

2. 차별시정계획 수립·시행 지도

○ 추진위원회(추진단)는 차별시정 관련 컨설팅·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 소요예산에 대하여 예산당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각 기관 차별시정계획 수립·시행을 지원('07.7~9월)

○ 차별시정계획 수립, 예산 반영여부를 점검하여 기관평가 등에 반영('07년말)

3. 2차 대책 추진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금번 대책에서 제외된 인력 등에 대하여 '08.6월 2차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부록 4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참고자료

2007. 8

동 안내서는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 시정계획」('07.6, 국무회의)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전환절차 및 인사·노무 관리 안내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무기계약근로자"란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정규직"을 말함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 무 추 진 단

- 목 차 -

Ⅰ.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절차 ····· 287

1. 전환대상자 선정 기준 설정 ····· 287

2. 인원(정원), 인사·노무관리 등 규정 개정 ····· 288

3. 임금 등 근로조건 설계 ····· 288

4. 소요예산의 확보 등 ····· 289

5. 구체적 전환대상자 선정 ····· 289

6.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 289

Ⅱ.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 290

1. 인사·노무관리 주체 ····· 290

2. 근로계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 ····· 290

3. 임금·사회보험 등 ····· 293

4. 복무관리 ····· 294

5. 근무부서 이동, 근무평가, 교육훈련 등 경력관리 ····· 301

6.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사항 ····· 304

붙임 1. 취업규칙 작성 참고자료(예시) ····· 307

Ⅰ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절차

정규직 전환 절차(예시)

1 전환대상자 선정 기준 설정

↓

2 인원(정원), 인사·노무관리 등 규정 마련

↓

3 임금 등 근로조건 설계

↓

4 소요예산의 확보 등

↓

5 구체적 전환대상자 선정

↓

6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1. 전환대상자 선정 기준 설정

○ 지난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07.6.26)된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계획」의 각 기관별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준수하여

- **상시·지속적 업무에 '07.5.31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선정

2. 인원(정원), 인사·노무관리 규정 등 마련

○ 행정기관의 경우 행자부 등에서 확정*한 **민간인 정규직 정원**을 토대로 각 기관별 **"민간인 정규직 인원·인사·노무관리 규정(가칭)"을 훈령 등 내부규정으로 마련**

* 행자부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06.12, 행자부)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별 민간인 정규직 정원을 확정·시달

- 동 규정에 민간인 정규직에 대한 소속 기관별 **인사·노무·교육훈련 사항, 정원표** 등을 포함(취업규칙은 동 규정을 토대로 마련)

※ 학교 등의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민간인 정규직 인원규모 및 인사·노무 등을 기관별로 자체 관리하는 규정(취업규칙 등)을 마련

○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우 전환자를 해당 기관의 정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직제 및 인사·노무관리 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

3. 임금 등 근로조건의 설계

○ 업무, 책임도·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선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함

○ 임금체계의 경우 업무의 종류, 책임도, 난이도 등을 고려한 직무급체계 도입이 가능하며 근로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 설계

4. 소요예산 확보 등

○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소요될 예산 중 '07년 예산(3개월분)은 자체 이·전용하고 '08년 소요는 자구노력 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당국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

< '08년 소요예산 확보 안내 >

❑ 중앙부처 : '08년 소요를 파악하여 '07.8월말까지 기획처와 협의

❑ 지자체 : '08년 소요는 총액인건비 등과 자체예산에 반영

❑ 학교 등 : '08년 소요 파악 후 시도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비특별회계 및 단위학교회계, 대학의 경우 자체회계 또는 예산에 반영

❑ 공기업 등 : '08년 소요 파악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운영비 절감 등 자구노력 후 부족분에 대하여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 예산안에 반영하여 '07.8월말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

*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공기업 등은 '08년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반영 추진

5. 구체적 전환대상자 선정

○ '07.6.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각 기관별 전환 규모를 준수하여 내부 의사결정 절차(ex 이사회 의결 등)등을 거쳐

- 구체적인 정규직(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선정토록 함

6.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 '07.9월말까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정년보장)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07.10.1부터 시행

Ⅱ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1. 인사·노무관리 주체

○ 공공기관의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는 당해 근로자가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함

2. 근로계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

가. 근로계약의 체결

○ 각 공공기관의 장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항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연소자는 7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③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에 관한 사항(10쪽 주휴일 참조)
④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11쪽 연차 유급휴가참조)

나.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각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이란 사업장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으로서 근로자에게 획일적・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사규・인사규정・복무규율 등 명칭에 관계없음)

○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취업규칙에서 정할 사항(근기법 제93조)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⑪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취업규칙 작성 참고자료 <붙임 1>

다. 각종 장부의 보존

○ 공공기관의 장은 근로자 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등을 작성 보존해야함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기재사항(근기법 제41조, 제48조)

◈ **근로자 명부 기재 사항**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②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③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④ 해고, 퇴직, 사망연월일과 그 사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

◈ **임금대장 기재사항**

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② 임금액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④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⑤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⑥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⑦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 근로자 명부 등은 3년간 보존해야 함(근로기준법 제42조)

3년간 보존해야 할 서류 등(근기법 제42조)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또는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각종 승인·인정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 ▲노사서면합의서류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

※ 각종 장부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이 가능함

3. 임금·사회보험 등

가. 임금

○ 업무, 책임도·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선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함

- 임금체계의 경우 업무의 종류, 책임도, 난이도 등을 고려한 직무급체계 도입이 가능

○ 임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임금관련 규정(근로기준법)

◈ 임금의 지급(제43조)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시 지급(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휴업수당(제46조)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임금의 시효(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나. 사회보험 등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퇴직금 관련 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제도의 설정(제8조)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퇴직금의 지급(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의 시효(제10조)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복무관리

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간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0조, 53조)

※ 주 40시간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의 법적 성격

▲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인 경우 법정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나. 연장근로·야간근로

<1>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

▲ 18세 미만자는 1일 1시간, 주 6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제69조)

▲ 임신 중 여성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됨(제74조4항)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제71조)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2> 야간근로

○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 일반여성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제70조)

▲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명시적 청구,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경우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70조)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다. 휴일·휴가

<1> 제공 원칙

○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에게 법정 휴일·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 법정 휴일·휴가 >

종 류		법적 근거	특 징
법정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의무적 부여 · 법정기준 이상이면 노사 자율결정 가능 · 유급휴일·휴가의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함
법정 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73조 근로기준법 제74조	

-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준용하여 추가적으로 약정 휴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2> 주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음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 유급휴일근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고 무급휴일근로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 휴일에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하는 경우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50%의 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함

<3>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①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③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도록 함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공공기관장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됨(근로기준법 제61조)

▲ 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이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요구하고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서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1개월 개근시 1일 발생)는 휴가 사용촉진조치 대상이 아님

<4>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노사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 1월간 소정근로일수(사용자와 근로자가 1개월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함

<5>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 휴가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함

○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 함

※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90일의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

<6> 병가

○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을 참고하도록 함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병가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병가의 유급여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구분	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병가 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 수행능력불능의 경우 ·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병가 기간	· 일반적 병가 : 연60일 이내 · 공무상 병가 : 연180일 이내

<7> 공 가

○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가 공민권 행사 또는 공무를 집행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근로기준법 제10조) 등에는 공가를 부여할 수 있음

- 공가일수는 최소한의 실제 소요 또는 필요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가사유 예시

①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
②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⑥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8> 특별휴가

○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특별휴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 경조사별 특별휴가

구 분	대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기타 특별휴가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휴 가	임신중의 여자	90일
여성보건휴가	임신한 경우 검진	매월 1일(유급)
	매 생리기	매월 1일(무급)
육 아 시 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매일 1시간 (생후 1년까지)

라. 휴직 및 복직

<1> 휴직

○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하여 휴직을 보장하여야 함

휴직관련 법령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

○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1년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 제40조(요양급여) 및 제41조(휴업급여)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해당될 시 근로복지공단 판정에 의해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을 실시하고 있음

<2> 복직

○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복직관련 법령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

○ 제19조(육아휴직)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정년

○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유사·동종의 기존 정규직근로자의 정년을 감안하여 설정

5. 근무부서 이동, 근무평가, 교육훈련 등 경력관리

가. 근무부서의 이동

○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기관의 실정에 맞는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정하여 근무부서를 이동하게 할 수 있음

근무부서 이동 사유(예시)

○ 근로자의 직무수행 발전
○ 출생 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 등

나. 근무실적평가

○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과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 방법, 서식을 정하고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근무부서(기관) 이동, 성과급지급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음

다. 교육훈련

○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발전 등을 위해 기관 실정에 맞는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함

라. 징계

○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사유, 종류, 절차 등 징계제도를 마련·운용할 수 있음

마. 해고

○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게 직장상실의 위험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이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있거나(징계해고)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정리해고)를 말함

○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함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해고관련 규정(근로기준법)

◈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해고의 예고(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사항

가. 노사협의회의 설치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 하여야 함

※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아도 됨

○ **협의회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함

○ **협의회 개최 :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설치)**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회의)**

-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 각 기관의 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예방교육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①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 2)

○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에 관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최저임금법 준수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최저임금법 제6조)

※ '07년도 최저임금 : 시급 3,480원, '08년도 최저임금 : 시급 3,770원

최저임금 산정 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 산정 임금의 범위

가. 공통요건

①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나.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의한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①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② 물가수당·조정수당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③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④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⑤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⑥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⑦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임금

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나.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①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숙직수당

⑤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다.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①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붙임 1>

취업규칙 작성 참고자료(예시)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 일 : 시업 상오 ○○시 ○○분, 종업 : 하오 ○○시 ○○분
  - 토요일 : 시업 상오 ○○시 ○○분, 종업 : 하오 ○○시 ○○분
  - 휴게시간 : ○○시부터 ○○시까지

○ 휴일
-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 회사는 근로자의 날, 국경일(노사합의 사항), 회사창립일(노사합의 사항)을 유급휴일로 한다

○ 휴가
- 연차유급휴가
  -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또는 무급)으로 다음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 본인의 결혼 ○일
  - 부모 및 배우자 사망 ○일
  - 직계가족 처부모의 사망 ○일, 조부모 형제 자녀의 사망 ○일
  - 본인의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일

○ 교대제근로를 행할 경우에는 근무조별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등 교대근로 방법에 대하여 명시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 임금
- 임금은 기본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
- 월급자는 월 ○○일 이상 근무시 월급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 임금은 매월 ○○일 기산하여 매달 ○○일에 마감하고 익월 ○○일에 지급한다.
- 임금은 법에서 정한 보험료 및 제세금 등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한다.

○ 각 기관의 승급에 관한 사항 명시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1인당 월 ○○원의 가족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범위 명시

④ 퇴직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퇴직시킨다.
- 사망하였을 때
- 정년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 퇴직을 원할 때

○ 근로자의 정년은 만 ○○세로 한다.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대하여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설정한다.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한다.
- 정기상여수당은 상여수당지급일 현재 월 기본급의 ○○%를 지급한다.
- 회사는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지급시기 : 지급대상 :
  - · 지급방법 : 지급기준 : 지 급 율 :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원할 경우 현금(또는 현물) 등 지급방법 명시
-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000원의 중식비를 지급한다.
- 회사는 사내식당을 운영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중식을 현물로 지급한다.

○ 회사는 업무에 수반되는 다음 각호의 작업용품을 부담한다.
- 작업용품 명시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자체교육시설, 위탁교육시설 등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대하여 명시

⑧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90일의 보호휴가(사업주부담 60일, 고용보험부담 30일)를 준다. 이 경우 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생후 3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임산부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종사치 아니한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무급(또는 유급)으로 한다.

○ 회사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일 2회에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 근로자는 위험방지 및 보건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를 준수할 것
-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단 작업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격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회사는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⑪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한다.
-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개량 또는 시개발하거나, 자재절약의 방법을 고찰하여 그 효능이 현저한 자
- 재해 및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써 그 피해를 적게한 자
- 천재지변에 당하여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 회사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회사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종류별 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 하여야 함
-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등

⑫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
※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적용될 사안을 반영

부록 5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 참고자료

'07. 8

동 자료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 무 추 진 단

- 목 차 -

Ⅰ. 비정규직 인원·예산관리 등 참고사항 ·····315

1. 비정규직 관리체계 마련 ·····315

2. 인원·예산 등의 체계적 관리 ·····316

3. 차별시정 ·····317

Ⅱ.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 참고사항 ·····318

1. 비정규직 사용관련 예방점검 ·····318

2. 주요 법위반 유형별 참고사항 ·····320

가. 취업규칙 작성 ·····320

나. 근로조건 명시 ·····321

다. 각종 대장 작성 ·····321

라. 근로시간·연장근로·휴일·휴가 준수 ·····323

마. 금품청산 ·····328

바. 노사협의회 설치, 개최 ·····329

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330

아. 최저임금 준수 ·····331

3. 기타사항 ·····332

붙임. 취업규칙 작성 참고자료(예시) ·····333

Ⅰ. 비정규직 인원·예산 등 관리 참고 사항

[기 본 방 향]

◈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원·예산·인사노무관리 및 차별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 정립

1 비정규직 관리체계 마련

가. 비정규직 관리부서의 지정·운용

○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관리부서」를 지정·운용**하고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인원·예산·인사노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나. 「차별시정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운용

○ 각 기관별로 **「차별시정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용하고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토록 함

다.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 규정 마련

○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각 기관별 비정규직 사용원칙,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 교육훈련·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노무관리 규정을 마련

※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 등 참고사항(4 페이지 II장) 및 既 배포된 민간인 정규직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등을 참고

라. 비정규직 인사·노무담당자의 교육

○ 각 기관의 비정규직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관리교육** 실시하여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

마. 정기적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시

○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사용이 없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년 1회)

※ 추진위원회(추진단)에서 실태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할 계획 ('07.10월 예정)

2 인원·예산 등의 체계적 관리

가. 비정규직 인원 관리

○ 각 기관의 비정규직 관리부서는 해당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을 통합관리** 하도록 함

※ 사용부서로 하여금 매년 비정규직 사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적정성 여부를 심의·확정 후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도록 지도·감독 등

나. 비정규직 예산 관리

○ 부서단위별로 편성·집행되는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비정규직 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

※ 각 부서에서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편성 또는 사용시 「비정규직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

다. 비정규직 예산편성·집행방식 개선

○ 비정규직에 대해 보수 외에 **퇴직금, 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집행**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임금수준이 유사·동종 민간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가장 최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예산 편성·집행**

3 차별시정

○ 각 공공기관은 차별시정안내서('07.6월초 배포) 등을 참고하여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시정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07.9월말)

[차별시정계획 수립 절차(예시)]

비정규직근로자 사용 현황 파악(인원/직무/임금 등 근로조건)

↓

비정규직근로자 업무별 비교대상 정규직 선정

↓

비교대상 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 조사

↓

불합리한 차별 산출

↓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계획 수립

↓

예산반영 관련규정 개정 등 차별시정 조치

○ **'07년** 차별시정 소요예산은 **이·전용 등 자체예산**을 활용하되 부족분은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예비비를 요청하고

- **'08년** 소요에 대해서는 운영경비 절감·정규직의 양보 등 자구노력과 함께 **'08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추진

○ 각 공공기관별로 旣 지정되어 있는 **「차별시정 고충처리 담당자」**는 해당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 **고충 제기 절차**(예: 고충처리방 운영, 고충제기 전용 E-mail 개설·운영 등)를 **마련·운영**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

Ⅱ.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 등 참고사항

1 비정규직 사용관련 예방점검

가. 예방점검 개요

○ **'04-'06년간** 공공기관 대상 비정규직 사용관련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예방점검 실시**

[예방점검 개요]

◈ **'04년도 예방점검**

○ 점검기간 : '04.8월~10월

○ 점검대상 : 지자체·공기업·산하기관 554개소

○ 점검결과 : 금품체불,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 근로조건 미명시, 취업규칙 미작성, 노사협의회 미설치·미개최 등

◈ **'05년도 예방점검**

○ 점검기간 : '05.6월~8월

○ 점검대상 :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등 273개소

○ 점검결과 : 휴일·휴가 미준수, 금품체불, 취업규칙 미작성, 근로조건 미명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위반 등임

◈ **'06년도 예방점검**

○ 점검기간 : '06.9월 ~ 10월

○ 점검대상 :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기초단체가 아닌 구청 등 255개소

○ 점검 결과 : 취업규칙 미 작성, 금품체불, 근로조건 미명시, 휴일·휴가 미준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위반, 남여고용평등법 위반 등

* '07년 예방점검은 실시중(800여개소 공공기관)

나. 예방점검 결과

○ 점검 결과 **법 위반 유형별**로 취업규칙 미 작성, 근로시간·휴일·휴가 미 준수, 금품체불, 근로조건 미명시, 노사협의 미설치·미 개최 등 위반사례가 많았음

[법위반 유형별 현황]

구 분		'04년도	'05년도	'06년도
근로기준법 위반	취업규칙 미 작성	15.5 %	14.3 %	24.9 %
	근로시간·휴일·휴가 미 준수	29.7 %	30.5 %	5.8 %
	금품체불	27.6 %	16.5 %	19.9 %
	근로조건 미 명시	9.5 %	8.3 %	5.8 %
	기타(각종 대장 미 작성 등)	1.9 %	9.5 %	8.3 %
노사협의회 미 설치, 미개최 등 근참법 위반		7.3 %	13.0 %	18.7 %
성희롱 예방교육 미 실시 등 고평법 위반		7.3 %	6.0 %	10.4 %
최저임금 미 준수		1.2 %	1.9 %	5.5 %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	0.7
총 계		100%	100%	100%

○ 대부분의 위반 사유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부족, 예산상 제약 등**에 따른 것이었음

○ 이에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노동관계법 규정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상의 주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각 기관의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도록 함

2 주요 법 위반 유형별 참고사항

가. 취업규칙 작성

○ 점검결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취업규칙*을 미 작성하거나, 취업규칙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 미청취 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주류임

*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으로서 근로자에게 획일적·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사규·인사규정·복무규율 등 명칭에 관계없음)

○ 따라서 각 공공기관의 장은 아래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기관의 민간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함(붙임 1 참조)

취업규칙에서 정할 사항(근기법 제93조)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⑪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근로조건 명시

○ 점검결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정규직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에 서면 명시하도록 한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주류

○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아래의 기간제법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근로조건을 서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기간제법 제24조제2항)

[관련규정]

◈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다. 각종 대장 작성·보존

○ 각 기관의 장은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 등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을 **작성·보존**해야하며, 작성시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기재사항(근기법 제41, 48조)

◈ 근로자 명부 기재 사항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②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③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④ 해고, 퇴직, 사망연월일과 그 사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

◈ 임금대장 기재사항

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② 임금액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④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⑤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⑥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⑦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 근로자 명부 등 아래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함(근로기준법 제42조)

3년간 보존해야 할 서류 등(근기법 제42조)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또는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각종 승인·인정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 ▲노사서면합의서류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라. 근로시간 · 연장근로 · 휴일 · 휴가 준수

□ 근로시간

○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0조)

-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 다만, 18세 미만자,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 **15세 이상 18세 미만자** : 1일 1시간, 주 6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69조)

▲ **임신 중 여성 :** 연장근로가 금지됨(근로기준법 제74조4항)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71조)

○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 위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기간제법 22조)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여성, 18세 미만자, 임산부"** 등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에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함

▲ **18세 이상 여성** :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8세 미만자** : 근로자 동의를 받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임산부** :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또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영 제30조)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정기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도 아님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 유급휴일근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고 무급휴일근로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 휴일에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하는 경우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50%의 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함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됨(근로기준법 제61조)

▲ 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서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생리휴가

○ 1월간 소정근로일수(사용자와 근로자가 1개월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3조)

□ 산전 후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함

○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90일의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금품 청산

○ 금품체불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부족 및 예산상 제약등으로 **주휴, 월차, 휴일·야간근로수당 체불의 위반 사례가 주류**임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임금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도급금액을 의미함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근로기준법 56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노사협의회 설치, 개최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함

※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아도 됨

○ **협의회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함

○ **협의회 개최** :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관련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설치)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회의)

-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 실시 등 위반 사례가 주류

○ 각 기관의 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예방교육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 2)

○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에 관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함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최저임금법 제6조)

※ '07년도 최저임금 : 시급 3,480원, '08년도 최저임금 : 시급 3,770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의한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3 기타 사항

○ 기타 해고 등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

[붙임]

취업규칙 작성 참고자료(예시)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 일 : 시업 상오 ○○시 ○○분, 종업 : 하오 ○○시 ○○분
  · 토요일 : 시업 상오 ○○시 ○○분, 종업 : 하오 ○○시 ○○분
  · 휴게시간 : ○○시부터 ○○시까지

○ 휴일
-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 회사는 근로자의 날, 국경일(노사합의 사항), 회사창립일(노사합의 사항)을 유급휴일로 한다

○ 휴가
- 연차유급휴가
  ·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또는 무급)으로 다음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 본인의 결혼 ○일
  · 부모 및 배우자 사망 ○일
  · 직계가족 처부모의 사망 ○일, 조부모 형제 자녀의 사망 ○일
  · 본인의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일

○ 교대제근로를 행할 경우에는 근무조별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등 교대근로 방법에 대하여 명시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 임금
- 임금은 기본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
- 월급자는 월 ○○일 이상 근무시 월급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 임금은 매월 ○○일 기산하여 매달 ○○일에 마감하고 익월 ○○일에 지급한다.
- 임금은 법에서 정한 보험료 및 제세금 등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한다.

○ 각 기관의 승급에 관한 사항 명시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1인당 월 ○○원의 가족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범위 명시

④ 퇴직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퇴직시킨다.
- 사망하였을 때
- 정년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 퇴직을 원할 때

○ 근로자의 정년은 만 ○○세로 한다.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대하여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설정한다.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한다.
- 정기상여수당은 상여수당지급일 현재 월 기본급의 ○○%를 지급한다.
- 회사는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지급시기 : 지급대상 :
  - · 지급방법 : 지급기준 : 지 급 율 :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원할 경우 현금(또는 현물) 등 지급방법 명시
-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000원의 중식비를 지급한다.
- 회사는 사내식당을 운영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중식을 현물로 지급한다.

○ 회사는 업무에 수반되는 다음 각호의 작업용품을 부담한다.
- 작업용품 명시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자체교육시설, 위탁교육시설 등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대하여 명시

⑧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90일의 보호휴가(사업주부담 60일, 고용보험부담 30일)를 준다. 이 경우 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생후 3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임산부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종사치 아니한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무급(또는 유급)으로 한다.

○ 회사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일 2회에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 근로자는 위험방지 및 보건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를 준수할 것
-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단 작업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격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회사는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⑪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한다.
-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개량 또는 시개발하거나, 자재절약의 방법을 고찰하여 그 효능이 현저한 자
- 재해 및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써 그 피해를 적게한 자
- 천재지변에 당하여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 회사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회사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종류별 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 하여야 함
-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등

⑫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
※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적용될 사안을 반영

부록 6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86호(2006. 10. 4.제정)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06년 8월 2일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그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행정기관. 다만, 대통령 소속하의 행정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속이 없는 독립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라. 국・공립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및 각급 학교

   마. 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바.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2.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고용형태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한시적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나.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

다.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

라. 비전형근로자 : 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4. "외주화"라 함은 공공기관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도급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사용 및 외주화

제3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원칙)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한다)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교수 임용, 수련의 채용 등과 같이 그 직종 고유의 제도에 따라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3.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4. 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7.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는 업무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8.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차별시정)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 담

당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행정기관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노동관계법령 준수 노력) ①국가행정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은 국가행정기관의 인사노무담당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노동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이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및 대학병원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등을 교육하는 전담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외주화의 기본원칙) ①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주변적인 업무 또는 부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주화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외주화하는 경우에도 시장 임금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핵심적인 업무 또는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도의 전문기술, 고가의 시설·장비 또는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을 필요로 하여 자체해결이 곤란한 업무

2. 일정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해당인력을 직접 고용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외주화에 의할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고 명백한 경우

4.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내부노동시장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의 처우를 시장수준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5.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사 또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병렬적 조직 또는 부서업무의 일부를 조직 또는 부서단위로 외주화하는 경우

6. 그 밖에 외주화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외주화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외주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련 분야의 외부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 외주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없고, 외주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공급이 어려울 때 다른 업체로 신속한 대체가 가능할 것

2. 외주화에 의하여 공익성 또는 공공성의 훼손 가능성이 낮을 것

3. 다른 업무와의 업무분리가 용이하고, 업무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개선노력)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그 국가행정기관이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및 대학병원에 대하여 제3조・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칙과 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및 점검・평가

제9조(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채용되어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그 규모가 적정수준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국가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원관리, 예산관리, 인사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그 국가행정기관이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의,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대학병원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기관의 범위, 조사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조사기준일, 조사표 등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①국가행정기관의 장은 2006년 8월 2일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마련한 대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과 별도로 국무총리는 국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및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이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종합대책 및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마련한 대책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제11조(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종합대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종합대책의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원칙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외주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외주화된 업무를 일제점검하여 직접수행업무로의 전환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종합대책 추진실적 점검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무조정실정책차장 및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2.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제외한다),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3.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제3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의 단장이 된다.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실무추진단) ①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실무추진단에는 단장 1인과 기획총괄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팀, 학교·지방교육행정기관팀 및 공기업팀을 둔다.

③실무추진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고, 팀

장 및 팀원은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노동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조사 및 연구의뢰) ①실무추진단의 단장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수 등) ①실무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실무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정은 2009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록 7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2006. 12.

행정자치부

목 차

Ⅰ. 개 요 ····· 353

Ⅱ.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 354

1.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355

2.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방안 ····· 357

3.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체계 확립 ····· 360

Ⅲ. 행정사항 ····· 361

[별첨1]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원표 서식

[별첨2] '07년도 공무원외 인력 인건비 책정내역 작성서식

Ⅰ. 개 요

1. 목 적

○ 최근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공무원 인력 사용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비정규성 인력의 남용, 차별적 사용문제 등을 개선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정하기 위함

※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을 위하여도 공무원 정원과 비공무원 인력의 통합관리 필요

2. 근 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8.2)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별도 관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무총리훈령 제486호, 2006.10.4)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되어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그 규모가 적정수준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는 부처별 자율 관리

3.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위원회·자문회의 등 포함, 이하 "부처"라 함)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용어의 정의 >

☞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중 1년이상 사용한 근로자

Ⅱ.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 기본방향 》

정부고용 비정규 인력의 합리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설정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사용인원 적정화

○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체계 확립

1.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각 부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 】

-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②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③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⑤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 】

-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② 교수임용 등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로 인해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③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

④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⑥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⑦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⑧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각 부처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근로자의 근로기간·근로시간·보수·기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간제근로자등 보호법」('06.11.30제정, '07.7.1시행) 따라 향후 기간제근로자를 2년(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에 유의

2.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방안

< 인력관리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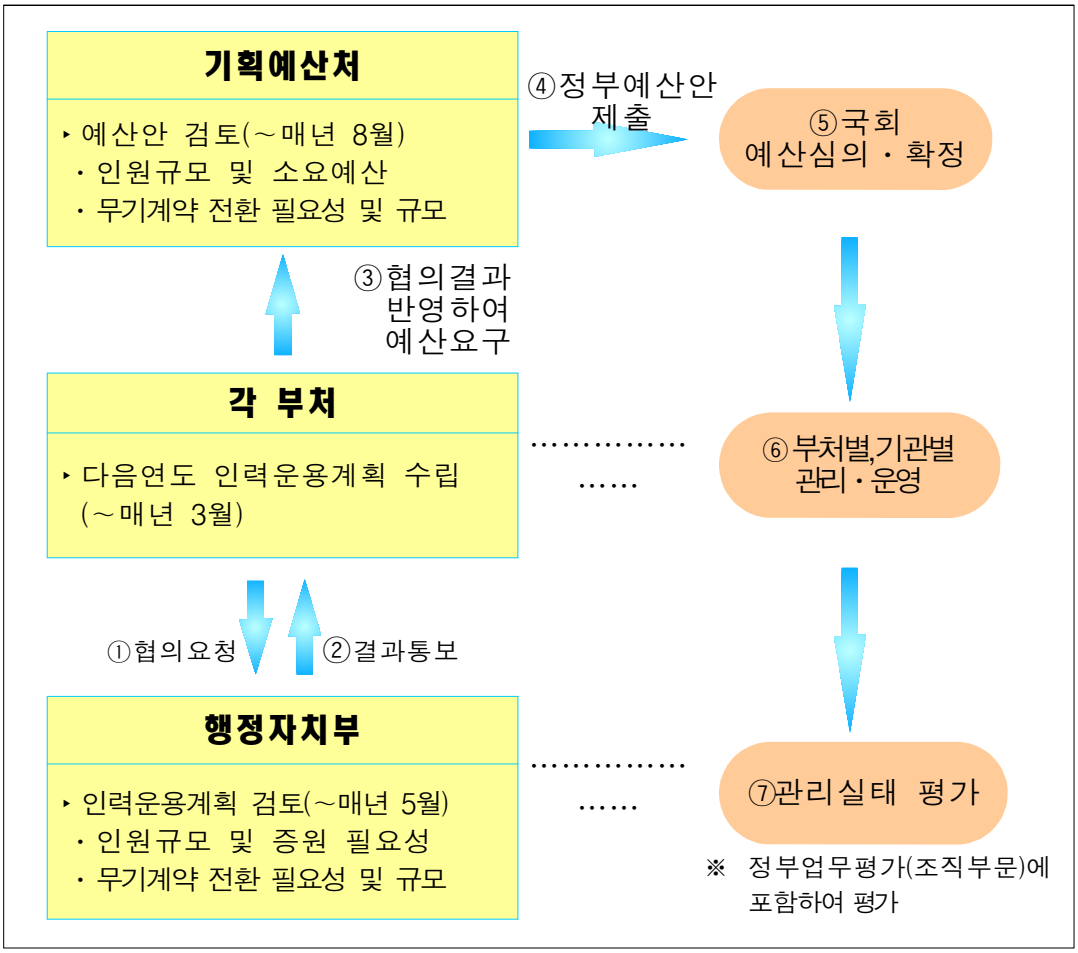

(1) 인력운용계획 수립·협의

1) 인력운용계획 수립 요령

○ 각 부처는 2007년부터 매년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한다.

- 각 부처의 본부 및 소속기관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증원·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
- 조직관리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이 제출한 증원·감원계획 및 무기계약 전환계획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한 후 부처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인력운용계획 작성서식 : 추후 별도 통보예정)

2) 협의절차

○ 각 부처는 익년도 인력운용계획과 동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다.(~매년 3월말)

< 인력운용계획 협의에 필요한 근거자료 >

☞ 신규 증원 : 기존인력 현황, 증원의 필요성(사업내용·업무량), 업무수행근거규정, 소요인력의 규모 및 산출근거, 전년도 인건비 집행실적 등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 기존인력 현황, 당해 근로자의 근로기간·담당업무 및 업무수행근거규정, 무기계약 전환규모 및 산출근거 등

○ 행정자치부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준 및 부처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매년 5월말)

○ 각 부처는 다음연도 예산안에 행정자치부의 인력운용계획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에 요구(~매년 6월말)하고, 기획예산처는 인건비 등 예산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

3) 예산 확정후 조치

○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을 자체 관리규정에 반영한다.

(2) 부처별 인력관리·운영 방법

1) 자체 관리규정 제정

○ 각 부처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규정(훈령 등)을 제정·시행한다.

- 동 규정에는 부처별 근로자 사용기준, 인원 및 인사관리, 보수 등 제반사항을 포함

< 자체 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총인원 및 부서별·직종별 인원
- 채용요건, 절차, 방법 등 채용 및 채용해제(퇴직)에 관한 사항
- 휴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보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정년(무기계약근로자에 한함)

2) 인원규정 및 관리방식

○ 각 부처는 자체 관리규정에 무기계약근로자와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각각의 총 인원 및 부서별·직종별 인원을 명시하여 관리한다.

- 부서별·직종별 인원은 별표(서식 : 별첨1)에 규정

○ 행정자치부는 인력운용계획 협의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총인원을 관리한다.

3) 사용목적 준수 등 인력의 엄격 운영

○ 각 부처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기관별·직종별 책정된 인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4) 전담 관리부서 지정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는 각 부처의 정규 조직 관리부서에서 함께 수행한다.

※ 200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조직기획팀-955호, '06.5.22)에 따름

3.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체계 확립

○ 행정자치부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활용·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올바른 사용관행 정착 및 활용성과 제고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조직부문)에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활용·관리실태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평가내용 >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 제정 및 동 지침의 준수 여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적정규모 유지 여부 등

< 정부업무평가 절차(2006년도) >

☞ 조직부문 자체평가(각 부처) → 자체평가 확인·점검(행자부) → 종합보고서 작성·제출(행자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국조실)

Ⅲ. 행정사항

○ 각 부처별로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통보(~'07.1.31)

- 공무원 외 인력의 '07년도 인건비 책정내역을 함께 통보(서식 : 별첨2)

○ 각 부처는 매년 다음연도 예산 확정결과에 따라 자체 관리규정 개정시 그 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에 통보

<별첨1> 아래 서식에 따라 부서별·직종별 인원표를 작성, 자체 관리규정에 [별표]로 규정하여 관리

○○○○부 무기계약근로자 인원표

직 종 / 부 서	계	경비원	도로보수원	사무보조원	상시위탁집배원	시설관리원	연구원	운전원	청소원	·	·	·	·	·
합 계														
△△△본부(국)														
○○○팀(과)														
○○○팀(과)														
△△△본부(국)														
○○○팀(과)														
○○○팀(과)														
소속기관1														
○○○팀(과)														
○○○팀(과)														
소속기관2														
○○○팀(과)														
○○○팀(과)														
·														
·														

<기재요령>

○ 직종별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되, 직종명은 업무의 종류, 성격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분류

- ‘사무보조원’은 사무실에 내근하면서 공무원을 보조(서무, 예산, 회계, 문서 작성, 자료정리 등)하는 근로자에 한해 분류
- ‘기타’ 등 기재 금지

○○○○부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원표

직 종 / 부 서	계	○○○	○○○	○○○	○○○	○○○	○○○	○○○	○○○	○○○	○○○	○○○	○○○	○○○
합 계														
△△△본부(국)														
○○○팀(과)														
○○○팀(과)														
△△△본부(국)														
○○○팀(과)														
○○○팀(과)														
소속기관1														
○○○팀(과)														
○○○팀(과)														
소속기관2														
○○○팀(과)														
○○○팀(과)														
·														
·														

<별첨2>

‘07년도 공무원외 인력 인건비 책정내역

-○○○○부·처·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비목(목)		통계비목(세목)		‘07 예산액	총액인건비 포함여부
			코드	비목명	코드	과목명		
본 부	본부 인건비	인건비 (본부)	100	인력운영경비	102	비정규직보수	50	○
소속기관1								
소속기관2								

< 작성요령 >

1. 엑셀 횡서식으로 작성

2.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공무원외 인력의 인건비성 예산액을 모두 기재

- ‘인건비성 예산’이라 함은 공무원외 인력(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모두 포함)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의미

  * 예산 성격(종전의 인건비·기본사업비·주요사업비)에 관계없이 인건비성 예산을 모두 포함

- 예산액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고, ‘인건비성 예산’이 동일 단위사업에 여러개의 비목으로 나뉘어 편성된 경우는 합산하여 기재

3. ‘총액인건비 포함 여부’란은 ‘○’, ‘×’로 기재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백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27-80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12번지
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

◈ 전화 : (02)502-0265

2007년판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2007년 12월 인쇄
2007년 12월 발행

발행 : 노동부
편집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
인쇄 : 동방기업(전화 : 02)794-7600